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57-01

201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 11.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책임자 : 신연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원 :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여연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
 최경옥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진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명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3
2. 수용자자녀 지원필요성	6
1) 아동의 권리보장 : 기본권 보장	7
2) 위기아동의 보호 : 문제해결 및 범죄대물림 예방	8
3) 사회 안정 : 가정보호를 통한 재범 예방	9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0
II.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13
1. 국내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15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현황	15
2)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6
2. 외국의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21
1)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2
2) 비행 및 범죄의 원인에 관한 종단 연구	30
3) 수용자자녀 지원방안 관련연구	32

III.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 수용자 설문조사 43

- 1. 조사개요 45
 -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45
 -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45
- 2. 조사결과 47
 -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47
 - 2)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49
- 3. 소결 60

IV. 수용자자녀 성장환경 : 양육자 설문조사 67

- 1. 조사개요 69
 -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69
 -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69
 - 3) 질문지 구성 70
- 2. 조사결과 71
 -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71
 - 2)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72
 - 3) 자녀들의 특성 79
 - 4) 수용자 특성 83
 - 5) 그 외의 어려운 점 88
- 3. 소결 89

V. 수용자자녀들의 경험 : 수용자자녀 심층면접 93

1. 조사개요	95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95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5
3) 심층면접 질문내용	96
2. 조사결과	97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97
2) 심층면접 내용분석	98
3. 소결	115

VI. 수용자자녀 문제 대응방안 : 델파이 조사 119

1. 조사개요	121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121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21
2. 조사결과	122
1) 조사참여자	122
2) 1차 조사 분석결과	122
3) 2차 조사 분석결과	128
3. 소결	138

VII.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141
1. 조사개요	143
2. 조사결과	144
1)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144
2) 국외 법제도 현황 검토	164
3)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이행현황	206
3. 소결	220
VIII. 결론 및 제언	229
1.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31
2. 제도 및 정책방안	232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32
2) 민간과 협력방안	246
3) 관련법 정비방향	248
3. 맺음말	253
참고문헌	255
부록	267
1. 심층면접 참여자 생활실태 개요	269
2. 수용자용 설문지	276
3. 수용자자녀 양육자용 설문지	278
4. 델파이조사 질문지	284

표목차

〈표 I-1〉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
〈표 III-1〉	각 교정기관별 설문지 수거부수 및 최종 분석율	46
〈표 III-2〉	전체 조사대상자 특성	48
〈표 III-3〉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수 추산	49
〈표 III-4〉	수용된 부모의 성별	49
〈표 III-5〉	수용된 부모의 연령	50
〈표 III-6〉	수용된 부모의 결혼상태	50
〈표 III-7〉	수용된 부모의 수용기간	51
〈표 III-8〉	수용된 부모의 종교	51
〈표 III-9〉	자녀의 양육 상태 - 양육자 및 돌봄자	52
〈표 III-10〉	입소 전 자녀와 동거여부	53
〈표 III-11〉	자녀 양육비 부담 여부	53
〈표 III-12〉	자녀 상태 인지여부	54
〈표 III-13〉	경제적 형편	54
〈표 III-14〉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55
〈표 III-15〉	출소 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55
〈표 III-16〉	가족관계	56
〈표 III-17〉	자녀 연령	56
〈표 III-18〉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57
〈표 III-19〉	연령대 별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57
〈표 III-20〉	부모 체포 장면 목격여부	58
〈표 III-21〉	자녀 연령대 별 부모 체포 장면 목격여부	58
〈표 III-22〉	구속 후 자녀 접견여부	59
〈표 III-23〉	자녀 연령대별 구속 후 자녀 접견여부	59
〈표 III-24〉	자녀 건강상태	60
〈표 III-25〉	자녀 학교생활 적응	60
〈표 IV-1〉	수용자자녀 양육자 설문지 자료수집 경위	70
〈표 IV-2〉	질문지 구성	70
〈표 IV-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수용자와의 관계	71

〈표Ⅳ-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직업, 종교	72
〈표Ⅳ-5〉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돌봄자	73
〈표Ⅳ-6〉	수용자자녀와 함께 살게 된 시기	74
〈표Ⅳ-7〉	자녀의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및 향후 알려줄 계획	74
〈표Ⅳ-8〉	자녀들의 부모접견 여부	75
〈표Ⅳ-9〉	수용자와의 접촉 방법	75
〈표Ⅳ-10〉	방문횟수(연간기준)	76
〈표Ⅳ-11〉	국가지원 수급여부	77
〈표Ⅳ-12〉	양육자의 자녀양육 어려움	77
〈표Ⅳ-13〉	수용자자녀 성별과 연령	79
〈표Ⅳ-14〉	부모수용 인지여부 및 체포 장면 목격여부	80
〈표Ⅳ-15〉	부모 접견 여부	80
〈표Ⅳ-16〉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학교생활적응	81
〈표Ⅳ-17〉	자녀들의 문제행동	82
〈표Ⅳ-18〉	수용자 성별	83
〈표Ⅳ-19〉	수용상태 및 수용횟수	84
〈표Ⅳ-20〉	수감기간 및 현재까지 복역기간	84
〈표Ⅳ-21〉	수용 당시 결혼상태	85
〈표Ⅳ-22〉	수용 전 자녀 양육비 부담 정도	86
〈표Ⅳ-23〉	수용자 가정의 경제수준	86
〈표Ⅳ-24〉	수용 전 수용자와 자녀 동거여부	87
〈표Ⅳ-25〉	수용자의 자녀관심도 및 부모-자녀관계	87
〈표Ⅳ-26〉	그 외 어려운 점	88
〈표Ⅴ-1〉	심층면접 실문내용	96
〈표Ⅴ-2〉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98
〈표Ⅴ-3〉	권리유형에 따른 심층면접 내용분석	98
〈표Ⅵ-1〉	조사 참여자	122
〈표Ⅵ-2〉	수용자자녀 권리침해영역	123
〈표Ⅵ-3〉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에서의 정부역할	124
〈표Ⅵ-4〉	수용자자녀 지원내용 포함이 적절한 법(순위 무관)	127
〈표Ⅵ-5〉	수용자자녀 지원에 적합한 주무부처(순위 무관)	127
〈표Ⅵ-6〉	보건복지부 역할	129
〈표Ⅵ-7〉	여성가족부 역할	130

〈표VI-8〉 경찰 역할	131
〈표VI-9〉 법원 역할	132
〈표VI-10〉 법무부-교정본부 역할	132
〈표VI-11〉 교육부 역할	133
〈표VI-12〉 지방자치단체 역할	135
〈표VI-13〉 민간단체 역할	136
〈표VI-14〉 수용자자녀 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법	137
〈표VI-15〉 수용자자녀지원 담당에 적합한 주무부처	137
〈표VI-16〉 부처별 업무 적절성과 실효성 응답	138
〈표VII- 1〉 수용자자녀 생존권 지원 프로그램	180
〈표VII- 2〉 수용자자녀 발달권 지원 프로그램	181
〈표VII- 3〉 수용자자녀 참여권 지원 프로그램	183
〈표VII- 4〉 수용자자녀 기타 지원 프로그램	186
〈표VII- 5〉 바날도 & 감리교회 미션의 양육 교육프로그램	192
〈표VII- 6〉 민간단체의 가족 간 유대강화 지원 프로그램	192
〈표VII- 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자녀 권고사항에 대한 여러 국가의 이행현황 요약	210
〈표VII- 8〉 일본의 아동양육 보조금 개요	219
〈표VII- 9〉 형사절차 단계에 따른 수용자자녀 정책제안 정리	225
〈표VIII- 1〉 아동권리 유형별 정책제안	246

그림목차

〈그림VII-1〉 미국 내 교도소 수감자 인구	165
〈그림VII-2〉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수용자 인구	166
〈그림VII-3〉 미국 내 여성수용자 수	167
〈그림VII-4〉 수용자자녀의 연령	181
〈그림VII-5〉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용자 수	187

연구요약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인권관점에서 본 수용자자녀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 즉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이라 할 수 있음. 부모의 교도소 수용과 함께 가정은 훼손되고, 보호해 줄 부모를 상실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임. 비록 부모가 교도소에 있지만 자활능력이 없는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수용자자녀들은 우리사회의 다른 소외계층아동과 다를 바가 없지만 단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수용자자녀의 권리보장에 관한 근거는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음.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제9조)고 명시하고 있음. 나아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 같은 권리가 있고, 각 회원국은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집행, 교도소, 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음.
-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최초의 연구인만큼 정책대안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비중을 두고, 인구규모와 같은 기초적인 정보에서부터, 중심적 생활세계인 가정환경, 나아가 자녀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조사하였음.
 - 아울러 국내·외 법제도와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등을 통해 수용자자녀들의 훼손된 인권을 회복시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공적기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음.

2. 수용자자녀 지원필요성

- 수용자자녀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죄를 지은 범죄인과 그 가족들을 분리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와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사회 안전을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반감은 무고한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도 예외 없이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1) 아동의 권리보장 : 기본권 보장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양육할 능력을 갖춘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의 기본권인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용자자녀에게도 보장해야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즉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권리는 부모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함.

2) 위기아동의 보호 : 문제해결 및 범죄대물림 예방

- 부모가 수용된 후 수용자자녀들은 생계부양자의 상실로 인한 빈곤과 빈곤이 파생하는 문제들, 다양한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 그리고 학교부적응 및 이탈행동 등의 연류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수용자자녀들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아동’이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데, 더욱 불행한 일은 성장과정에서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자녀들은 소년법상의 ‘비행청소년’이 됨으로써 부모의 범죄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발생함.

-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인들을 차단하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닥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피해자로서의 취약아동들이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로 전환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음.

3) 사회 안정 : 가정보호를 통한 재범 예방

-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 수용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한편, 건강한 시민으로 가정에 복귀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됨. 또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의 안정은 수용자의 교화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범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됨.
- 돌아갈 가정이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 정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 가족은 출소자의 재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용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조사유형별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조사유형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세부 연구내용
1. 설문조사	수용자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 -최종 40,936부 확보	-수용자자녀 인구현황 -부모의 수용전후 자녀상황 -양육/가정환경 기초사항
2. 설문조사	자녀들의 양육자 및 보호자	-8개 교정기관 접견 온 가족 -4개 교도소에서 개최하는 가족사랑 캠프 참여자 설문조사 -최종 242부 확보	-자녀들의 성장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자녀 및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와 인권보장 내용

조사유형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세부 연구내용
3. 심층면접	심층면접	-부모의 교도소 수용을 경험한 자녀 17명(아동, 청소년 포함) -수용자자녀 관련 민간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선정(세진회, 세움, 아동보호시설 등)	-부모의 수용이 초래한 문제에 관한 생생한 경험 -문제를 극복한 사례발굴하여 수용자자녀 성장 모델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가능성 탐색
4. 델파이 조사	전문가	-각계 전문가 18명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참여자 발굴	-수용자자녀 지원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에 관한 합의점 도출
5. 문헌조사	문헌/ 인터넷 의사소통 기록물 등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법제도 분석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분석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 검토
6. 정책 토론회	-	-연구진 전원 및 정책집행 관련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	-연구결과 공유 및 정책제언 논의

II.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 수용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수용자 설문조사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의 정확한 인구현황과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함.
- 법무부 교정본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우리나라 구치소 및 교도소와 민간교도소를 포함하는 53개 교정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교정공무원들이 질문지 배포하고 질문지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을 거쳐 수용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 함. 설문지는 미성년 자녀가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 자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자녀들의 특성과 연령과 성별, 건강, 학교생활,

가족생활실태 및 체포상황이나 수용여부, 자녀와의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을 질문문항으로 구성됨.

-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5일부터 2주간이었으며 설문에 불응한 수용자를 제외하고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취합된 설문지는 총 42,354부로서 조사가 진행된 당시의 수용자 일일평균 수용인원인 약 53,000여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수용자의 80.0%에 해당됨.
- 수거한 질문지 총 42,354부 중 답변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시킨 자료는 40,936부로서 전체 수용자 대비 77.2%에 해당됨.

2. 조사결과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전체 응답자 40,936명 중 10,406명이 해당). 이들의 미성년자녀수의 평균은 1.52명으로 집계됨.
-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수용자자녀의 수는 일일 평균 22,000여명이고, 연간 54,000여명(우리나라 19세 미만 인구의 약 0.5% 로 추산됨. 요약하자면 수용자 자녀는 매일 20,000여명 이상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50,000명씩 발생하는데 교도소 재입소자 비율인 45%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매년 27,500명의 수용자 자녀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음.

2)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1) 수용된 부모의 특성

- 수용자자녀들은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가 90%, ‘어머니’가 수용된 경우가 10%정도임.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47.5%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 ‘50대’ 19.1% 순임. 부모의 결혼 상태는 ‘법적 혼인상태’가 52.7%로 가장 많았고 ‘이혼’ 25.0%, ‘법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사실상 부부’인 경우가 11.4% 순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

까운 47.3%는 가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부모의 수용기간은 '1년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40.7%, '10년 미만' 4.8%로서 5년 미만을 합하면 93.8%인데 비해 '5년 이상'은 6.2%이고 '10년 이상'은 1.4%에 불과함.

(2) 가정환경 관련 특성

- 자녀양육자의 74.2%가 '남아있는 다른 한쪽 부모'임. 자녀의 '조부모'가 16.0%이고, '자녀끼리 살고 있는 경우' 2.4%, '시설에 있는 경우' 2.1%로 나타났으며 '친인척' 1.8%, '지인' 1.5%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상황을 모른다'는 응답은 1.5%였음.
- 수용되기 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수가 '함께 살았다'고 응답(80.6%)하고 있어서 수용자자녀들의 대다수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하여 강제로 부모와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줌.
- 아울러 수용된 부모의 다수는 자녀양육비 부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용자 자신이 '혼자 담당했다'는 응답은 52.5%이고 '배우자와 함께 담당'한 경우 37.0%로서 합하여 90% 정도가 수용 전에 자녀양육비를 담당하고 있었음. 다수의 가정에서 자녀양육자의 부재가 가계소득의 상실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음. 또한 '가난하다'는 응답이 48.8%로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1.7%는 극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가정의 빈곤율은 매우 높았음.

(3)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 자녀들의 연령은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만 7세-만 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25.8%,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만 16-만 18세' 23.2%, '만 13-만 15세' 17.3% 순으로 나타남.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이하 어린 자녀들이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부모가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자녀들의 30.1% 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수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므로, 부모의 수용사실은 무조건 감추고 비밀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알리는 것이 자녀들에 유익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을 보여줌.

한편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0.9%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부모-자녀관계가 의미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임.

- 부모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는 6.3%로 나타남.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물리적 강압과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은 자녀들에게 공포의 순간으로 기억되며 통상 이러한 기억은 전 생애에 걸쳐 기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체포단계에서 경찰에게 특별한 업무수칙이 요구됨.

Ⅲ. 수용자자녀 성장환경 : 양육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부모를 교도소에 보낸 후 남아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장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자료수집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해 지역교정청 별 1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교정기관을 추천받았고 전국 8개의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함.
- 설문조사를 위해 훈련된 조사원이 8개의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교도소에 접견을 신청하러 온 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4개의 교정기관의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한 가족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함.
-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수용자와의 관계, 직업, 종교),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과 가정생활과 양육자 생활환경, 자녀들의 특성과 수용된 부모와의 관계와 수용인지 여부와 체포목격여부, 부모 접견 경험, 수용자들의 특성(수용상태, 결혼상태, 경제수준, 자녀부양비 부담정도)등을 질문함.
- 설문지는 총 260부가 수거되었고 적절하게 응답처리가 안된 18부를 제외하여 이중 242부가 채택 됨.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21.0에서 코딩 후 기술통계를 통한 빈도분석으로 분석함.

2. 조사결과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응답자는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응답자들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음. 응답자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음. 응답자의 직업은 '주부(무직 포함)'가 31.1%가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음'이 36.5%로 가장 많았음.

2)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거나 돌보고 있는 사람은 '자녀의 엄마'가 57.9%로 가장 많았음.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24%였고 '친척 양육'도 6.2%로 나타남. 수용자자녀와 함께 살게 된 시기는 '처음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음.
- 자녀가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9.3%로 알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현재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향후 알려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월등히 높았음.
- 자녀들이 수용된 부모를 접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8%로 '접견하였다'는 응답보다 높았음.
- 수용된 가족과 접촉하는 방법으로는 '1순위 일반접견', '2순위 일반서신', '3순위 인터넷 서신'이었으며 분석과정에서 가산점 차등을 두어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접촉 방법으로는 일반접견, 다음으로 인터넷 서신, 인터넷 화상접견 순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수용자를 면회 온 횟수 조사한 결과 연간 '50회에서 100회 미만' 방문이 30.2%로 가장 많았음.
-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1.9%, '한부모가정지원' 5.3%, '긴급복지지원' 4.5% 으로 나타남.
- 양육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일은 '수용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일'과 '경제적 어려움' 인 것으로 나타남.

3) 자녀들의 특성

-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미성년 자녀는 총 375명이었음. 응답이 채택된 가구당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음.
- 수용자자녀는 ‘남자(53.4%)’가 ‘여자(46.6%)’보다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12세’로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다며 ‘알고 있다’는 경우는 33.2%에 불과함. 자녀들이 수용된 부모를 접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접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남.
- 건강상태는 60.2%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중’, ‘하’ 순으로 응답하였음. 학교성적은 ‘중’, ‘상’, ‘하’ 순으로 응답하였음.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2%로 나와 응답자의 일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46.6%가 ‘상’이라고 응답하였고 ‘중’, ‘하’ 순으로 응답하였음.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2.9%로 나타나 학교성적과 유사하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양육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자녀들의 문제행동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2.09),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2.01),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2.01)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남. 이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자녀에게 미치는 2차적 피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비행과 관련된 문항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항목은 평균적으로 5~7%대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었음.

4) 수용자 특성

- 수용자는 남성이 83.4%로 여성(16.6%) 비해 높았고 수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나타남.
- 수용자들의 수용상태는 ‘기결’이 49.5%, ‘미결’이 50.2%로 비슷하게 나타남. 수용횟수는 ‘1회’ 초범이 77.2%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들의 총 수감기간은 ‘5년 미만’ 27.6%로 가장 많았음. 수용자들의 수용 당시 결혼 상태는 ‘법적 결혼상태’가 6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혼’이 16.1%, ‘이혼진행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5.4%로 순으로 나타남.

- 수용 전 자녀부양비는 ‘수용자 혼자서 부담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와 함께 부담했다’가 35.7%로 나타남. 수용자의 76%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음. 수용자 가정의 수용 전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좋지 않은 편이다’가 25.2%,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가 12.4%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빈곤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음.
- 수용 전 자녀와 수용자의 동거 여부 문항에서는 ‘함께 살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0.1%로 많았음. 수용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1.5%로 나타났고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다’가 38.2%로 가장 높았음.

5) 그 외의 어려움

수용생활 및 면회와 관련하여서는 접견시간이 짧다는 것과 자녀들이 수의를 입고 있는 부모를 보고 무서워한다거나 충격을 받을까봐 알리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국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부족이나 가족상황을 알리는 것에 대한 노출을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면접 시 장소나 상담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자녀가 받았을 상처 치료나 상담지원과 관련된 요청사항이 드러났음.

3. 소결

- 수용자자녀를 양육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 일시적 긴급 특별지원가정이나 위기가정으로 포함하여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또한 수용자자녀 양육가정 경제적 지원 현실화를 위해 가장이 수용되어 있는 동안 특히 가정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 보호가 필요하고 의료나 문화적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수용자자녀가 전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수용자자녀의 보호 상태뿐 아니라 학업, 발달, 심리지원과 같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부모수용 사실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아동권리보호 및 충격완화를 위한 경찰의 체포수칙 제정 및 준수에 대한 지원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IV. 수용자자녀들의 경험 : 수용자자녀 심층면접

1. 조사개요

-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부모의 수용 후 자녀들이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부모의 수용사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사자의 심정과 어려움 및 극복경험을 탐색하여 수용자자녀의 권리침해 정도를 파악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심층면접 참여자는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아동보호시설로부터 부모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수감되었던 적이 있는 청소년을 추천받았고 연구목적에 동의하여 인터뷰에 응한 17명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1:1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 진행함. 심층면접은 2017년 7월부터 9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사례 당 1회씩 1시간-1시간30분 동안 조용한 스터디 룸이나 참여자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 함.
- 면접 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함께 살고 있는지, 부모가 수감되고 나서 삶의 전후 변화, 부모의 수감으로 힘들었던 점, 부모의 수감으로 수감된 부모와의 접견이나 교류정도와 가족관계 등에 대해 질문함. 이후 녹취록을 풀어 인터뷰를 담당했던 연구진 회의를 거쳐 아동권리영역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기준으로 내용을 분석함.

2. 조사결과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 성별은 여자가 5명 남자가 12명으로 남자가 많음. 연령은 17-19세가 가장 많았고 수용된 사람은 부(父)가 14명, 모(母)가 2명이었으며 부·모 모두 수감되어 있는 사례도 1명 있었음. 부모의 수용이유는 사기·절도 등의 경제사범이 7명, 강도·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10명 등이었음. 주 양육자로는 부(모) 7명, 조부모 4명, 시설 2명, 자녀들끼리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4명으로 나타남. 거주지는 서울 4명, 경기, 인천 6명, 경상 4명, 전라 2명, 충청 1명으로 분포되어 있음.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정도의 충분한 경험과 충격적인 사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타인에게 노출할 수 있는 청소년이상의 참여자를 선정하였음. 다른 사람에게 가족의 일이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나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시설 종사자의 거부 등으로 인터뷰 동의를 거절되기도 하였음.

2) 심층면접 내용분석

- 수용자자녀들이 경험한 내용은 14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고 이를 아동의 4대 권리에 맞춰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생존권에서는 건강한 어른의 부재, 안전하게 살아할 공간이 없어짐, 경제적 궁핍과 냉혹한 현실, 자살까지 생각함이라는 주제가 도출됨.
수용자자녀들은 부모 수용 후 친인척에서 또 다시 학대를 당하고 조모에게 맡겨진 후 조모를 돌보느라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방임상태가 발생되기도 함. 수용자자녀들은 가출 후 껌질방등을 전전하기도 하고 집세가 밀려 이사를 나온 후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가족전체가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기도 함. 또한 자녀들은 학원비등을 스스로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돈이 없어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됨. 부모의 수용사실이 노출된 후 학교 따돌림을 견디기 힘들어 자살을 생각하고 수급지원을 받지 못해 죽기를 다짐하는 가족의 어려움이 도출됨.
- 보호권에서는 집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시설로 떠돌아다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위로, 체포과정 목격 그리고 충격이라는 주제가 도출됨.

부모 수용 후에 맡겨진 친척에게 학대를 당한 후 가출 하고 쉼터 등등 전전하기도 하고 부모이혼 후 여기저기 맡겨지다가 부모 수용된 후에는 시설과 집을 떠돌아 다니는 경우도 있었음. 시설보호의 경우나 위탁가정에서의 돌봄 등에서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주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부모 체포를 목격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의 문제가 등장하기도 함. 반면 남아있는 친인척의 양육과 위로를 받으며 자녀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잘 극복해서 살아가기도 하였음.

- 발달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비행의 길, 학업중단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 친척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 지역사회 서비스의 도움도 도출됨.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1차적 충격도 있기도 했지만 다른 한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재와 지도감독이 약화되면서 자녀들은 비행을 길을 시작하고 있었음. 또한 부모의 수용으로 가출한 뒤 학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음. 참여자들은 충격으로 인해 학업능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사와 경제적 어려움, 가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였음. 또한 수용자자녀들은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위기와 심리적 변화에 부모의 수감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부가되면서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위축, 우울, 분노, 죄책감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 또한 친척과 이웃들의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 반면, 수용자자녀들은 지역사회서비스 실무자들의 돌봄과 관심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회복을 위한 보호체계가 되어 줌.
- 참여와 관련 주제에서는 수감사실에 대한 정보 부재, 멀고 먼 면회의 길 그리고 아쉬움이라는 주제가 도출됨. 참여권에서는 자녀들의 알권리와 접견권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 자녀들은 부모수감사실 또는 부모와의 관계나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음. 또한 짧은 접견을 위해 먼 길을 가야하기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음.

3. 소결

- 수용자자녀의 생존을 위한 긴급지원과 수급지원 외의 별도의 자원연결에 대한 지

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부모 수감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곳을 마련해주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경찰조사나 체포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시스템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논의해야 함.

- 시설위탁아동의 부모 및 가족관계지원과 가정위탁가정 형태의 양육자들에게 임시적 특별기간 우선지원 정책이나 본인의 충격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 상담과, 자녀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함. 부모 체포 시 아이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찰의 체포수칙과 가이드라인이 제작되고 지켜지도록 경찰 및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요구됨.
- 수용자자녀를 위한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수용자자녀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실시되어야 함. 학교나 지역사회기관에서 수용자자녀를 돕고 위한 범죄나 비행 예방하기 위한 사례지원도 필요함. 동시에 이를 위해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만나서 일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기관 종사자에게 수용자 가족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부모와 자신의 삶에 대한 알 권리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위한 가족 내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 이를 위한 양육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수적임. 또한 교정기관 내 면접환경이나 시스템이 아동, 가족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V. 수용자자녀 문제 대응방안 :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 조사함. 교정, 법률, 공공, 사회복지, 학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참여함. 이후 이 자료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를 지원과 정책제언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문제점과 자

녀 지원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됨.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내용을 토대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문항별로 부처 업무 적절성과 실효성, 시급성, 중요도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후 최종결과를 도출함. 1, 2차 조사는 모두 이메일을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21.0에서 코딩 후 분석함.

2. 조사결과

-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자녀에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총 104개의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16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이를 아동의 4대 권리 영역별로 범주화 함. 생존권에서는 양육과 주거, 경제, 사회적 지원 주제가 도출되었고 보호권에서는 가족, 양육, 학교생활, 수사단계, 재판, 발달권에서는 학업, 심리사회, 신체건강, 참여권에서는 알권리, 접견권, 교정기관, 기타에서는 양형, 사회제도, 사회인식이 주요 주제로 등장함.
- 정부 역할은 6개의 부처별로 지원내용을 2-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의 업무에서는 부처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 모두에서 ‘가족 경제적 지원(긴급구호)’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가족부의 역할에서는 ‘가족상담 지원’과 ‘수용자 가족에게 한부모지원법 안내 의무화’ 부분이 부처업무의 적절성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가장 실효성 있는 업무로는 ‘가족상담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경찰의 업무에서는 부처업무의 적절성으로 ‘체포 시 미성년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체계에 통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효성 있는 업무로 ‘체포 시 미성년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체계에 통보’와 ‘체포 과정 시 아동충격 보호실행 매뉴얼 개발’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법원의 역할로는 적절한 부처업무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의 양형고려’와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자녀문제 인식개선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는 ‘심리단계에서 가족노출과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이라고 평가함.
- 법무부 교정본부의 역할에서는 부처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 모두 ‘자녀 친

화적 가족접견실 환경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교육부의 업무로는 부처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 모두 '부모로 인한 피해 없도록 교사, 교원,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부분이라고 평가함.

- 정부부처의 전체업무 중 가장 평균이 높은 점수를 차지한 부분은 경찰의 '체포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체계에 통보'라는 부분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이었음. 이 두 사업이 부처업무의 가장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나 양육비 마련'을 꼽았으며 민간단체의 역할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례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에서 전문가들은 수용자자녀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법제도 1순위로 '아동복지법', 2순위에서도 '아동복지법', 3순위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추천함. 수용자자녀지원에 적합한 주무부처로는 1순위 '보건복지부', 2순위에서는 '여성가족부', 3순위로는 '법무부'라고 평가함.
- 사회적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 '체포 시 충격완화', '수용자 자녀 차별금지' 순으로 평가함.

3. 소결

-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의 업무 중 경찰업무의 '체포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체계에 통보'라는 부분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을 꼽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나 양육비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민간단체의 역할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례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수용자자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체포 시 자녀를 위한 충격 완화, 수용자자녀 차별금지로 평가하였으며 수용자자녀를 지원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선정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나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

여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수용자자녀 인권보장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음.

VI.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1. 조사개요

- 수용자자녀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국내 현행법상 수용자자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수용자와 가족, 자녀에 대한 내용 확인, 수용단계에 따라 법제에서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함.
- 다음으로 해외에서는 수용자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순으로 수용자자녀 현황과 지원현황 살펴봄. 이를 위해 각 국가별 법무부, 아동복지부, 수용자자녀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및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웹사이트와 문헌을 검토함.
-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인권규범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 당사국에게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책과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권고한 내용을 분석함. 국가별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개 국가의 국가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였음.

2. 조사결과

국내·외 제도정책과 국제인권규범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1)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 수용자의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의 지위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현행 법령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그 동안 수용자 가족은 오직 수용자를 관리하고 수용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통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수용자의 자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법제도는 전무함.
- 우선, 수용자자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용자자녀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수용자 및 그 가족 지원과 연관된 부처인 법무부(형집행법 등), 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등),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교육부(초·중등교육법 등), 행정안전부(경찰), 사법부(법원)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전제로 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 수용자자녀(가족)를 대상으로 특화된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고려해야 함. 수용자자녀의 사례 발굴과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수용자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수용자자녀 보호에 관한 이슈도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최고의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의 체계 속에서 고민될 필요성이 매우 큼.
- 아동은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 아동발달에 필요한 가족생활과 사회적 환경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
- 수용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수용자를 ‘출산한 여성’에서 ‘모든 부모’로 확대해야 함. 남겨진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아동의 배치에 관하여는 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려하되, 공적인 체계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수용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남겨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를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 수용이 개시되는 각 단계에서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고, 아동보호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체도를 마련해야 함.

2) 국외 법제도 현황 검토

(1) 미국

-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국가임. 정부는 2006년 수용자 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녀와 가족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2006)에 의하여 명문화하고, 소관 사무를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 위임하였음.
- 법무부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은 2017년 처음으로 체포수칙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는데, 수용자자녀 지원 예산이 연간 약 500만 달러(약 56억원)에 달함. 법무부 사법통계국은 수용자자녀와 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 관련 법령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무 및 법무부의 수용자자녀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of 2007), 수용으로 인하여 자녀가 15개월 이상 제3자에게 위탁 양육되었다면 수용자의 양육권은 박탈당할 가능성에 처하게 되는 입양 및 안전한 가정을 위한 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의 '체포~수용까지 형사절차에서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규정'과 같은 다양한 주법이 있음.
- 수용자자녀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생존'에 관해서는, 임신부인 수용자를 지원하는 등 양육과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 (2) '보호'에 관해서는, 유아-미취학아동-초등학생-십대와 같이 아동의 연령 단계에 따른 가정과 학교 생활,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지원, (3) '발달'에 관해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학업, 심리·신체·사회적 건강을 위한 지원, (4) '참여'에 관해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수용된 부모를 방문하고 면접할 권리,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는 수용자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음.
- 미국은 비록 아동권리협약에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수용자자녀/가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그 자료를 기초로 정

책을 마련하는 것은 수용자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2) 영국

- 영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의 골격은 정부가 마련한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한 변화(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라는 정책 제안이며, 아동법(Children’s Act)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계획에 따라 잉글랜드 가운데 5개의 지방정부는 수용자자녀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용자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조사하고 28개의 권고안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가족위원회’는 이 권고안에 따라 경찰이 범죄자 체포 시 미성년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은 수용된 어머니와 자녀의 분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R (on the application of Stokes) v Gwent Magistrates Court], 유일한 양육자에 관한 형을 선고할 때 2살 자녀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도 했음(R v Rosie Lee Petherick). 여성 수용자는 수용시설에서 출산할 수 있고, “Mother and Baby Unit(MBU)”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를 18개월까지 일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음.
- 가족의 방문과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상담, 접견 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자 자녀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경찰로 하여금 수용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생후 18개월까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일상적인 양육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이익에 충실한 법원의 판단 원칙은 참고할 만함.

(3) 호주

- 호주는 수용자자녀(가족)만을 구별한 법이나 제도는 없으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빅토리아 주 및 뉴웨일즈 주의 경찰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부모가 구금 상태에 처할 상황에서 자녀를 돌볼 양육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뉴웨일즈 주의 경

우 법원 양형기준에는 ‘가족과 부양할 자녀의 어려움’을 고려하도록 제시되어 있음.

-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미성년자녀의 돌봄에 관한 사항은 아동법원(Family Division of Children’s Court)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 교정국은 각 여성 수용자와 자녀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5세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Mothers and Children Program”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교도소에서 아동친화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은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함.
- 특히 아동법원이 주목할 만한데,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자가 없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관하여 명령(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괄목할 만함. 부모의 수용으로 남겨진 자녀를 위해 아동보호체계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례임.
-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SHINE for Kids의 경우 현재 10개 지역에서 교도소 방문 전과 방문 후에 수용자 가족과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쉬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인 ‘아동가족센터 (Child and Family Centres)’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아동이 부모를 접견할 때 전문가가 함께 동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원하는 수용자자녀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VACRO의 경우 법원단계에서 구금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해 Family Worker를 지정하고 피고인과 가족이 재판단계에서부터 구금까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직원, 교사, 관련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자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목해볼 만함.

(4) 캐나다

- 캐나다 역시 수용자자녀(가족)만을 특화한 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지원과 서비스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과 지원은 교정단계와 경찰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교정국은 “개인가족방문프로그램(Private Family Visiting Program)”을 실시하여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시설에서 두 달에 한 번 3일 간의 접견을 보장하

고 있으며, 여성 수용자는 “엄마-자녀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을 통해 자녀와 거주하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연방교정국은 “Big Brothers Big Sisters(BBBS)”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음.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경우, 경찰은 지침에 의거하여 부모의 체포 후에 아동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아동복지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수감시설이 아닌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무려 격월로 3일 간의 접견을 보장하는 점과 남겨진 아동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아동복지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한 경찰 지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호주와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한데 민간단체의 활동 중에 특이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음. FEAT가 실시하는 ‘또래 멘토링 프로젝트(Peer Mentoring Project)’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엘리자베스 프라이 소사이어티 (Elizabeth Fry Society)의 수용자자녀 캠프인 “Blue Sky 캠프”에서 특이한 점은 15세가 넘는 수용자자녀들은 상담사 훈련과정은 거쳐서 본 캠프에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수용자자녀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친구들과 동생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캐나다 가족과 교정 네트워크(Canadian Families and Corrections Network), 존하워드 소사이어티의 여러 활동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간행물, 아동도서들이 출판은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활동으로 눈여겨 볼 수 있음.

3)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이행현황

- 국제인권기준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아동권리협약 가운데 수용자자녀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책과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일반토론의 날 (Day of General Discussion) 권고사항을 분석하였음.

- 수용자자녀는 다른 아동이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을 보유하며 동등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포, 수사(조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국가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영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권(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북유럽권(스웨덴, 노르웨이), 아시아권(중국, 일본)에 걸쳐 10개 국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의 자녀들” 일반토론의 날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다른 국가들의 이행현황은 우리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의 방향은 수용자자녀(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

Ⅶ. 결론 및 제언

1.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방안은 가족 중심적 정책, 공동체 중심적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관련된 여러 부처와 민간의 협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 함.
-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기부금 등 다양한 자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다양한 민간기관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제도 및 정책 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보건복지부 : 수용자자녀를 특수취약계층 아동이나 위기가정 아동으로 지정, 보호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정비, 부모 수용 시 아동보호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아동 재배치 고려,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가정 지원, 가정위탁제도 내 (수용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가정위탁 마련, 아동복지관련 종사자 교육, 수용자자녀 문제에 관한 연구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 여성가족부 : 수용자가족 지원과 실태조사, 구체적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 경찰 : 아동을 고려한 체포수칙 마련, 남겨진 수용자자녀를 위해 아동보호시스템과 연계
- 사법부 : 양형기준에 수용자자녀의 존재 고려
- 법무부 :
 - 검찰 : 아동을 고려한 체포수칙 마련, 남겨진 수용자자녀를 위해 아동보호 시스템과 연계
 - 교정기관 : 아동친화적인 접견시스템 마련, 접견과정 개선, 수용자자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 교육부 :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학교체계 활용방안 모색, 낙인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교사 및 학교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용자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수용자자녀를 특수취약계층 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하고 수용자자녀를 서비스대상자로 설정, 상담 과정에서 정보노출을 방지, 민원담당 종사자 교육

2) 민간과 협력방안

- 민간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고 민간과 협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민간에서는 수용자자녀와 양육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예를 들어 수용자자

녀들만으로 구성된 편안한 모임, 심리적 완화 , 캠프지원, 진로지도 등의 프로그램) 개발, 부모 접견을 돕는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행, 수용자자녀 이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및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3) 관련법 정비방향

(1) 법률의 정비

- 수용자자녀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것인지와 해당 주무부처에 관한 논의, 기본법 제정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2)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과 역할

- 수용자자녀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인구이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수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하고 수용자자녀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TF팀’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정부 내의 업무들을 조율하고 기능 결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활용, 형사사법기관과 협력, 형사사법 단계별로 연계, 개별가정의 사례 관리,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고 실행결과 평가,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각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3) 수사 및 재판절차, 수용단계에서의 법률정비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체포담당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일, 수용자자녀 국가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양형기준에 자녀요인을 추가하는 것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부모가 수용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접견환경 개선을 통해 자녀들의 실질적 접견권 보장, 수용자 위기자녀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과 아동보호체계의 연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수용자자녀 지원필요성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권관점에서 본 수용자자녀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 즉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이다. 부모의 교도소 수용과 함께 가정은 훼손되고, 보호해 줄 부모를 상실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에서도 소외되기 때문이다. 비록 부모가 교도소에 있지만 자활능력이 없는 아동들이라는 면에서 수용자자녀들은 우리사회의 다른 소외계층아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단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 돌볼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 성원들은 보호의 역할 대신 오히려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이다. 이와 함께 양육할 능력을 갖춘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¹⁾ 그러나 수용자자녀들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수용 후 양육자의 부재,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낙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환경은 대부분의 수용자자녀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며, 아동에 따라서는 성장기의 대부분을 이러한 환경에서 보내기도 한다. 수용자자녀들이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forgotten victims), 제 2의 피해자(second victims)로 불리는 까닭이 이에 있다.

이들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는 “범죄인 가족이 감당해야 할 문제, 소수의 사회성원들의 문제 내지는 사회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일”로 간주된 채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다. 수용자자녀들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우리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10여년이 채 안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민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사례 위주로 극히 소수에게 제공되어 왔던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에 관한 문제가 2007년 법무부 인권국과 형사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형자가족관계 건강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에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정부가 수용자자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작인 셈이다(신연희 외, 2008). 그러나 여전히 수용자자녀들의 정확한 인구규모를 파악하는 일조차 해당 부처에 의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수용자자녀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주와 연방정부에 의하여 수용자자녀들의 현황에 관한 공식자료를 수집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박선영·신연희, 2012).

실천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용자자녀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 예로 수용자자녀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세움”(이하 세움)이 2016년 한 해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수용자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부모 수용 후 조부모나 친인척, 시설 등에 위탁된 경우가 50%나 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가정이 55%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는 부모가 없을 때 경찰이 집에 와서 부모를 찾고 수색하는 것을 경험하였거나, 부모가 체포되는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는 아동들은 당시에 받았던 불안이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경림·최경옥, 2016). 그러나 다른 사회문제와 달리 수용자자녀 문제는 위기에 처한 가정 및 아동을 발굴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고, 수용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담당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보호대상 아동에서 소외되어 왔다.

수용자자녀의 권리보장에 관한 근거는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2조), 아동의 최고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직접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9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11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수용자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며,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 같은 권리가 있고, 각 회원국은 “수용자자녀의 권리는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법집행, 교도소, 사법절차 등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양형단계에서 자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가 수용된 동안 자녀들이 적합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박선영·신연희, 2012).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와 보장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유엔은 2017년 유엔아동권리 협약 회원국들이 제출해야하는 5.6차 국가 이행보고서에는 각 회원 국가들이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교도소에서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수용자와 그 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박선영, 2016). 이러한 요구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가에게 수용자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²⁾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국가차원의 실태조사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수용자자녀 연구가 정책적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용자자녀 문제에 관해 주목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탓에 관련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이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수용자자녀 문제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부처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에서 비롯된다. 수용자자녀들에 대해 사회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정책담당자들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행정안전부를 매개로 하여,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서울대학교는 수용자 위기가족 특히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부처별로 협력하기로 하였다.³⁾ 그러나 당시에 체결된 부처별 협력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었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후속사업들이 미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수용자자녀의 규모나 수용자자녀의 생활실태나 권리상황에 대한 국가차원의 조사는 부재한 상황이며, 수용자자녀 문제는 정책아젠다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에 부모의 교도소 수용 후 남겨진 자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부모가 체포된 동안과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에 남겨진 자녀들이 아동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구비된 환경을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비롯하여 수용자자녀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국제인권기준 내용과 국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여 국내 법적 기준들을 마련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수용자자녀의 인권보장과 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2)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비준하여 당해 12월에 발효하였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을 받고 있다.

3) 2011년 수용자위기가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한 부처별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무부는 자녀 및 가족지원을 위한 가족관계강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경찰청은 부모 체포과정에서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실행하기로 하였으며, 복지부는 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자녀 상담메뉴얼」을 개발하여 학교 등에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서울대학교는 재학생(멘토)과 수용자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최초의 연구인 만큼 정책대안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얻는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취약아동에 대한 인권관점에서 수용자자녀들의 생존현장을 이해하고자 인구규모와 같은 기초적인 정보에서부터, 가정환경, 나아가 자녀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조사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법제도와 국제인권기준이 시사점,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2. 수용자자녀 지원필요성

수용자자녀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죄를 지은 범죄인과 그 가족들을 분리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가족문화와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안전을 훼손한 범죄자에 대한 반감은 무고한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도 예외 없이 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 저변에서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고, 수용자가족들에게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그들만의 일로 ‘구분짓기’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신연희, 2017a: 4).

국내에서 수용자자녀 문제에 관한 인도적 관점은 수용자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정책담당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등장한다. 가족성원들은 범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으므로, 범죄인과 연관 지어 가족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구금된 가족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이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남상철·신연희, 2002).

수용자자녀를 특별히 주목하여 인도적 관점을 적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 “범죄대물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위기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선영·신연희, 2012: 148-151).

한편 수용자자녀지원 정책을 다룬 한·일 국제세미나에서는 수용자자녀지원의 근거로

“범죄통제정책에 활용”, “사회적 책임”, “인도주의의 실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수용자자녀 및 가족을 범죄인 교화와 재범예방에 필요한 지지자원으로 위치 지우는 “범죄통제정책에 활용”은 아이들의 욕구가 무시되고 아이들의 인권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자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도주의의 실현”은 수용자자녀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 수혜자로 위치 지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용자자녀들은 법의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적 피해자이며 따라서 수용자자녀 지원은 사회적 책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책임”이 적절한 것으로 주장하였다(신연희, 2015b).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들을 수정·보완하여 수용자자녀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의 근거로 “아동의 권리보장”, “위기아동의 보호”,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1) 아동의 권리보장 : 기본권 보장

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해 국내법과 국제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수용자자녀의 권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양육할 능력을 갖춘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조), 또한 복지부의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에 수용자자녀들을 포함시켜 “보호대상 아동은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아동을 포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신연희 2017b).

한편,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 2011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수용자자녀도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부모와 의미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양형단계에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구금 형을 피할 수 없을 때는 수용자자녀가

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전 사회가 책임이 있다. 특히 제 5항, 제 8항, 제 9항은 수용자자녀 지원과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다. 제 5항은 아동은 부모의 지도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으며, 제 8항은 아동은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 9항은 아동의 최고의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있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규칙적으로 접촉할 권리가 있다.”

적합한 돌봄과 지원을 받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는 사회적 책무이며, 아동의 박탈된 권리는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들은 사회적 제약과 다양한 고통을 겪게 된다. 현실에서 상당수의 자녀들은 부모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정상적인 보살핌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부모가 수용되는 당시 상황에서도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McCaskill, 2014), 수용자자녀들은 우리사회의 다른 어느 아동들보다도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아동들이다. 또한 국가 형벌권의 집행과정에서 박탈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이다(박선영·신연희, 2012: 149). 따라서 수용자자녀들에게도 아동에게 주어진 기본권인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즉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권리가 수용자자녀들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2) 위기아동의 보호 : 문제해결 및 범죄대물림 예방

수용자자녀들은 부모가 수용된 후 부모와의 분리, 빈곤과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 다양한 형태의 심리·정서적 문제,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초래된 학교부적응 및 일탈행동에의 연류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겪게 된다(신연희, 2017b).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관련연구에 의하면 자녀들의 5명 중 1명 정도가 심리·정서적 문제와 학교부적응 문제에 직면하고, 10명 중 1명 정도는 비행에도 노출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은 유형 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심리·정서적 문제, 학교부적응, 비행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신연희, 2015a).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외로움, 무력감, 불안, 자기비난,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과 같은 위축적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이러한 증상이 심각하여 우울증, 불안증, 자살 생각 등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발전된 상태에 있기도 하며, 학업동기부족과 낮은 학업성적, 결석, 학교중퇴의사를 밝히는 등 학교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신연희, 2012). 한편 심하게는 가출, 폭력, 절도, 양육자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등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표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연희·변호순, 2014).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라 자녀들이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은 자녀들의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연령에 한정하기 보다는 취학 전의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자녀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신연희, 2015a).

수용자자녀들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이고, 청소년복지법상의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며, 더욱 불행한 경우는 성장과정에서의 위기가 결국은 소년법상의 ‘비행청소년’에 이르게 함으로써 부모의 범죄를 대물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범죄자라는 것이 범죄를 대물림하는 직접적인 요인인 것인 결코 아니지만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합법적 행동에 연루되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Murray & David, 2005).

따라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동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들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문제해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은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것인데, 예를 들어 가족 내의 취약한 지지자원을 사회가 보완하는 것,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 취약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신연희, 2012).

수용자자녀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일은 장기적으로는 비행예방과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범죄의 세대전이를 차단하는 것은 수용자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요인들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인적자원들을 보호한다면, 사회적 피해자로서의 취약아동들이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로 전환하는 불행한 일은 줄어들 것이다.

3) 사회 안정 : 가정보호를 통한 재범 예방

가족은 수용자 및 출소자의 중요한 지지자원으로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범죄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남상철·신연희, 2002).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을 때 수용생활에 성

공적으로 적응하는 한편, 건강한 시민으로 가정에 복귀하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가정의 유지에 자녀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들은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의 안정은 수용자의 교화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범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나아가 돌아갈 가정이 있는 출소자들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가족들의 지지를 통해 사회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써 재범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가족을 지원하여 가족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은 출소 후 적응기간 동안 재정적·정서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출소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신연희, 2015b).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용자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실태와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용자자녀들의 인구규모 및 특성에 관한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사회적 지원방안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관한 거시적 수준의 연구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주제들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의 범위는 수용된 부모, 자녀 양육자, 부모가 수용된 자녀, 전문가, 국내외 관련문헌 등 다양한 수준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대상 델파이 조사, 문헌 검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수용자자녀의 인구규모와 성장환경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원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용자 전수조사를 수행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통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녀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수용자자녀들의 삶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부모의 교도소 수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관련 법제도와 국제인권기준을 폭넓게 분석하는 한편 교정전문가 및 실천가와 관련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용자자녀 지원제도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로 자료의 수집을 연구대상인 수용자자녀가 아닌 교도소에 수

용된 부모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명시한다. 연구대상자(분석단위)와 자료 제공자(관찰단위)의 불일치는 이 연구의 자료가 가지는 한계일 수 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용자자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질적 자료를 통해 양적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수용자자녀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삶의 경험에 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유형별 연구방법과 세부연구내용은 <표 I-1>과 같다.

조사유형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세부 연구내용
1. 설문조사	수용자	-53개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 -최종 40,936부 확보	-수용자자녀 인구현황 -부모의 수용전후 자녀상황 -양육/가정환경 기초사항
2. 설문조사	자녀들의 양육자 및 보호자	-8개 교정기관 접견은 가족 -4개 교도소에서 개최하는 가족사랑 캠프 참여자 설문조사 -최종 242부 확보	-자녀들의 성장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자녀 및 가족들이 직면한 문제와 인권보장 내용
3. 심층면접	심층면접	-부모의 교도소 수용을 경험한 자녀 17명(아동, 청소년 포함) -수용자자녀 관련 민간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선정(세진회, 세움, 아동보호시설 등)	-부모의 수용이 초래한 문제에 관한 생생한 경험 -문제를 극복한 사례발굴하여 수용자자녀 성장 모델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가능성 탐색
4. 델파이 조사	전문가	-각계 전문가 18명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참여자 발굴	-수용자자녀 지원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에 관한 합의점 도출
5. 문헌조사	문헌/인터넷 등 의사소통 기록물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법제도 분석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법제도 분석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 검토
6. 정책 토론회	-	-연구진 전원 및 정책집행 관련부처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	-연구결과의 공유 및 정책제언 논의

Ⅱ

◆ ◆ ◆ ◆ ◆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1. 국내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2. 외국의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1. 국내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현황

국내에서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첫 시도는 수용자대상 표본조사에서 수행되었다(전영실 외, 200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가정을 중심으로 조사한 까닭에 자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다만 20세 미만을 기준으로 수행자의 67.9%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수용자자녀의 전체적인 인구현황을 추산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다(전영실·신연희·김영식, 2007: 86).⁵⁾

법무부가 가족프로그램(“가족사랑캠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에서는 매일 40,800여명의 수용자 미성년자녀들이 상존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가족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수용자들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우선 선정됨)을 감안할 때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40,000여명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도 명시하였다(법무부, 2014).⁶⁾

한편 출소가 임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36%가량이 미성년자녀가 있고 미성년자녀수의 평균은 1.43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일일평균 23,100여명 가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이동훈 외, 2015: 53).⁷⁾

가장 최근의 조사로는 성동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를 전수 조사한 것을 들 수 있는데(신연희, 2016), 조사대상자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체 수용자의 31.2%이고 미성년 자녀수의 평균은 1.54명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일일평균 수용자자녀수는 23,000여명이고, 연간으로는 48,000여명의 미성년자녀들이 발생하는 것

5) 이 연구는 기형수형자(556명)로 구성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유자녀율 및 미성년자녀율이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 매일 40,800여명의 수용자 미성년자녀들이 상존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일일평균수용인원(4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수용자의 유자녀율 55%에 미성년자녀수 평균 1.65명을 곱하여 환산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가족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특성(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수용자들이 프로그램 대상자로 우선 선정됨)을 감안할 때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40,000여명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법무부, 2014).

7) 출소가 임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의 인구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수용된 기간이 장기간 경과된 수행자라는 표본의 특성상 미성년자녀의 수가 적게 산출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36%가량이 미성년자녀가 있고 미성년자녀수의 평균은 1.43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일일평균 23,100여명 가량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이동훈 외, 2015: 53).

으로 보고하였다. 일일 평균 23,000 여명의 수용자자녀가 상존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나라 전체 19세 미만 총인구 10,276,000명(2012년 기준)의 0.22%에 해당하고, 매년 48,000 여명의 자녀들이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분리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19세 미만 총인구 10,276,000명(2012년 기준)의 0.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들의 연령을 학제기준으로 네 개의 범주(취학 전, 초등학생연령, 중학생 연령, 고등 이상 연령)로 구분하면 고등학교 이상연령, 초등학교 연령이 각각 30.5%와 29.0%로 비슷한 수준에서 가장 많으며,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령 전 연령에 해당하는 6세 이하의 어린자녀들도 24.6%에 달한 것으로 집계하였다(신연희, 2016).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부모를 교도소에 보낸 아동의 규모에 관한 정확한 집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조사에 따라 표본의 특성들이 다양할뿐더러 자녀의 연령기준도 상이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로는 수용자자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신연희, 2017a). 또한 추출한 표본이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 또는 특정한 교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녀들의 연령 기준 역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수용자자녀 인구규모에 관한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집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아동종합실태 조사에서 수용자자녀 현황에 관한 자료수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종단적 패널연구인 “취약가족과 아동복지연구(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에서는 취약가정의 가구특성, 가족관계, 양육자의 건강과 인지능력, 양육여건 등 아동발달과 관련된 다수의 항목들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아버지의 현재 수용여부와 과거 수용경험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아버지가 수용되어 있는 자녀들과 그렇지 않는 자녀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신연희·변호순, 2015).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도 부모의 교도소 수용여부가 조사문항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것도 가족 및 아동영역에서도 수용자자녀에 관심이 얼마나 부족하였는지를 보여준다.

2)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 수용자자녀 문제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남상철·신연희, 2002; 박선영·신연희, 2012), 그리고 법무부가 중심이 된 정책실무자들은 재범예방을 위한 가족자원의 활용목적으로 수용자자녀 문제를 주목하여 왔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수용자자녀들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수용자자녀들의 문제해결에 관한 관련연구들의 논의도 함께 검토하였다.

(1) 자녀들에 대한 낙인

인권차원에서 수용자자녀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에 관한 인식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비난, 낙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총체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수용된 부모와 자녀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하여 수용자자녀들 스스로도 수용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수치심, 무력감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지원은 수용자자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박선영·신연희, 2012; 신연희, 2015b). 수용자자녀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소외아동 인구에 수용자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보고서에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수용자자녀 권리장전을 마련함으로써 법에 의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특히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헌법 34조),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31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박선영·신연희, 2012: 186-187).

미국의 수용자자녀 권리장전(2003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국내에서도 연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 제안된 “수용자자녀 보호원칙”은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국민인식 및 지원방안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된 동안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일로 인하여 비난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에 관한 결정에서 아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이가 원할 때 부모와의 관계유지와 접촉기회와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겪게 된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받아야 한다.” 등 다섯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연희, 2017a: 26).

(2) 보호받을 권리의 박탈

양육자 및 양육환경의 불안정은 부모의 수용 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교도소 수용은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집행과정에서 초래된 대표적인 부작용은 자녀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수용자가정의 해체 실태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수형자 대상 표본조사에서 기혼 수형자의 35%가 이혼한 상태이거나 이혼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전영실 외, 2007: 77),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대상 조사에서는 기혼수형자의 49.4%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인데 비해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보다 적은 36.2%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연희, 2015b: 47). 대다수의 자녀들이 한쪽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됨에 따라 한 부모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수용자자녀들의 20% 이상은 양부모 모두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이동훈 외, 2015). 부모가 수용된 후 보호자가 바뀐 경우가 30%에 달하고, 자녀들의 20% 이상이 형제 또는 자매와도 떨어져 살게 되기도 한다(전영실 외, 2007: 121). 가장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양육기관에 맡긴 경우는 0.8%, 미성년자녀끼리 있다고 응답한 3.8%로 조사되었다(전영실 외, 2007: 123). 부모의 수용 후 남아있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74.6%이고, 조부모가 양육자인 경우는 13.7%, 기타유형은 11.7%인데 기타유형에는 자녀들끼리 2.4%와 시설에 보내진 경우 1.7%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연희, 2016).

부모와 분리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육환경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된다. 부모와 분리되는 초기는 자녀들의 25% 정도가 양부모 모두와 분리된 채 부모 외의 사람에 의해 양육되지만 부모의 수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어 부모가 가정으로 복귀할 즈음에는 35% 정도가 양부모 모두와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수용자자녀 네 명에 한명 꼴로 부모없이 살던 초기와는 달리, 부모의 수용말기에는 세 명 중 한 명은 양부모 모두와 헤어져서 살아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신연희, 2016).

이와 같은 현실을 주목할 때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우선 대리가정을 통한 보호체계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들 수 있다. 가정이 이미 해체되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한쪽 부모마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위탁과 같은 대리적 서비스가 필요할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수용되어 있는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자녀에 대해 가정 및 시설위탁, 후견제도와 입양에 관한 조항이 아동복지법상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된다(신연희, 2015a).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가정위탁, 시설위탁,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보완하거나 가정위탁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수용자자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탁의 경우 부모의 출소 시까지 가정위탁자,⁸⁾ 시설위탁자에게 부모를 대

8) 가정위탁의 유형에는 조부모가 위탁부모가 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외의 친인척에게 위탁하는 친인척가정위탁, 아동이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 양육되는 일반가정위탁이 있으며, 위탁가정에

신하여 양육권을 한시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박선영·신연희, 2012: 208).

가정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한 자녀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의 시작은 보호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수용자녀들은 대개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도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와 분리되는 시점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사항이다(신연희, 2016).

(3) 양육환경의 손상

수용자녀의 연령을 비롯하여 수용된 부모의 성별, 수용된 부모와의 관계, 양육환경의 특성에 따라 자녀들에 대한 개입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lchik, 2007). 그러나 국내의 관련연구들의 논의는 이와는 다르다. 수용자녀에 대한 지원은 자녀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보다는 가정을 단위로 하는 일반적인 접근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법무부, 2014, 신연희, 2014). 자녀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수용자가정에서 보여지는 보편적 특성이 보다 강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빈곤을 비롯한 양육환경을 손상 문제를 들 수 있다(신연희, 2014). 빈곤의 문제는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대다수 가정의 문제인 만큼 소득보장에 관한 보조적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박선영·신연희, 2012; 신연희, 2016; 이동훈 외, 2015).

관련연구에 따르면, 수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가정은 16.5%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수급율(2.3%)의 6배에 해당할 만큼 수용자가정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이동훈 외 2015: 48), 수용자대상 조사에서 부유한 편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한데 비해, “가난한 편”과 “매우 가난하다”를 합하면 54.9%로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매우 가난하다”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28.1%(신연희, 2016). 수용자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의 수용 후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생계부양자의 수용으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수용된 가족에 대한 지원, 방문에 따른 경비 등의 문제는 대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던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한다. 실제로 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는 매월 양육비보조를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의료급여,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심리치료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연구에서 경제적지원에 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용자가정의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신연희 2014).

궁핍한 생활은 생계부양자였던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닥치는 일반화된 문제로서 빈곤이 파생하는 문제들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수용자녀 문제에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신연희·변호순, 2014).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지원과 같은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신연희, 2015), 수용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경제적 지원, 취업지원)와 정보제공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전영실 외, 2007: 135-136).

(4) 학교부적응 문제

관련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정서적 문제와 학교부적응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용자녀들이 학교부적응 문제를 얼마나 경험하게 되는지는 자녀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문제예방을 위한 지원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신연희, 2015a). 이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녀들의 부모요인들과 가정환경 요인들이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비행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적은 반면에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는 것이다. 학교부적응 위기를 겪게 되는 수용자녀들은 부모의 교도소 수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자녀,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 부모들이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해체된 가정의 자녀, 그리고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므로 나타났다(신연희, 2015a).

자녀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지원은 제도권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학교체계를 활용하여 자녀들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수용자녀들에 대한 학업지원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녀를 학업 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외되어 있는 "수용자녀들의 인권 보장", 양육환경의 불안정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교육 여건의 불비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수형자 자녀들의 "교육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소외아동에 대한 출발선상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사업, 교육복지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의 체계에 수용자녀 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하였다(박선영·신연희, 2012: 195-198). 특히 현행 제도권 내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교도소 수용자 및 출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멘토링,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제행동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느 한 유형의 서비스에 한정하지 말고 심리·정서적 치유, 학교적응력 향상, 비행예방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연희, 2015a).

다만 학교체계 내에서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의 발굴방법의 개발과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사실이 노출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박선영·신연희, 2012: 198).

(5) 비행행동

자녀들의 비행행동은 부모의 수용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아니지만, 부모 수용으로 초래된 취약한 상황이 비행행동에의 노출기회를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다(신연희, 2015a). 부모의 교도소 수용은 자녀들의 성장환경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행행동에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남자비행청소년의 8.1%, 여자비행청소년의 10.3%가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으며(강경래, 2013),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여자비행청소년의 28.0%가 가족 중에 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있다고 한다(신연희·이백철, 2008: 72). 한편 교도소 수용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13.2%는 가족 중에 교도소에 입소한 적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영실 등, 2007: 65). 수형자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지위비행과 심한비행을 한다는 응답이 10%이고 심각한 비행행동에 해당하는 경찰체포율은 3.1%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연희, 2015a). 경찰체포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년범죄율과 비교하면, 소년법상 소년범죄인구(10세 이상 19세미만)는 2015년 기준으로 71,035명으로(법무연수원, 2017: 554) 이는 해당연령의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만명당 1411.8명(100명당 1.41명) 소년범죄율은 1.4%라 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자녀의 범죄율(3.1%)은 우리나라 전체 소년범죄율의 2.2배 정도 높은 셈이다.

2. 외국의 수용자자녀 관련연구

이하에서는 수용자자녀에 관한 국외 연구를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에 관한 연구, 범죄원인에 관한 종단연구, 수용자자녀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대다수는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된 종단연구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부모의 구금이 강력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동향들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연구들이다(Arias et al., 2015).

1)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트라우마(Braman, 2004), 스트레스와 긴장(Swisher & Waller, 2008), 고립감(Shlafer & Poehlmann, 2010), 분노와 우울감(Murray & Farrington, 2008), 경제적 위기(Haskins, 2015; Wright & Seymour, 2000; Glaze & Maruschak, 2010), 공격성(Wildeman, 2010; Murray et al., 2012), 낙인(Murray & Farrington, 2008; Phillips & Gates, 2011), 낮은 교육성취도(Foster et al., 2009; Hagan & Foster, 2012; Dallaire et al., 2010), 비행(Murray et al., 2012; Roettger & Swisher, 2011; Kjellstrand & Eddy, 2011; Murray & Farrington, 2005) 등이다. 모든 연구들이 일관성 있게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Murray(2007)와 Kruttschnitt(2011)은 구금 전, 중, 후 혹은 내적/외적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른 양상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심리적 손상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고 있다(Golembeski & Fullilove, 2005; Maruschak & Beck, 1997; Freudenberg, 2001; Binswanger et al., 2009; Masooglia, 2008; Schnittker, 2007; Binswanger & Stern, 2007; Wilper et al., 2009; Wilbur, 2007; Foster & Hagan, 2013).

Phillips와 동료들(2002)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초래한 구금의 증가와 이로 인한 수용자자녀의 증가에 주목하였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2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43%가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였으

며,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가난하고 부모가 약물중독 상태에 있으며,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했다. 또한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주의력 결핍증상과 주의산만증(hyperactivity), 행동장애, 우울증상을 보였다.

Lee와 동료들은(2013) 미국전역의 청소년건강 종단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진단하였다. 16개 건강 진단 항목 중 8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우울증, 트라우마, 불안, 콜레스테롤, 천식, 편두통, HIV/AIDS, 좋지 못한 건강상태 등이다. 아버지의 구금은 HIV/AIDS를 제외하고는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구금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저하하는 반면에, 어머니의 구금은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아버지의 구금과 어머니의 구금이 주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Foster & Hagan(2013)의 수용자자녀에 관한 연구 결과, 어머니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은 내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며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반면,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은 외적인 행동과 마약 사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Wildeman & Turney(2014)는 21명의 돌보는 사람과 선생님의 보고를 분석하여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아이들이 공격적 행동, 불안, 우울, 집중문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어머니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자녀의 나이에 주목했다. Sharp & Marcus-Mendoza(2001)은 유아와 취학 전 아동들이 엄마의 구금으로 인해 우울감을 더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Johnston(1995)은 청소년에 비해 아동들이 엄마의 구금으로 인해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한다고 분석하였다. Cunningham & Baker(2004)는 청소년의 경우 엄마의 구금을 경험하게 되면 엄마에 대한 분노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수치심, 슬픔, 혼란, 죄책감, 낙인, 고립감까지 느낀다고 분석하였다.

캐나다 수용자자녀를 연구한 Cunningham & Baker(2004)는 수용자자녀들이 분노와 좌절을 느낀 나머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성을 끊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울증, 공격성 등을 측정하는데 반해 Miller(2016)는 여성 수용자자녀와 일반 아동의 신경학적 결손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여성수용자자녀의 신경학적 결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드러졌다. 병행된 질적 연구에서도 특히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여자 아동이 평생 동안 더 위험한 신경학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Brewer-Smyth(2012)가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여성 수형자

가 그렇지 않은 여성수용자에 비해 신경학적 결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2) 빈곤

수용자자녀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Wright & Seymour(2000)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서 빈곤을 핵심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수용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경제적인 빈곤, 낮은 학업성취, 이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부모가 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더한 빈곤에 빠지게 되고 출소 후에도 부모의 경제활동은 어려움에 빠진다고 분석하였다. 이후에 실시된 연구들은 모두 입소 전 가정의 빈곤, 입소 후 더 악화된 빈곤, 출소 후에도 풀리지 않는 빈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Glaze & Maruschak(2010)은 구금된 부모의 과반 수 이상이 입소 전에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의 유일한 경제적 원천이었음을 주목하며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제적 빈곤에 빠지게 됨을 지적하였다. Geller와 동료들(2009)은 출소한 부모가 구금의 낙인으로 인해 구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수용중이나 출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The Pew Charitable Trusts가 보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부모의 구금 동안 가정 수입은 22% 감소하고, 출소 후에는 15% 감소하며, 출소한 수용자는 구금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11%의 시간을 덜 벌고, 1년에 40%의 시간을 덜 벌고, 1년에 평균 9주를 덜 번다고 조사되었다.

Miller(2006)는 특히 여성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보고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가 싱글 맘인 경우, 구금 후에 조부모가 키우게 되고, 이미 조부모는 다른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 수용자의 자녀는 더한 위기에 처한다고 분석하였다. 반면에 아버지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Schwartz-Soicher 와 동료들(2009)은 특히 아버지의 구금 중, 출소 후에 심한 빈곤을 겪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Wildeman(2013)은 아버지의 구금을 겪은 아동은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흑인 아동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분석했다. 출소 후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관해서 Sugie(2012)는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버지의 구금과 가족의 복지 수급간에 직접적이며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상의 문제

Geller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인지적 발달에 부모의 구금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부모가 구금된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간의 인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Haskins(2015)는 2008년에 사법통계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 발표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에 관한 특별 보고서 상에서 2백만의 수용자자녀들의 대다수가 발달단계에 있는 12세 미만의 아동임에 주목하여 수용자자녀들의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s)과 비인지적 기술(noncognitive skills)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비인지적 기술의 발달에 관해서는 종단연구인 Fragile Families and Child Wellbeing Study(FFS)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용자자녀들의 비인지적 기술 발달을 분석하였다. 비인지적 기술은 사회적이고 정서적 행동, 개인적 특성,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운동기능을 포함한다. 비인지적 기술의 발달은 초기 아동기에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아동의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 된다. 1세부터 9세까지의 FFS 데이터 분석을 통해 Haskins는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아동들의 반사회적 성향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생활에 차질이 생겼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녀 차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자의 2014년 연구에서는 여자 아동과 남자 아동 집단 모두 부모의 구금이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2015년 분석에서는 남자 아동 집단만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반사회적 성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반면에 부모의 구금이 친사회적 기술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askins(2015)는 수용자자녀의 인지적 기술발달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Haskins(2014), Turney & Haskins(2014)의 연구에서는 수용자자녀들이 학년 유예와 특수교육에 배치되며, Pew Charitable Trusts(2010)는 수용자자녀들이 학년유예 되고, 퇴학을 경험하고, Dallaire(2007)와 Dallaire & Aaron(2010)은 수용자자녀들이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Haskins(2015)는 수용자자녀들의 학교와 학업에서의 문제점은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Haskins(2015)는 10세까지는 인지적, 비인지적 기술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학문적 성취와 노동시장에서의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기술이 동일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상황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4) 학업부진 및 학업중단

부모의 구금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Dallaire(2007), Nichols & Loper(2012), Dallaire & Aaron(2010)은 수용자자녀들이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Cho(2009) Dallaire & Wilson(2010), Foster와 동료들(2009), Hanlon과 동료들(2005)은 수용자자녀들이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낮다고 분석하였다. Haskins(2013)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구금된 여자 아동들이 비교집단에 비해 읽기 능력과 수학 문제해결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Foster & Hagan(2009) 역시 아버지가 구금된 아동들이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에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낮은 학업성취도는 학급유예로 이어질 것이다. Haskins(2014), Turney & Haskins(2014)은 수용자자녀들이 학급유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Trice & Brewster(2004)은 13세에서 20세의 자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가 수용된 자녀들이 학년유예율이 4배나 높았으며 3배나 더 결석률이 높았다. Pew Charitable Trusts(2010)의 조사결과 수용자자녀들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년 승급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퇴학을 당한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업에서의 문제들은 심하게는 학업중단(중퇴)로 이어지기도 한다 Cho(2010), Cho(2011), Dallaire와 동료들(2010), Nichols & Loper(2012), Trice & Brewster(2004)는 수용자자녀들이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학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구의 구금이 더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Dallaire와 동료들(2010)은 어머니의 구금이 더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으며, Trice & Brewster(2004)는 어머니의 구금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구금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4배나 높았다. Cho(2011)의 연구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어머니의 구금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20~28% 포인트 더 높게 학업중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ynh-Hohnbaum과 동료들(2015)은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 청소년 건강 중단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총 15,71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82.6%는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13.8%는 아버지의 구금을 2.0%는 어머니의 구금을, 1.7%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구금을 경험했다. 분석결과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확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구금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55.8% 낮았으며,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사람은 53.1%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어머니의 구금이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만성적 구금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한번 구금될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확률은 16.7% 감소하고, 아버지가 한번 구금될 때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확률은 8.1% 감소한다.

수용자자녀들의 낮은 대학 진학률도 보고되고 있다. Hagan & Foster(2012)는 수용자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수용자의 자녀들이 남성 수용자의 자녀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낮고 대학 진학률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Haskins(2015)는 수용자자녀들이 이렇게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였다. 수용자자녀의 학업 문제에 대해서 Dallaire와 동료들(2012)은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학교 내의 낙인이 증가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사들은 어머니의 구금이 아버지의 구금보다 학교생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교사들은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아이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연구들이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Cho(2009)는 어머니의 구금이 자녀의 읽기와 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어머니와 분리된 자녀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5) 양육자의 변화, 가족의 붕괴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변화되고 경우에 따라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초래된다(Wright & Seymour, 2000; Geller et al., 2009). Glaze & Maruschak(2010)는 구금 후 자녀 양육에 관해 조사하였다. 아버지 수형자의 88%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여성 수형자의 42%는 아이들의 할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23%는 친척이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 수형자의 경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제시한 다수의 연구들 (예를 들어, Fishman,1983; Greene et al., 2000; Kampfner, 1999; Sharp et al., 2001, Miller, 2006)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은 한번 혹은 그 이상의 양육자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Acoca & Raeder, 1999; Johnston, 1995; Johnson, 1995), 형제자매와의 분리까지 경험하게 된다(Acoca & Raeder, 1999; Cunningham & Baker, 2004; Sharp et al., 2001).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형제자매 혹은 비구금 부모를 위해 성인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생계를 책임져야할 상황이 발생한다(Adalist-Estrin, 2006; Cunningham & Baker, 2004; Nesmith & Ruhland, 2008; Saunders & McArthur, 2013).

연구자들은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양육자가 바뀌는 상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과 주거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Brennan, 2014). McCormick 와 동료들(2014)은 부모의 구금으로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청소년들 역시 혼란을 겪게 되며 부모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일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ayes, 2007; Poehlmann, 2005).

부모의 구금 후 자녀 양육에 관해 Cunningham & Baker(2003)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교도소에 구금된 여성 어머니 수용자 40명을 조사하였는데, 여성 수용자들의 대다수가 싱글맘이거나 유일한 양육자였기 때문에 경찰 체포와 동시에 빠르게 자녀 양육자를 결정하게 되고,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공식적 개입 없이 진행된 이러한 빠른 결정은 예기치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개입하여 위탁가정에 맡겨지면 기간에 따라 부모의 자격이 박탈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 부모 수용자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2014)는 구속되거나 수용된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Cunningham & Baker(2004)은 조부모나 친척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양육자가 부모의 구금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는 아동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부모가 어디있는지에 대해 속은 아동들은 불순종, 분노, 파괴적인 행동, 비행행동을 보이기 때문에(Seymour, 1998), 아동/청소년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권고된다(Dawson et al., 2013).

호주 가톨릭 대학교 내의 연구 기관인 “Institute of Child Protection Studies”는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수용자자녀 12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부모의 구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에 “Children of Prisoners: Exploring the need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have a parent incarcerated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를 발표하였다. 15~18세 7명, 6~14세 5명이 참여하여 부모의 구금 후 (1) 가족관계 (2) 돌봄 책임의 증가 (3) 교육 (4) 수치와 낙인 (5) 지원을 얻는데 어

려움 (6) 감정적 혼란 (7) 경제적 어려움 (9) 불안정성과 집 없음 등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6) 범칙의 대물림, 비행

Roettger와 동료들(2011)은 아버지의 구금이 자녀의 마리화나와 다른 불법 약물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국가 청소년건강 종단연구(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의 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5년에 7학년에서 12학년과 2002년에 18~27세 총 19,744명(남자 7,157명, 여자 22,142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의 13.7%, 여성의 14.4%가 아버지가 구금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리화나 사용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남성은 51.3%, 그렇지 않은 남성은 37.7%,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여성은 39.3%, 그렇지 않은 여성은 28.3%가 마리화나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른 불법 약물사용도 동일한 결과가 추출되었다.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남성의 39.4%, 그렇지 않은 남성의 27.8%,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 여성의 28.9%, 그렇지 않은 여성의 22.2%가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경험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수용자의 4분의 1이 마약 사범이며, 수용자의 60%가 입소 전에 마약을 정기적으로 사용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부모의 이러한 범죄적 성향이 이미 자녀에게 전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자자녀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Kjellstrand & Eddy(2011)는 부모의 구금이 자녀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오리건 주(州)의 12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조사된 Linking Interests of Families and Teachers(LIFT)의 종단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655가정이 참여하였으며 각 가정의 자녀를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1명의 청소년의 어머니가 구금되었으며, 53명의 청소년의 아버지가 구금되었고, 7명의 청소년은 부모가 모두 구금되는 경험을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은 10.2%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며, 더 적은 수입을 가졌으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더 받으며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았다.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가정은 싱글 부모이거나 양부모 가정이 더 많았으며, 부모들의 우울증이 강하고 신체적 건강이 약했으며, 자녀에 대해 부적절하고 일관성 없는 훈육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학년이 되는 해에는 문제행동과 심각한 비행도 측정되었는데, 문제행동은 “아동행동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고, 심각한 비행은 ”엘리엇 비행 척도(Elliot

Delinquency Scale)”를 통해 11가지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과 심각한 비행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금을 경험하는 부모들이 처한 다각도의 문제적 상황 - 신체적 건강의 문제, 낮은 학력, 비효율적인 훈육방식, 재정적 문제- 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urray, Loeber, Pardini(2012)는 수용자자녀들의 절도, 마리화나 사용, 우울,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피츠버그 청소년 연구”의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7세~13세의 청소년이 13세~25세 되었을 때, 총 1,009명의 남자 청소년을 조사하였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부모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 부모가 체포된 경험을 가진 청소년 집단, 부모가 기소된 경험을 가진 집단, 부모가 구금된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절도, 마리화나 사용, 우울, 낮은 학업성취도를 각각 조사하였다. 네 집단 모두에서 절도와 마리화나 사용,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도가 나타났지만 특히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집단의 절도와 마리화나 사용은 더 높았다. 그러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우울증과 낮은 학업성취도는 네 집단 모두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네 집단 간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절도였는데, 자녀들의 충격이 가장 큰 집단인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청소년이 자녀들의 충격이 부모의 구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인 부모의 기소를 경험한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절도율을 보였다.

2) 비행 및 범죄 원인에 관한 종단 연구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지만, 그 중 최악의 결과는 비행일 것이다. 수용자자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그들 역시 부모와 같이 비행을 저지르고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이른바 범죄의 대물림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의 대물림 현상에 관해서는 수용자자녀에 관한 연구는 물론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된 범죄의 원인에 관한 종단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영국과 미국에서는 종단연구인 아동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부모의 범죄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캠브리지 청소년 연구

소년들의 범죄 성향이 발전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61년에 런던 남부의 8세 남아 411명을 40년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가 행해졌다. 연구결과, 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기소된 부모, 비행을 저지른 형제/자매, 형편없는 (poor) 자녀양육, 빈곤, 낮은 학업 성취도, 많은 가족의 숫자, 낮은 지능, 부모와 격리, 부모의 관리감독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전체 중에서 1%의 가족이 18%의 기소를 차지하여 적은 숫자의 가족에게 범죄가 물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낮은 가족 수입, 많은 가족 수, 낮은 지능, 부모의 형편없는 자녀 양육을 경험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10배나 더 높은 범죄성을 보였다. 가족의 범죄 성향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아버지, 어머니, 남자형제, 누나는 각각 범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소년 범죄자에게 있어 특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여자형제 보다는 남자형제, 특히 형의 범죄성이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들어났다. 부모와 관련해서는 범죄자 부모는 소년 범죄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 중의 하나로 범죄 부모를 가진 대상자들은 32세 때 더 높은 배우자 폭력을 보였으며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범죄 부모를 가지지 않은 대상자 보다 높았다. 특히 18세와 32세 때 반 사회적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범죄자 부모의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어머니의 영향보다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커서, 기소된 부모가 없는 경우, 대상자의 30%가 본인이 기소된 반면, 기소된 아버지를 가진 대상자의 63%가 본인이 기소되었다. 연구자들인 Farrington과 그의 동료들은 범죄자 부모가 범죄자 아들을 초래하는 현상에 대해 부모의 형편없는 관리/감독과 양육이 자녀들의 범죄성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2006).

(2) 피츠버그 종단 연구

미국의 OJJP(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상관관계를 찾고자 1987년 피츠버그에서 12년 종단연구를 시작하였다. 1987년과 88년 사이에 피츠버그 공립학교의 1,517명의 남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1학년, 4학년, 7학년 세 집단으로 구성하여 3년간 6개월 마다 조사를 한 후 4년째부터는 1년마다 추적조사를 시행하였다. 영국 캠브리지 연구와 마찬가지로 범죄가 소수의 가족에 집중되는 현상이 들어났다. 참여자 가정의 5%가 30%의 범죄를 설명하고 있었으며 8%가 43%의 범죄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 구성원의 체포가 참여자의 체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삼촌, 숙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포가 각각 모두 대상자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버지

의 체포였다. 아버지가 체포된 소년들의 31.5%가 체포되었으며 어머니가 체포된 소년들은 7%가 체포되었다. 세대 간 영향이나 반대 성(性)의 영향보다는 한 세대 속에서 동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체포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 다음으로 남자형제의 체포가 본인의 비행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범죄가 아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체포된 아버지는 그들이 젊은 여성을 임신시키고, 나쁜 이웃과 살며, 아이들에게 양심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자녀 양육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Loeber et al., 2008). 범죄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소년들이 빈곤, 10대 부모, 편부모와 같은 다면적인 위험 요소에 노출되며, 그들의 부모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며, 비슷한 지역(Rowe & Farrington, 1997)에 거주하고, 비슷한 성향(Krueger et al., 1998)을 가지며,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며, 부모의 양육, 육아, 훈육, 관리감독 등이 형편없음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3) 수용자자녀 지원방안 관련연구

(1) Monash 대학 연구

호주 Monash 대학 연구팀은 증가하는 수용자로 인해, 수용자자녀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에 직면해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에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 주에 구금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Trotter et al., 2015). 178명의 부모 수용자, 3명의 자녀와 부모 구금을 아동기에 경험한 2명의 성인, 124명의 전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부모의 체포, 구치단계, 양형단계, 수용단계, 출소 후 모든 단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공식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구금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녀들은 어린, 특히 초등학교 들 이었으며, 대다수가 집을 떠나 다른 양육자에게 보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금된 동안 부모와의 접촉은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구금동안 부모로서의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받는 반면, 남성 수용자는 그러한 종류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아, 아버지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출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들은 아동에 대한 지원 프레임에 권리(아동의 권리, 인권), 경찰, 법원, 아동보호, 교육 등 5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였으며, 인권은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호주의 인권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시 아동을 적절한 곳에 연계하고 돌보

며, 법원 단계에서는 보석신청과 양형에서 자녀의 유무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뉴웨일즈 주(州)의 경우 “Section 21A(2)(d) of the Crimes (Sentencing Procedure) Act 1999 (NSW)”에 양형 시 고려해야할 사안중의 하나로 가족과 부양할 자녀의 어려움이 기술되어있다. 아동복지국은 교정을 관할하는 기관과 함께 수용자자녀의 지원과 양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소외계층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명시된 Children’s Services Coordination Board를 통해 수용자자녀들이 파악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교정단계에서는 입소 시 자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아동복지국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 만들고 직원을 교육시키며, 민간단체와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여 제공하고, 출소 전 올바른 부모가 될 준비와 가족을 돌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지원에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계에서는 수용자자녀, 가족, 수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2) 국제 경찰서장 협회 ‘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

2014년 미국 단체인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는 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 (2014)를 발표하였다. 1893년에 경찰의 전문화, 행정력의 강화, 정보의 공유, 기술력의 강화, 부처 간 협력 등을 목표로 설립된 본 단체는 부모의 체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단계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경찰 훈련 모델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연구를 인용하면서 현재 각급 경찰서에서는 부모 체포 시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명문화한 경찰서는 몇 개의 경찰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찰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만큼 범죄자 자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state) 법령에도 부모의 체포 후에 경찰이 체포된 자의 자녀의 안전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제시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전제로 제시한 사안은, “부모의 구금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이다, 부모의 체포는 자녀에게 지속되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모가 체포될 무렵에 아동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아동의 장/단기적으로 안녕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부모와 자녀 간 관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아동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많은 조직이 함께 공유해야할 책임이다” 등이다.

본 단체는 최종적으로 부모 체포 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책무를 담은 ”모델 정책(Model Policy)“을 제시하였다(그림 참조). 모델은 정책(policy), 목적

(purpose), 정의(definition), 절차(procedure)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정책(policy)에서는 “경찰은 부모의 체포로 인해 아동이 겪을 잠재적 트라우마를 최소화 하고, 아동의 신체적 안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p.19)”라고 명시하였다.

목적(purpose)에서는 “이 정책의 목표는 경찰과 아동복지국, 다른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부모의 체포로 인해 아동이 겪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동들은 책임감 있는 양육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이 정책의 주된 목표는 체포의 안전성, 경찰/용의자/기타 관련자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부모의 체포를 목격할 아동과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p.19)라고 명시하였다. 정의(definition)에서는 본 정책에서 사용될 용어로서 아동, 부모, 양육자, 아동복지국, 파트너 기관, 트라우마, 책임감 있는 성인 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절차(procedure)에서는 (1)경찰서장 책무(Chief Executives Responsibilities), (2)체포 전 계획(Pre-Arrest Planning), (3)체포하기(Making an Arrest), (4)아동의 적절한 배치결정(Determining Appropriate Placement of Child), (5)아동과의 상호작용(Interacting with a Child), (6)예약(Booking), (7)사후관리(Follow up), (8)기록(Documentation) 등 8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⁹⁾

9) 각 8가지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서장 책무: 관련기관과 회의하고 협력하며, 경찰서 내 담당자를 지정하며, 경찰관을 훈련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체포 전 계획: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이 나올 경우,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아동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아동복지국 직원이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는 통역할 사람을 동행한다. (3) 체포하기: 경찰관은 피체포인이 부모인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있는지 묻는다. 간혹 피체포인은 부모 자격이 박탈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녀의 존재를 숨길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만약 체포 현장에 있다면 체포 장면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떠날 때는 아동을 돌볼 사람이 확보된 후에 떠난다. 아동이 만약 체포 현장에 없다면, 아동복지국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을 확인한다. (4) 아동의 적절한 배치결정: 피체포자의 배우자가 아동을 돌보는 지 확인한다. 배우자가 없다면, 피체포자에게 아동을 돌볼 사람을 결정하도록 한다. 돌볼 사람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사하여,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피체포자가 적절한 돌볼 사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동복지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아동과의 상호작용: 적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아동에게 설명하고, 아동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확인시켜준다. 아동을 안심시킬 물건들(장난감, 인형)들이 있는지 부모에게 묻고 이러한 물건들을 활용하여 아동을 안심시킨다. 경찰은 아동에게 어떠한 의학적, 정신적, 신체적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6) 예약: 예약 담당 경찰관은 피체포인에게 돌봐야 할 아동이 있는지 묻는다. 만약 부모의 체포로 인해 부모가 아동을 돌볼 상황에 방해를 받는다면, 피체포인은 그러한 돌볼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담당 경찰관은 아동을 돌볼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한다. (7) 사후관리: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가능할 때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은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책무를 수행한다. (8) 기록: 다음과 같은 사안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피체포인의 자녀 유무, 자녀가 체포 현장에 있는지의 유무, 자녀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지의 유무(예를 들어 의학적, 정신적, 신

Model Policy

I.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is department that officers will be trained to identify and respond effectively to a child, present or not present, whose parent is arrested in order to help minimize potential trauma and support a child's physical safety and well-being following an arrest.

I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establish new and enhance existing collaborations between this department, child welfare services (CWS), and other key partner organiza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potential trauma to a child whose parent is arrested. Whenever possible, the child should be diverted from official custody and be placed with a responsible caregiver. The primary goal of this policy is to minimize trauma experienced by the child who witnesses a parent's arrest and the separation caused by the arrest while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arrest and the safety of officers, suspects, and other involved individuals.

III. DEFINITIONS

Child: Any unemancipated person under the age of 18, or as otherwise defined by state law, whether or not he or she is present at the arrest. (As used herein, "child" refers to both an individual child or multiple children.)

Parent: Any adult who i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supervision, and care of a child. In most cases, this individual is a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 or guardian.

Caregiver: A responsible adult selected to temporarily care for the child in situations where another individual with legal custody of the child is unavailable. In some cases, responsibility for the temporary care and supervision of a child may be delegated to a relative, neighbor, friend, or another adult, as they are willing and able.

Child Welfare Services (CWS): A public service agency, or its contractee, that has authority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care, welfare, and temporary supervision of a child pursuant to law.

Partner Organization: A group or agency with interests aligned with this department with regards to safeguarding a child from trauma when his or her parent is arrested. This may include, bu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CWS, probation/pretrial entities, victim advocates, corrections, medical/mental health services, schools, youth-serving organizations and faith-based programs.

Trauma: Individual trauma results from an event, series of events, or set of circumstances that is experienced by an individual as physically or emotionally harmful or threatening and that has lasting adverse effects on the individual's functioning and physical, mental, social, emotional, or spiritual well-being.²⁶

Responsible Adult: An individual over 18 years of age who can pass a preliminary NCIC check and clear a child protection registry background check to ensure that he/she does not have any arrests

²⁶ Trauma Definition: Part One – Defining Traum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http://www.samhsa.gov/traumajustice/traumadefinition/definition.aspx>

체적 상태), 양육자에 대한 정보, 관련 기관의 담당자, 아동에 대한 최종 결정, 아동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기타 정보 등(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2014: 20).

for founded cases of child abuse, sexual crimes, domestic violence, recent arrests for drug use or possession, or other violent felony violations.

IV. PROCEDURES

A. Chief Executive Responsibilities

1. Agency Coordination

- a. This department shall have a cooperative agreement with CWS and partner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on-site and other assistance to law enforcement requests for assistance when a child's parent is arrested.
- b. Regular meetings shall be held involving all partner organizations to review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joint operational protocols and to make improvements where necessary.
- c. The department's chief executive shall designate a liaison who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follow-up is conducted to support the well-being of the child of an arrested parent.
- d. Officers shall be provided with a list of agencies that have partnered under the cooperative agreement,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These agencies may be contacted by the arresting officer, or another component of this department, when officers need assistance during the arrest of a parent.

2. Training

- a. Officers of this department shall be train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the child us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language during a parental arrest.
- b. This department shall provide recruit training and routine in-service training on child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trauma on the child so that officers can effectively support the well-being of a child of an arrested parent.

- c. Training will be available to CWS staff and other partner organizations on the role, responsibilities, and protocols of law enforcement during arrest situations. Cross training will be provided to officers of this department by CWS staff and representatives of other partner organizations on their roles, responsibilities, and policies for a child when his or her parent is arrested.

B. Pre-Arrest Planning

1. Call takers at the emergency communications center (ECC) shall ask callers if a child is present at the scene.
2. If ECC determines that a child is present at the scene of a reported incident, responding officers shall be notified.
3. When service of an arrest or search warrant is planned
 - a. Where possible, officers shall determine whether any child is likely to be present at the location.
 - b. When reasonably possible, officers may delay an arrest until the child is not likely to be present (e.g., at school or daycare), or consider another time and place for making the arrest. If delay is not possible, arrangements should be made in advance to have representatives from CWS and/or appropriate partner organizations at the scene or on call.
4. When reasonably possible, officers shall determine if the arrestee and other family members are English-language proficient. If not, arrangements should be made to provide a translator. A parent should not be allowed to interpret for a child and a child should not be allowed to interpret for a parent.

(3) 학교의 역할

Roberts는 2012년에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미국에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용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Osborne Association, Breaking the Cycle initiative, support group,

Melbourne City Mission: Family Support Service 등에 관해서이다.¹⁰⁾

Pugh & Lansky (2011) 등의 학자가 지적했듯이 수용자 가족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수치와 낙인,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다. 학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가족과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사와 모든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아동은 자신이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신뢰할만한 어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며 이는 학교 교사가 가장 적합하다(Snyder-Joy & Carlo, 1998). 연구자는 또한 학교와 가정 간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용자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교가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범 죄의 대물림 현상을 학교에서 끊어야 한다.

그러나 Dallaire, Ciccone and Wilson(2010)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구금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여성 수용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구금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사안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교사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0) Roberts(2012)가 제시한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에 본부를 둔 "Osborne Association"은 교사와 수용자 자녀를 접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Breaking the Cycle initiative: 학교에 참여, 학업능력 향상, 자신감과 자존감 높이기, 가족과 학교 간 유대감 강화하기, 학교 숙제하는 것 도와주기. 직원이 구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아동들이 있는 5개 학교와 연합하여, 1:1, 그룹을 통해, 학교에 아동의 정보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 돌보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다. 학교 출석을 모니터링해 준다.

학교 내의 지원그룹(support group)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학교의 비용이 아닌 단체의 비용을 통해서이다. 호주의 Shine for Kids, PB&J의 KidPACT 등은 학교 내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ROOT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용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Community Works 라는 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 수업, 창조적 표현수업, 사회정의 수업,예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활동과 수업은 훈련된 전문가가 운영하며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방과 후 외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Melbourne City Mission: Family Support Service를 통해 여성 수용자들이 자녀들의 교사와 접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직원이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학교 교사들은 자녀의 성적표를 보내 주고 전화를 통한 교사-부모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양육자가 이러한 상황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 Mussel ‘Kids on the outsides’

2016년 Mussell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州)의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면접을 통해 수용자자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14~16세 수용자자녀 면접을 통해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해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자는 면접결과를 토대로 수용자자녀의 회복, 긍정적 결과, 복지를 위해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교육중심 지원(education-centered supports), 교정중심 지원(corrections-centered supports), 사법중심 선택권(justice-centered option) 등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통합적 접근:**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기관이 협력해야 하며 다기관에서 정보를 구축하고 공유해야 한다. 경찰의 체포단계부터 시작해서 형사사법의 모든 단계와 관련 기관이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공식적 국가기구로서 “아동인권”부서가 존재해야한다. 대다수의 수용자 가족이 빈곤계층임을 고려하여 경제적, 복지적 지원을 보장해야한다.
- **교육중심지원:**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학교가 수용자자녀지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학교장, 상담교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McCrickard & Flynn, 2015).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어른이 멘토가 되어도 되지만 또래 친구가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Laaks Nygaard, 2012; Shlaf et al. 2009).
- **교정중심지원:** 구금된 부모와의 만남을 통한 유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기관에서는 아동 친화적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지/화상 면회/전화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 **사법중심 선택권:**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특히 법원단계에서 양형 시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서(Child Impact Assessment)”가 작성되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와 진단이 필요하다.

(5) Fraser Valley 대학 연구팀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raser Valley 대학 연구팀은 캐나다 연방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이 자녀와 가족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타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는 비영리단체와 민간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McCormick et al., 2014). 그러나 대다수의 단체들이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아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방교도소에서 자녀의 방문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방해요인으로 인해 자녀의 방문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방해요인으로는 비용, 교통, 교도소 보안, 아동의 최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 제한된 면회시간(학교 시간과 겹침), 오랜 대기 시간, 먼 거리, 아동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신체적 접촉의 제한 등이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수용자자녀들이 구금된 부모를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 스트레스, 수치심 등도 방해요인으로 분석하였다(McCormick et al., 2014).

연구자들은 수용자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업에도 변화나 문제가 생기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나 교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州)의 경우 수용자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을 경우 Ministry of Child and Family Development 부서가 자녀 양육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국가 기관을 통해 장기간 자녀가 위탁될 경우 부모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 제도로 인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프로토콜, 배치결정을 위한 더 나은 프로토콜, 인식/교육/훈련, 양형, 의사소통과 방문의 유지, 지원 프로그램, 자료 모으기, 연구, 국가아동권리위원회 등 9면에서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각 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공유 프로토콜 (Information Sharing Protocols):** 수용자자녀지원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주된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집단을 발굴해 내는 것의 어려움이다. 경찰 단계에서의 발굴이 가장 첫 단계이다. 경찰은 체포 시 이러한 아동을 인식하고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범죄행위의 직접적 피해자라면 아동을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서 보호/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사생활 침해(privacy) 이슈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경찰, 아동복지국, 여성가족부,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정

보를 공유해야 한다.

- **배치결정을 위한 더 나은 프로토콜 (Better Protocols for Placement Decision Making):** 부모의 구금 후에 아동을 누가 돌볼지에 대한 결정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을 누가 돌볼지, 돌볼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한다.
- **인식/교육/훈련:**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람은 사회복지사이겠지만, 관련된 사람들인 교사, 학교 직원, 아동복지사 등이 수용자자녀라는 이슈에 대해 교육을 받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인 경찰, 검찰, 판사, 법원관계자, 교도관, 교정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와 교사, 관련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양형:** 유엔 비구금 처우에서는 양형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폴란드나 이탈리아는 양형 시 미성년자 자녀 양육을 고려하는 법안이나 제도가 있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볼 때 양형 시 자녀양육을 고려하는 법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의사소통과 방문의 유지:** 수용된 부모와 자녀와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자녀의 방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교도소 중심이며, 그렇지 않은 교도소가 더 많다. 아동친화적 방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고, 장난감, 동화책, 다과 등을 구비하여 아동의 부모 방문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상 채팅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단체는 재원이 불안정 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보장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정국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 **지원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 상담, 방문지원, 교육지원 등은 물론 양육자와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등 현재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효

과성 진단도 이루어져서 프로그램이 좀 더 정교화 되어야 한다.

- **자료 모으기:**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얼마큼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진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연구자나 특별 조사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자자녀가 몇 명인지, 그들을 누가 돌보는지, 어떻게 돌보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자료가 모아져야 한다.
- **연구:** 국/내외 적으로 수용자자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숫자적으로 상당히 적으며 방법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 **국가아동위원회:**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수용자자녀와 같은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한다. 영국의 경우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있으며, 호주는 아동청소년위원회(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가 있으며, 이러한 기관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이러한 위원회가 설립되어 아동의 인권,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을 대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Ⅲ



수용자자녀 현황 및 실태 수용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수용자자녀의 인구규모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은 기존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의 정확한 인구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수용자자녀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는 얼마나 되는지,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 자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자녀들의 특성과 연령과 성별, 건강, 학교생활, 가족생활실태 및 체포상황이나 수용여부, 자녀와의 교류 등에 관한 내용을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5일부터 2주간이며, 조사에 불응한 수용자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배포하여 총 42,354명으로 수용자로 부터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우리나라 구치소 및 교도소와 민간교도소를 포함하는 53개 교정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교정공무원들이 질문지의 배포, 질문지 작성방법 설명, 질문지 수거 등을 위해 협조하였다.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설문에 불응한 수용자를 제외하고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취합된 설문지는 총 42,354부로서 조사가 진행될 당시의 수용자 일일평균 수용인원인 약 53,000여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수용자의 80.0%에 해당한다. 한편 수거한 질문지 총 42,354부 중 답변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시킨 자료는 40,936부로서 전체 수용자 대비 77.2%에 해당한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DOW 21.0을 이용하였고, 기술통계를 통한 빈도분석으로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및 생활 실태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였다.

각 교정기관별 자료수집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III-1 각 교정기관별 설문지 수거부수 및 최종 분석율

교정청	소속기관	수거부수	최종분석	
			사례수(n)	퍼센트(%)
서울교정청	1.00 서울구치소	2,050	1,795	4.4
	2.00 서울남부교도소	1,004	967	2.4
	3.00 서울남부구치소	1,564	1,545	3.8
	4.00 성동구치소	1,316	1,335	3.3
	5.00 수원구치소	2,104	1,677	4.1
	6.00 수원구치소평택지소	154	150	.4
	7.00 안양교도소	1,417	1,383	3.4
	8.00 여주교도소	1,039	991	2.4
	9.00 영월교도소	355	348	.9
	10.00 원주교도소	761	741	1.8
	11.00 의정부교도소	728	713	1.7
	12.00 인천구치소	1,702	1,638	4.0
	13.00 춘천교도소	768	733	1.8
	14.00 강릉교도소	205	200	.5
	15.00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247	1,095	2.7
대전교정청	16.00 공주교도소	488	418	1.0
	17.00 대전교도소	2,328	2,332	5.7
	18.0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282	274	.7
	19.00 천안개방교도소	146	145	.4
	20.00 천안교도소	787	739	1.8
	21.00 청주교도소	762	867	2.1
	22.00 청주여자교도소	588	585	1.4
	23.00 충주구치소	417	417	1.0
	24.00 홍성교도소	259	259	.6
	25.0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276	279	.7
대구교정청	26.00 경북북부제1교도소	1,403	1,293	3.2
	27.00 경북북부제2교도소	200	183	.4
	28.00 경북북부제3교도소	386	382	.9
	29.00 경북직업훈련교도소	443	439	1.1
	30.00 경주교도소	351	351	.9
	31.00 김천소년교도소	294	295	.7
	32.00 대구교도소	1,464	1,490	3.6
	33.00 대구구치소	823	871	2.1
	34.00 밀양구치소	453	452	1.1
	35.00 부산교도소	1287	1,159	2.8
	36.00 부산구치소	1,318	1,311	3.2
	37.00 상주교도소	476	476	1.2
	38.00 안동교도소	622	635	1.6
	39.00 울산구치소	543	461	1.1
	40.00 진주교도소	662	662	1.6

교정청	소속기관	수거부수	최종분석	
			사례수(n)	퍼센트(%)
대구교정청	41.00 창원교도소	1,026	1,023	2.5
	42.00 통영구치소	343	343	.8
	43.00 포항교도소	280	235	.6
광주교정청	44.00 광주교도소	1,206	1,232	3.0
	45.00 군산교도소	710	710	1.7
	46.00 목포교도소	1,102	1,096	2.7
	47.00 순천교도소	1,355	1,352	3.3
	48.00 장흥교도소	487	488	1.2
	49.00 전주교도소	881	870	2.1
	50.00 정읍교도소	332	333	.8
	51.00 제주교도소	562	534	1.3
민영교도소	52.00 해남교도소	290	292	.7
	53.00 소망교도소	348	342	.8
총계		42,354	40,936	100.0

2. 조사결과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자 40,936명 중 10,406명이 해당). 응답자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45%,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5%로서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높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의 46.5%(10,406명)가 미성년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2,355명을 대상으로 이중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 10,406명의 미성년자녀 수의 총합은 15,869명으로 미성년자녀수의 평균은 1.52명으로 집계되었다(〈표 Ⅲ-2〉 참조).

표 III-2 전체 조사대상자 특성

(단위: 명, %)

분류		빈도	백분율	분류		빈도	백분율	분류		빈도	백분율
수용자 성별	남	36,959	92.5	자녀 유무 (성년 자녀 포함)	있다	22,355	45.0	미성년 자녀 유무	있다	10,406	46.5
	여	3,006	7.5		없다	18,258	55.0		없다	11,949	53.5
	계	39,965	100		계	40,613	100		계	22,355	100
미성년 자녀수 총합				15,869명							
미성년 자녀수 평균				1.52명							

〈표 III-3〉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용자자녀의 수를 추산할 때 일일 평균 수용자자녀수는 22,000여명이고, 연간 54,000여명(우리나라 19세 미만 인구의 역 0.5%)으로 추산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수용자자녀는 매일 20,000여명 이상이 상존하고 있다. 연간으로는 50,000여 명씩 발생하는데 교도소 재입소자 비율인 45%를 감안하여 계산하면,¹¹⁾ 연간 27,500명이 누적되어 가는 셈이다. 수용자자녀 인구 규모 추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미성년자녀는 0-18세(만19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 2) 미성년자녀 있는 수용자 비율은 25.4%
 - 응답인원 10,406 명/ 전체 응답자 40,936명
 - 응답자의 미성년 자녀 수 총합 15,869명
- 3)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수 평균 1.52명 (15,869/ 10,406)
- 4) 일일 평균 수용자자녀수 추산 : 약 22,006여명 (일일평균 수용자인원 57,000 기준)
- 5) 연간 수용자자녀수 추산: 약 54,051여명

11) 교도소 수형자 중에서 재입소자는 45% 정도이다(법무연수원, 2017: 379).

표 III-3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수 추산

항목		전체 수용자
조사대상 수용자	자녀율(19세미만 자녀)	25.4%
	자녀 수 평균	1.52명 a
전체 수용자	수용자 일일평균 인원	57,000명
	자녀수 일일평균 인원 (수용자 일일평균인원 기준)	22,006명b
	연간 교정시설 입소자	14만 명 정도
	자녀수 연간 인원 (연간 교정시설입소자 기준)	54,051명(약 54,000명)c (우리나라 19세미만 인구의 0.49%)

a: 미성년자녀수 1.52명: 15,869명/ 10,406명

b: 일일평균 수용자자녀수 22,032명(57,000×25.4%×1.52명= 22,006명)
※ 2017. 6월 기준 일일평균 수용자 인원 57,000 여명 기준

c: 140,000×25.4%×1.52명 =54,051명

2)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1) 수용된 부모의 특성

이하에서는 수용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10,4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① 성별

성별은 ‘남자’가 9,289명으로 90.4%를 차지했고 ‘여자’는 990명으로 9.6%로 조사되었다.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가 90%, 어머니가 수용된 경우가 10%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III-4 수용된 부모의 성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남성	9,289	90.4
여성	990	9.6
총계	10,279	100.0

② 연령

연령은 '40대'가 47.5%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 '50대' 19.1% 순이다. 수용된 부모의 평균 연령은 43세였다.

표 III-5 수용된 부모의 연령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20세미만	11	0.1
20세이상-30세미만	550	5.4
30세이상-40세미만	2,705	25.6
40세이상-50세미만	4,836	47.5
50세이상-60세미만	1,940	19.1
60세이상-70세미만	125	1.2
70세이상-80세미만	8	0.1
총계	10,175	100.0

③ 부모의 결혼상태

수용자들의 결혼 상태는 '법적 혼인상태'가 52.7%로 가장 많았고 '이혼' 25.0%, '법적으로는 이혼상태이나 사실상 부부'인 경우가 11.4% 순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 법적인 혼인상태에 해당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47.3%는 가정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표 III-6 수용된 부모의 결혼상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미혼	327	3.2
법적 혼인상태	5,333	52.7
이혼	2,533	25.0
사실상 부부(법적 이혼상태)	1,156	11.4
이혼진행 중 또는 사실상 이혼	543	5.4
사별	223	2.2
총계	10,115	100.0

④ 부모의 수용기간

수용기간은 ‘1년 미만’이 53.1%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40.7%, ‘10년 미만’이 4.8%순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을 합하면 93.8%에 해당한다. 평균 수용기간은 19.2개월로 나타났다. 수용자자녀의 다수가 1년 미만의 단기간 부모와 분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5년 이상은 6.2%이고 10년 이상은 1.4%에 불과하다.

표 III-7 수용된 부모의 수용기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1년 미만	5,431	53.1
5년미만	4,460	40.7
10년미만	491	4.8
15년미만	120	1.2
20년미만	24	.2
25년미만	2	.0
30년미만	3	.0
35년미만	2	.0
총계	10,233	100.0

⑤ 종교

종교는 ‘기독교’가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 28.1%, ‘종교 없음’ 20%, ‘천주교’ 12.5%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형과 무관하게 수용자의 80%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가 수용생활에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8 수용된 부모의 종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기독교	3,872	37.9
불교	2,869	28.1
천주교	1,278	12.5
이슬람교	49	0.5
기타종교	105	1.0
종교없음	2,046	20.0
총계	10,219	100.0

(2) 가정환경 관련 특성

① 자녀의 양육 상태 - 양육자 및 돌봄자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74.2%가 ‘배우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자신의 부모(12.1%)’, ‘배우자의 부모(3.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끼리 있음’도 2.4%, ‘시설에 있음’ 2.1%, ‘친인척’ 1.8% ‘지인’ 과 살고 있는 것도 1.5%로 나타났고 ‘자녀의 상황을 모름’이라는 응답도 151명(1.5%)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남아있는 한 부모와 살고 있을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조부모나 친인척 등 위탁가정의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도 17.8%나 되었으며 친인척이 아닌 지인이나 자녀들 끼리 있는 경우도 3.9%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율은 낮았지만 자녀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 1.5%도 되어 수용자자녀들의 돌봄과 양육 문제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반영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I-9 자녀의 양육 상태 - 양육자 및 돌봄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배우자	7,517	74.2
부모	1,237	12.1
배우자의 부모	396	3.9
친인척	182	1.8
자녀들끼리 있음	244	2.4
지인이 돌보고 있음	152	1.5
시설에 있음	213	2.1
자녀들의 상황을 모름	151	1.5
기타	42	0.4
총계	10,134	100.0

② 입소 전 자녀와 동거여부

수용되기 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살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0.6%로서 ‘따로 살고 있었다’는 응답 1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련연구에서 미성년자녀와 수용전에 함께 살았다는 응답이 83.9%(전영실 외, 2007: 86), 76.4%(신연희, 2016)과 유사한 결과이다. 수용자자녀들의 다수는 함께 살고 있던 부모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용자자녀의 80%정도는 부모가 수용되

기 전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다수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반면 20% 정도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았으며, 이 경우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자녀들이 입게 될 충격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입소 전 자녀와 동거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함께 살았음	8,347	80.6
자녀와 따로 살았음	1,932	19.4
총계	10,279	100.0

③ 자녀 양육비 부담 여부

자녀 양육비를 담당한 사람에 대한 문항에서는 ‘수용자 자신이 혼자 담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로 과반수가 넘는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은 ‘배우자와 함께 담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7%, ‘배우자 혼자 담당’한 경우가 6.6%로 조사되었다.

수용되기 전 수용자가 자녀 양육비를 담당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89.5%로 나타나 수감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1 자녀 양육비 부담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귀하 혼자 담당	5,411	52.5
귀하 배우자가 함께 담당	3,809	37.0
배우자가 혼자 담당	682	6.6
주변의 도움	258	2.5
잘 모르겠음	139	1.3
총계	10,299	100.0

④ 자녀생활 상태 인지여부

자녀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7.8%로 가장 높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6%로 다음을 차지했

다. 반면 ‘거의 모르는 경우’가 8.5%,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7.7%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교류가 부족해서인지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수용자도 16%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2 자녀 상태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대부분 알고 있음	5,921	57.8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2,680	26.0
거의 모르고 있음	895	8.5
전혀 모르고 있음	811	7.7
총계	10,306	100.0

⑤ 경제적 형편

가정형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난한 편’이 29.1%, ‘매우 가난함’이 19.7%, ‘부유한 편’ 3.4% 순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편에 속한다는 응답이 48.8%로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자 가정의 빈곤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3 경제적 형편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부유한 편	353	3.4
보통임	4,916	47.9
가난한 편	2,992	29.1
매우 가난함	2,028	19.7
총계	10,289	100.0

⑥ 극빈생활 정도

수용자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극빈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인지 여부로 조사하였다. 수급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아님’ 경우가 69.3%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9.1%였다. ‘수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비율인 2.3%에 비해 5배나 높아 매우 심각한 빈곤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수급자임	1,198	11.7
수급자 아님	7,110	69.3
잘 모르겠음	1,959	19.1
총계	10,267	100.0

⑦ 출소 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출소 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89.7%가 ‘함께 살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수의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와의 재결합을 맞게 될 것이며, 따라서 부모와 분리되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재결합과정에서도 환경의 변화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15 출소 후 자녀와 동거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예	8,697	89.7
아니오	997	10.3
총계	9,694	100.0

⑧ 가족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과 긴밀히 연락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연락은 되나 관계가 좋지 않음’이 15.9%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은 있으나 연락이 잘 안된다’고 응답한 수용자도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가족관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가족과 긴밀히 연락됨	7,255	71.5
가족과 연락은 되나 관계가 좋지 않음	1,614	15.9
가족은 있으나 연락이 잘 안됨	1,203	11.9
가족 없음	79	0.8
총계	10,151	100.0

(3) 수용자자녀들의 특성

① 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는 총 15,869명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들의 연령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만 7세-만 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가 25.8%,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만 16세-만 18세’가 23.2%, ‘만 13세-만 15세’가 17.3%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용자자녀들은 전 연령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발달단계 및 연령대를 기준으로 지원방안이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성별은 ‘남자’ 50.9%, ‘여자’ 49.1%로 나타났다.

표 III-17 자녀 연령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만7세미만	4,080	25.8
만7-만12세	5,327	33.7
만13-만15세	2,732	17.3
만16-만18세	3,659	23.2
총계	15,798	100.0

②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자신의 수용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63.2%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1%로 조사되었다. 6.7%의 경우는 자녀가 자신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보다 모르고 있는 자녀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수용사실을 자녀가 알고 있는 경우를 자녀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관련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감사실을 자녀들이 점차 알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4.0%(신연희, 2016), 일반수형자대상 조사에서는 56.0%(전영실 외, 2007: 90), 그리고 수용이 상당기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조사에서는 55.6%였다(이동훈 외, 2015: 55), 이같은 결과는 부모의 수용사실은 무조건 감추고 비밀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 적절한 상황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리는 것이 자녀들에 유익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8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예	4,573	30.1
아니오	9,599	63.2
확인불가	1,023	6.7
총계	15,195	100.0

표 III-19 연령대 별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총계
	만 7세 미만	만 7세 - 만 12세	만 13세 - 만 15세	만 16세 - 만 18세	
예	437	1,068	1,139	1,929	4,573
아니오	3,119	3,790	1,331	1,359	9,599
확인불가	435	279	134	175	1,023
총계	3,991	5,137	2,604	3,463	15,195

③ 부모의 체포 장면 목격여부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93.7%로 많았으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948명으로 나타나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은 만7세 미만에서 317명(33.44%)이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만7-12세(30.49%), 만16-18세(21.3%), 만13-15세(14.77%) 순으로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연구와 비교할 때,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자녀가 목격했다는 응답이 12.1%(전영실 외, 2007: 90), 11.7%(신연희, 2016)로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수용자자녀들의 10% 정도가 부모가 경찰에 체포 및 연행되는 충격적인 현장의 기억을 마음의 상처로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1,000여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봤다면 그 후 어느 정도 충격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위로가 있었는지 염려스럽다. 아직 국가적으로 수용자자녀 상담이나 심리적 지원에 대한 공식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유, 수감사건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관심저하, 아동의 표현미숙 등의 이유로 많은 경우 아이들은 이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0 부모 체포 장면 목격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예	948	6.3
아니오	14,065	93.7
총계	15,013	100.0

표 III-21 자녀 연령대 별 부모 체포 장면 목격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총계
	만 7세 미만	만 7세- 만 12세	만 13세- 만 15세	만 16세- 만 18세	
예	317	289	140	202	948
아니오	3,642	4,807	2,411	3,205	14,065
총계	3,959	5,096	2,551	3,407	15,013

④ 구속 후 자녀 접견 유무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0.9%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9.1%의 응답자만이 자녀와 ‘접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접견 경험이 있는 자녀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만7세미만이 41.49%(1,645명)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만16-만18세가 32.9%(1,094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7에서 만12세의 연령대가 19.2%로 부모와의 접견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접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대다수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2 구속 후 자녀 접견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있음	4,339	29.1
없음	10,582	70.9
총계	14,921	100.0

표 III-23 자녀 연령대별 구속 후 자녀 접견여부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총계
	만 7세 미만	만 7세 - 만 12세	만 13세 - 만 15세	만 16세 - 만 18세	
아니오	1,637 (42.6)	1,001 (19.8)	592 (23.3)	1,109 (33.0)	4,339 (29.5)
예	2,318 (57.4)	4,062 (80.2)	1,947 (76.7)	2,255 (67.0)	10,582 (70.5)
총계	3,955 (100.0)	5,063 (100.0)	2,539 (100.0)	3,364 (100.0)	14,921 (100.0)

⑤ 자녀의 건강상태

수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자녀의 건강상태는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2%로 높았고 다음은 ‘중(25.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4.3%로 나타났다.

표 III-24 자녀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상	8,489	56.2
중	3,850	25.5
하	601	4.0
확인불가	2,169	14.3
총계	15,109	100.0

⑥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서는 44.0%가 ‘상’으로 28.7%가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건강상태와 비슷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 22.1%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III-25 자녀 학교생활 적응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상	5,666	44.0
중	3,763	28.7
하	668	5.2
확인불가	2,848	22.1
총계	12,885	100.0

3. 소결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인구규모

우리나라 수용자자녀 수는 일일 평균 22,000여명이고, 연간 54,000여명으로 추산되었다. 나아가 자녀들의 연령은 초등학교 연령인 만7-만12세가 33.7%로 가장 많고, 만7세미만의 미취학 자녀도 2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이 수용자자녀의 60% 가량에 이른다.

수용자자녀인구의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녀는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자녀들의 수는 5만 여명이 해마다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의 다수는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들이다. 수용자자녀들의 인구현황을 보더라도 이들을 우리사회의 특수취약계층 집단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의 네 명중 한명은 취학 전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 역시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2) 자녀들의 특성에 따른 자녀지원의 다양화

본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자녀들을 지원하는 일은 자녀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용된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지원 방법이 계획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가 90%, 어머니가 수용된 경우가 1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수용은 소득상실로 이어지며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아버지의 수용은 가정의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렇게 발생한 재정 불안정은 아이들의 심리적 및 학교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아버지의 수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도 한다(신연희·변호순, 2014).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에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어머니가 수용된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부모 수용 후 양육자의 상실과 불안정, 자녀들의 방치, 부모-자녀관계의 단절 위험성 등에 더 취약하다(신연희, 2016). 따라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서비스는 수용된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용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수용된 부모의 다수(80.6%)는 수용 전에 자녀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자녀들은 생계부양자 및 양육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부터 분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충격이 덜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수용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관계가 밀착 내지 친근한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느슨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평소에 좋지 않은 아빠인 경우), 그리고 수용전부터 관계가 단절된 경우(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혼가정일 가능성이 크다) 등 다양하다. 따라서 수용 후 뿐 아니라 수용 전에 어떠한 관계였는지도 수용자자녀 지원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들의 연령 즉 발달단계에 따라 사회적 지원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 특히 어머니와 분리되는 충격이 크고, 학령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수용은 이사 또는 전학으로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친구와 쉽게 어울리거나 학교성적이 하락하고 학교에서 흥미를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학교부적응과 비행행동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lchik, 2007). 본 조사에서 자녀들의 발달단계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독특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도 수용자자녀지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수용된 부모와의 분리된 기간에 따른 서비스 계획도 필요하다. 부모와 분리기간을 의미하는 수용기간은 1-5년 미만의 단기간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절반(52.9%)이 넘는 수준에서 부모와 자녀의 분리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자녀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기간이 한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수용된 동안의 지원 계획은 부모와의 분리기간에 따른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양육자의 불안정과 가정위탁의 제도화

양육자의 불안정은 가정해체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 부모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가정의 해체여부를 볼 때 절반에 가까운 47.3%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자녀의 절반정도는 가정의 구조적 안정성이 해체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자녀들의 25.8%, 다시 말해 수용자자녀의 네 명 중 한 명꼴로 부모의 수용 후 양부모 모두와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 남아있는 엄마(아빠)가 양육자인 경우(74.2%)를 제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끼리 살고 있는 경우 2.4%, 시설에 있는 경우도 2.1%였다. 국내 관련연구에서 자녀들끼리 2.4%와 시설에 보내진 경우는 1.7%와 유사한 결과이다(신연희, 2016). 한편, 위탁가정의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조부모와 친인척 등은 17.8%나 되었다.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양부모 모두와 분리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육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가 개입해야 할 것이다. 한시적 가정위탁 서비스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양육의 일차적 의무자인 부모가 사정상 직접양육이 어려울 때 가정위탁을 실시하는데 이때 부

모의 사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교도소 수감”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항목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친권자가 없거나 행사할 수 없는 수용자자녀를 발굴하여 가정위탁, 시설위탁,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보완하거나 가정위탁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수용자자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위탁의 경우 부모의 출소 시까지 양육자(가정위탁자, 시설위탁자)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권을 한시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박선영·신연희, 2012: 208).

4) 빈곤의 문제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부모의 수용은 생계부양자의 상실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빈곤의 심각성을 이를 반영하여 나타냈는데, 수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비율인 2.3%에 비해 5배나 높았으며, 가난하다와 매우가난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는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용된 부모의 89.5%가 수용되기 전까지 자녀양육비를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부담한 것을 볼 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환경의 빈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양육자와 자녀 모두 경제적 지원에 관한 욕구가 가장 우선적이다(법무부, 2014). 빈곤한 수용자가정의 자녀들에 관한 지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소득기반 분류 혹은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 등의 차원을 떠나 상당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담지원, 학업지원, 양육자지원 등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는 사회취약계층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신연희, 2015b).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부처들(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민간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부모의 수용사실에 대한 자녀들의 알권리 보장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련연구에서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66%로 집계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신연희, 2016). 그러나 부모가 수용된 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증가하게 된다. 수용 초기에는 자녀들에게 수용사실을 숨기거나 둘러대었

으나 점차 자녀들이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용사실을 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녀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때 자녀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자녀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되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었다(신연희, 2016). 따라서 자녀들이 수용된 부모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할 때, 부모의 수용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자녀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을 이야기 할 것이며, 자녀들의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해서는 개별 가정들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신연희, 2017a). 아울러 수용자자녀지원 서비스의 설계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6) 체포에 따른 충격의 완화와 경찰의 체포수칙 이행

부모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아이들은 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 본 조사에서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아 12% 정도 즉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부모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연희 2016; 전영실 외, 2007: 90).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물리적 강압과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은 자녀들에게 공포의 순간으로 기억되며 통상 이러한 기억은 전 생애에 걸쳐 기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포단계에서 경찰에게 특별한 업무수칙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7) 부모와의 실질적 접견권 보장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0.9%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자자녀의 60% 이상이 부모의 수용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수형자들의 56%만이 교도소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렸고, 자녀와 접견한 적이 있는 경우는 40.7%이고, 자녀와 접견한 적이 없는 수형자의 86.4%가 자녀와의 접견을 희망하지 않았다(전영실 외, 2007: 86-88).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와의 접견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만나는데 장애요인을 없애고 교도소의 접견환경을 아동친화적 분위기로 조성하는 일, 이와 같은 접견장소의 물리적 개선 뿐 아니라 접견절차의 간소화, 접견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접근가능성을 높일 때 자녀들의 실질적인 접견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접견은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접견을 희망하지 않거나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까지 접견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부모의 교도소 수용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접견여부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한 충격은 접견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릴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된 부모와의 접견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신연희, 2015).

IV



수용자자녀 성장환경 양육자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수용자자녀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자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를 통해 수용자자녀들의 생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부모를 교도소에 보낸 후 남아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자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이나 수용자자녀의 생활모습과 수용자와의 관계 정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용자자녀 양육자 실태조사는 수용자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수용자의 자녀는 누구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양육자의 생활실태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이고 어떠한 정도인지, 자녀들의 특성과 문제 행동,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질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전국 8개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을 면회 온 가족과 4개의 교도소에서 실시되는 가족사랑캠프에 참석한 가족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 보호자 총 260명으로부터 응답 받은 설문을 수거하였다. 수용자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들이 말하는 수용자자녀의 생활과 양육자들의 실태 및 정보는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는데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2) 자료수집 경위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해 지역교정청 별 1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교정기관을 추천받았고 전국 8개의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에 설문조사를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훈련된 조사원이 각 기관 민원실에서 교도소에 접견 온 가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4개의 교정기관의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한 가족 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합된 설문지는 260부였으며 답변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4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21.0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통한 빈도분석으로 수용자자녀 성장환경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였다. 자료수집 경위(〈표 IV-1〉)와 질문지 구성(〈표 IV-2〉)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수용자자녀 양육자 설문지 자료수집 경위

일정	진행 내용
2017. 5. 13.~5. 30.	설문지 개발
2017. 6. 1.~6. 7.	법무부 교정보부와 협의
2017. 6. 12.~6. 23.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8개 교정보부에 협조요청
2017. 6. 26.~7. 8.	8개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설문조사 실시 (남부교도소, 남부구치소, 여주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2017. 7. 12.~8. 12.	4개 교정기관 가족사랑 캠프 시 설문조사 (인천교도소, 소망교도소,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2017. 8. 12.~8. 30.	설문지 코딩
2017. 9. 1.~9. 30.	통계분석

3) 질문지 구성

표 IV-2 질문지 구성

주제	세부항목들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수용자와의 관계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자녀 양육 및 돌봄자, 자녀와 함께 살게 된 시기, 자녀의 부모수용 인지여부와 향후 알려줄 계획여부, 수용자와의 접견방법, 수용자 연간 면회횟수, 국가지원 수급여부, 수용자자녀 양육 과정 중 겪는 어려움
자녀들의 특성	성별, 연령, 자녀의 부모의 수용사실 인지여부, 부모체포목적여부, 부모 구속 후 접견 여부, 자녀 건강상태, 학교성적, 학교생활적응, 문제행동
수용자 특성	성별, 연령, 수용상태, 수용횟수, 총 수감기간, 현재까지 복역기간, 혼인상태, 경제적 수준, 수감 전 자녀양육비 부양, 수감 전 수용자와 자녀 동거여부, 자녀관심정도,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
그 외의 어려움	하고 싶은 말이나 요청사항

2. 조사결과

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지는 총 260부가 수거되었고 적절하게 응답처리가 안된 18부를 제외하여 이 중 242부가 채택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35.5%, '여성' 64.5%로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므로 집권 하러 온 가족은 여성들이 더 많은 것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40대'가 30.6%로 가장 많았고 '30대' 22.7%, '50대' 18.2% 순이었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46.6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와 수용자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배우자'라고 응답한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고 '부모'라는 응답이 21.1%로 나타났다. 자신이 '자녀'라고 응답한 경우가 4.1%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이 수용자의 자녀이자 미성년 동생을 돌보고 있는 주 양육자이기 설문에 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3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수용자와의 관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86	35.5
	여성	156	64.5
	총계	242	100.0
연령	20대	24	9.9
	30대	55	22.7
	40대	74	30.6
	50대	44	18.2
	60대	24	9.9
	70대 이상	21	8.7
	총계	242	100.0
수용자와의 관계	배우자	94	38.8
	자녀(동생을 돌보는 성인 자녀)	10	4.1
	부모	52	21.5
	형제	39	16.1
	기타	47	19.4
	총계	242	100.0

응답자의 직업은 '가정주부(무직 포함)'가 31.1% 라고 답하였고 '직장인'이 27%, '자영업종사자'가 22.4%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36.5%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33.1%, '불교' 2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직업, 종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직업	주부(무직 포함)	75	31.1
	직장인	65	27.0
	자영업종사자	54	22.4
	학생	7	2.9
	시간제 근로	14	5.8
	기타	26	10.8
	총계	241	100.0
종교	기독교	80	33.1
	불교	52	21.5
	천주교	20	8.3
	기타종교	1	0.4
	종교 없음	89	36.8
	총계	242	100.0

2)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상황

(1)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돌봄자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거나 돌보고 있는 사람은 '자녀의 엄마'가 57.9%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합하여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24%였고 '친척 양육'도 6.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위탁형태로 양육 받는 자녀가 30%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끼리 지낸다'는 경우도 3.3%나 되었다. 가정위탁형태의 양육가정이나 자녀들끼리 지내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표 IV-5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돌봄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자녀의 엄마	140	57.9
자녀의 아빠	19	7.9
자녀의 친조부모	38	15.7
자녀의 외조부모	20	8.3
자녀의 친척	15	6.2
자녀들끼리 지냄	8	3.3
기타	2	0.8
총계	242	100.0

(2) 수용자자녀와 함께 살게 된 시기

수용자자녀와 함께 살게 된 시기는 ‘처음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양육자의 65.8%가 친부모로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돌보고 있는 부모의 비율에 비해 함께 살게 된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전에 함께 살고 있던 부모가 수감된 후 현재의 부모에게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형편을 알고 있는 경우’가 36.3%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수감 후 일주일 이내’가 5.8%, 부모 수감 후 1개월 이내 2.9%, 부모수감 후 1개월 이상 지나서 0.8%의 응답도 나타났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9.5%의 자녀들은 부모가 수감된 후 1주일에서 1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일부 자녀들은 부모가 수감된 후 현재의 양육자에게 오는 과정에서 양육과 돌봄을 받기 어려웠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V-6 수용자자녀와 함께 살게 된 시기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함께 살지 않지만 자녀들의 형편을 알고 있음	87	36.3
처음부터 함께 살고 있었음	127	52.9
부모수감 후 일주일 이내	14	5.8
부모수감 후 1개월 이내	7	2.9
부모 수감 후 1년 이내	3	1.3
부모수감 후 1년 이상 지나서	2	0.8
총계	240	100.0

(3) 자녀의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및 향후 알려줄 계획

자녀가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9.3%로 ‘알고 있다’는 비율(40.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한명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 수용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14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현재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향후 알려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8%로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양육자가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예 수용된 사실도 모른 채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마다 수용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2명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수감을 알고 있는 자녀와 아직 모르고 있는 자녀 사이에서 양육자들은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7 자녀의 부모 수용사실 인지여부 및 향후 알려줄 계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자녀의 부모 수용 인지여부	알고 있음	98	40.7
	모르고 있음	143	59.3
	총계	241	100.0
모르고 있다면 향후 알려 줄 계획인지 여부	그렇다	12	8.2
	아니다	134	91.8
	총계*	146	100.0

*자녀 중 일부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줄 계획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은 146명임

(4) 자녀들의 부모 접견 여부

자녀들이 수용된 부모를 접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2.8%로 ‘접견하였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대다수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자녀들의 부모접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접견 경험 있음	135	37.2
접견경험 없음	228	62.8
총계	363	100.0

(5) 수용자와의 접촉방법

수용된 가족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선순위 순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순위별로 높은 접촉방법으로 ‘1순위 일반접견’, ‘2순위 일반서신’, ‘3순위 인터넷 서신’이었다. 분석과정에서 가산점 차등을 두어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접촉방법으로는 일반접견, 다음으로 인터넷 서신, 인터넷 화상접견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접견은 다른 접촉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 수용자 교류를 위한 다양한 접촉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접견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수용자와의 접촉 방법

(단위: 명, %)

구 분	점수	비율
인터넷 서신	111	11.4
전화통화	23	2.3
인터넷 화상접견	96	9.8
일반접견	602	62.0
가족접견	18	1.9
가족만남의 날	18	1.9
일반서신	80	8.2
스마트접견	24	2.5
총계	972	100.0

(6) 방문 횟수

지난 1년간 수용자를 면회 온 횟수 조사한 결과 연간 ‘50회에서 100회 미만’으로 방문이 30.2%로 가장 많았고 ‘50회 미만’이 24.8%로 다음으로 많았다. 연간 평균 127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를 실시한 교정기관 12개중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가 50%였는데, 재판 등 가족접견이 잦아 방문 횟수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방문횟수(연간기준)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처음	25	10.3
~ 연간 50회 미만	60	24.8
50회 ~ 100회 미만	73	30.2
100회 ~ 200회 미만	45	18.6
연간 200회 이상	39	16.1
총 계	242	100.0

(7) 국가지원 수급여부

수용자자녀를 돌보고 있는 양육자의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지원, 긴급복지지원 3가지 영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아무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76.2%로 가장 많았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11.9%, ‘한부모가정지원’ 5.3%, ‘긴급복지지원’ 4.5% 순이었다. 이는 수용자 실태조사의 결과와도 비슷한 양태를 보이는 결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은 11.9%였는데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비율인 2.3%에 비해 5배나 높아 수용자자녀의 가정이 심각한 빈곤상태 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IV-11 국가지원 수급여부

*중복수급 포함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29	11.9
한부모가정	13	5.3
긴급복지지원	11	4.5
아무지원도 받지 않음	186	76.2
기타	5	2.0
총계*	244	100.0

(8) 양육자의 자녀양육 어려움

양육자들이 수용자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10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2 양육자의 자녀양육 어려움

(단위: 명, %)

문항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총계	M
경제적 어려움	9(3.8)	34(14.2)	81(33.8)	116(48.3)	240	3.27
자녀의 교육문제	13(5.4)	56(23.3)	89(37.1)	82(34.2)	240	3.00
자녀의 문제행동	49(20.6)	89(37.4)	59(24.8)	41(17.2)	238	2.39
건강상의 문제	63(26.3)	84(35.0)	64(26.7)	29(12.1)	240	2.25
부모와 자녀 관계설정의 어려움	38(16.0)	53(22.4)	69(29.1)	77(32.5)	237	2.78
수용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	8(3.4)	29(12.2)	92(38.7)	109(45.8)	238	3.27
환경변화(이사, 전학)	97(40.8)	54(22.7)	58(24.4)	29(12.2)	238	2.08
문제(고민) 의논할 사람 없는 것	41(17.3)	67(28.3)	65(27.4)	64(27.0)	237	2.64
주위의 시선과 편견	41(17.2)	63(26.5)	78(32.8)	56(23.5)	238	2.63
수용된 가족을 지원하는 일	14(5.9)	57(24.0)	94(39.5)	73(30.7)	238	2.95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는 응답이 48.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가 33.8%로 나타났다. 따라서 82.1%의 가정이 빈곤상태이고 이로 인한 어려움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편이다’가 37.1%로 나타났으며 ‘매우 많다’는 응답이 34.2%로 나타났다. 71.3%가 자녀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은 편이다’가 34.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많다’는 응답이 34.2%로 나타났다.

교육문제와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양육자 상담 및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가 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많은 편이다’가 26.7%로 나타났다.

수감된 부모의 자녀의 관계설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가 32.5%로 나타났으며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29.1%로 나타났다. 부모가 수감되었다는 정보를 자녀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부모가 외국에 갔다든지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부모에 대한 실망을 갖지 않도록 아이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용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편이다’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가 38.7%로 나타났다. 수용된 부모의 역할은 경제활동을 해서 부양비를 대는 것, 학령기 아동이 있을 경우 학부모의 역할을 하는 일, 영유아를 키우는 일과 같은 모든 활동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나 아이들 전학 등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많은 편이다’가 24.4%로 나타났다.

문제나 고민을 논의할 사람이 없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가 28.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가 27.4%로 나타났다.

주위의 시선과 편견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많은 편이다’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별로 없다’가 26.5%로 나타났다. 수용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거나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용된 가족을 지원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많은 편이다’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많다’가 30.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남아있는 가족들은 수용자들의 재판과정을 지원하고, 면회를 다녀오며 영치금을 대 주는 등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더불어 수용된 가족을 수발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양육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점에서

4점의 범주에서 평균 2.72점으로 나타나 많은 영역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개 종류의 생활의 어려움 중에서 ‘대체로 많은 편이다’와 ‘매우 많다’는 항목을 더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류는 ‘수용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일’과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경우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자녀들의 특성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미성년 자녀는 총 375명이었다. 응답이 채택된 가구당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총 375명의 자녀들 각각에 대한 질문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용자자녀 성별과 연령

수용자자녀는 ‘남자(53.4%)’가 ‘여자(46.6%)’보다 약간 많았다. 수용자자녀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12세’로 초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이 35.2%로 가장 많았고 ‘만 7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30.7%로 다음을 차지했다. 다음은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만 16세-만 18세’가 20.0%, 중학생에 해당되는 ‘만 13세-만 15세’가 14.1% 순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의 평균 연령은 9.75세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 65.9%나 되어 양육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IV-13 수용자자녀 성별과 연령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198	53.4
	여자	173	46.6
	총계	371	100.0
연령	만 7세미만	115	30.7
	만 7세-만 12세	132	35.2
	만 13세-만 15세	53	14.1
	만 16세-만 18세	75	20.0
	총계	375	100.0

(2) 부모 수용 인지여부 및 체포 장면 목격여부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경우는 34.1%에 불과했다 자녀 각각에 대한 응답이므로 앞의 Ⅲ-7의 결과에서 나타난 응답율과 비율과는 다를 수 있다. 부모의 체포 장면에 대해서는 5.4%가 ‘목격 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부모의 체포 장면을 자녀가 목격하였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빈곤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심리적 지원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4 부모수용 인지여부 및 체포 장면 목격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부모수용 인지여부	알고 있음	123	33.2
	모르고 있음	239	64.6
	확인불가	8	2.2
	총계	370	100.0
체포장면 목격	목격 함	20	5.4
	목격하지 않음	347	94.6
	총계	367	100.0

(3) 부모 접견 여부

자녀들이 수용된 부모를 접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접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5 부모 접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접견 경험 있음	135	37.2
접견 경험 없음	228	62.8
총계	363	100.0

(4)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학교생활적응

자녀별 건강상태와 학교성적,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학교성적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만 응답 처리하였다.

건강상태는 60.2%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중’ 28.3%, ‘하’ 8.3%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성적은 ‘중’이 48.5%, ‘상’ 29%, ‘하’ 11.2%로 응답하였다.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2%로 나와 응답자의 일부는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47.0%가 ‘상’이라고 응답하였고 ‘중’ 27.0%, ‘하’ 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확인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2.9%로 나타나 학교성적과 유사하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양육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16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학교생활적응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건강상태	상	222	60.2
	중	101	27.4
	하	31	8.4
	확인불가	15	4.1
	총계	369	100.0
학교성적*	상	70	29.0
	중	117	48.5
	하	27	11.2
	확인불가	27	11.2
	총계	241	100.0
학교생활적응*	상	116	46.6
	중	67	26.9
	하	34	13.7
	확인불가	32	12.9
	총계	249	100.0

*학령기 자녀만 포함됨

(5) 자녀들의 문제행동

양육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다음의 10가지 종류별로 조사하였다. 심리·정서적 5문항은 전체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학업과 비행행동에 대한 8문항은 학령기 아동에만 해당되는 질문이므로 초등학교 이상 자녀 대해서만 조사하여 응답 처리하였다.

자녀들의 문제행동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2.09),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2.01),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2.01)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행동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2차적 피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행과 관련된 문항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항목은 평균적으로 5~7%대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같은 행동은 소위 위험행동으로 규정되며 초기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하고 예방을 돕지 않으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문제행동 및 비행행동에 대한 양육자들의 지도·감독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수용자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복지적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표 IV-17 자녀들의 문제행동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M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80(36.9)	71(32.7)	50(23.0)	16(7.4)	217	2.01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79(36.6)	60(27.8)	56(25.9)	21(9.7)	216	2.09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96(44.4)	70(32.4)	38(17.6)	12(5.6)	216	1.84
신경성으로 배나 머리등이 아프다고 한다	88(40.7)	65(30.1)	45(20.8)	18(8.3)	216	1.97
불면증, 우울증상이 있다	96(44.9)	60(28.0)	39(18.2)	19(8.9)	214	1.91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	82(41.2)	60(30.2)	31(15.6)	26(13.1)	199	2.01
학교를 결석하거나 무단이탈한 적이 있다*	131(67.5)	39(20.1)	9(4.6)	15(7.7)	194	1.53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M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하려고 한다*	138(71.1)	31(16.0)	15(7.7)	10(5.2)	194	1.47
어른에게 반항을 한다*	95(48.2)	51(25.9)	37(18.8)	14(7.1)	197	1.85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싸움을 한다*	135(70.0)	38(19.7)	9(4.7)	11(5.7)	193	1.46
가출을 하기도 한다*	151(78.2)	27(14.0)	5(2.6)	10(5.2)	193	1.35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154(80.2)	24(12.5)	6(3.1)	8(4.2)	192	1.31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167(86.5)	15(7.8)	6(3.1)	5(2.6)	193	1.22

*학령기 자녀만 포함됨

4) 수용자 특성

(1) 수용자 연령 및 성별

다음은 본 설문에 응답한 242명의 가족들이 응답한 수용자들과 관련된 특성이다. 성별은 남성이 83.4%로 여성(16.6%)에 비해 높았고 수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나타났다

표 IV-18 수용자 성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남성	191	83.4
여성	38	16.6
총계	229	100.0

(2) 수용상태 및 수용횟수

수용자들의 수용상태는 ‘기결’이 49.5%, ‘미결’이 50.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수용 횟수는 ‘1회’ 초범이 77.2%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11%, ‘세 번째’가 5.5%순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되는 경우도 4.2%나 되었다.

표 IV-19 수용상태 및 수용횟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수용상태	미결	120	50.2
	기결	117	49.0
	기타	2	0.8
	총계	239	100.0
수용횟수	1회	183	77.2
	2회	26	11.0
	3회	13	5.5
	4회	5	2.1
	5회 이상	10	4.2
	총계	237	100.0

(3) 수감기간 및 현재까지 복역기간

수용자들의 총 수감기간은 '5년 미만' 27.6%, '3년 미만'이 22.4%, '5년 이상'이 16.4% 순으로 많았다. 수용자들이 현재까지 복역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 67.8%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2년 미만'(21.5%), '2년 이상-3년 미만'(5.8%)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수감기간 및 현재까지 복역기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기결수 총 수감기간	1년 미만	15	12.9
	2년 미만	23	19.8
	3년 미만	26	22.4
	5년 미만	32	27.6
	5년 이상	19	16.4
	무기징역	1	0.9
	총계	116	100.0

구 분		사례수	비율
현재까지 복역기간	1년 미만	164	67.8
	1년 이상-2년 미만	52	21.5
	2년 이상-3년 미만	14	5.8
	3년 이상-5년 미만	9	3.7
	5년 이상-10년 미만	2	0.8
	10년 이상	1	0.4
	총계	242	100.0

(4) 수용 당시 결혼상태

수용자들의 수용 당시 결혼 상태는 ‘법적 결혼상태’가 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이혼’이 16.1%, ‘이혼진행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가 5.4%로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실태조사 결과 보다는 결혼상태가 높게 나타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가 수용자 접견 면회를 온 가족이나 가족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21 수용 당시 결혼상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미혼	7	2.9
법적 결혼상태	167	69.0
이혼	39	16.1
사실상 부부	10	4.1
이혼진행 중 또는 사실상 이혼	13	5.4
사별	3	1.2
기타	3	1.2
총계	242	100.0

(5) 수용 전 자녀 양육비 부담 정도

수용 전 자녀부양비는 ‘수용자 혼자서 부담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와 함께 부담했다'가 35.7%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75%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수감된 후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매우 많이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V-22 수용 전 자녀 양육비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수용자 혼자서 부담	97	40.3
배우자와 함께 부담	86	35.7
배우자가 혼자 부담	24	10.0
수용자의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부담	17	7.1
잘 모름	17	7.1
총계	241	100.0

(6) 수용자 가정의 경제수준

수용자 가정의 수용 전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좋지 않은 편이다'가 25.2%,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가 1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37.6%의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23 수용자 가정의 경제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매우 좋지 않다	30	12.4
좋지 않은 편이다	61	25.2
보통이다	123	50.8
좋은 편이다	26	10.7
매우 좋은 편이다	2	0.8
총계	242	100.0

(7) 수용 전 수용자와 자녀 동거 여부

수용 전 자녀와 수용자의 동거 여부 문항에서는 '함께 살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0.1%로 많았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90.1%나 되는 데에 비해 부모 접견을 하였다는 자녀가 62.8%밖에 되지 않아 27.3%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부모가 교도소 수용 후에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4 수용 전 수용자와 자녀 동거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동거	218	90.1
비동거	24	9.9
총계	242	100.0

(8) 수용자의 자녀관심도 및 부모-자녀관계

양육자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서 현재 수용자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41.5%,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8.2%로 나타났다. 본 설문은 접견신청을 하러 온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해 면회가족으로부터 자녀의 상황을 전달받거나 확인하고 있어 자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25 수용자의 자녀관심도 및 부모-자녀관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수용자자녀 관심도	잘 모른다	17	7.1
	모르는 편이다	17	7.1
	보통이다	39	16.2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00	41.5
	매우 잘 알고 있다	68	28.2
	총계	241	100.0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	매우 좋지 않다	9	3.7
	좋지 않은 편이다	26	10.8
	보통이다	58	24.1
	좋은 편이다	92	38.2
	매우 좋다	56	23.2
	총계	241	100.0

또한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다’가 38.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24.1%, ‘매우 좋은 편이다’가 23.2%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 응해준 대상은 가족접견이나 가족사랑캠프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이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비교적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양육자의 관점에서 양육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살펴본 것이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비슷한 응답이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5) 그 외의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수용자 가족들에게 객관식 질문 외에 어려운 점을 말하도록 하였고 수용 생활 및 면회, 국가지원,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취합되었다

표 IV-26 그 외의 어려운 점

항목	내용
수용생활 지원 및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와 너무 멀어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힘들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영치금을 못 넣어줄 때는 가슴이 아프다. -수용자와 수용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문의 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접견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 저녁에 일하느라 거의 올 수 없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야간 접견이 가능했으면 한다. -자녀들도 화상접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가능한 시간대에 해주었으면 한다. -접견할 때 죄수복 입고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걱정되어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도 못 데려 온다. 죄수복이 아닌 가운이나 다른 옷으로 입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었으며 좋겠다. -애들이 접견 올 때는 아빠 손이라도 잡고 안아볼 수 있는 곳에서 접견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오고가는 시간에 비해 접견시간이 너무 짧아서 허탈하다.
국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이나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수사를 받을 때나 수감되고 나서 국가의 지원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 -수급신청을 하러 갈 때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물어보니 수치스러웠고 동네 사람들에게 노출될까봐 두려웠다. 별도의 상담실이나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수급으로는 쪼들려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항목	내 용
자녀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를 키우는데 힘든 얘기를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애들이 노출될까봐 학교나 그런데서 상담할 수 없고 동네 상담실도 이용하기 어려움 비용도 많이 들어서 엄두가 안 난다. -부모에 대한 얘기를 애들이 전혀 하지 않고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애들을 위해 심리치료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 수용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수용자자녀 관련사항과 자녀 양육 경험 등 수용자자녀의 생활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사항들을 요약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1) 수용자자녀 양육자 지원 방안 마련

수용자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65.8%로 한부모 양육자가 많았고, 다음은 조부모 24%, 친인척 6.2% 순이었다. 양육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부모 여성가장에 이들이 조부모일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둘 다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양육자들은 자녀 교육문제 등을 포함하여 수용된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있었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에게 수용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일'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생활이나 성적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응답이 11-12% 정도로 나타난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의 지원방향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용자 가족'을 특별지원 또는 위기가정으로 포함시키고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양육자들이 수용자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방임하지 않도록 양육자를 지원해야 한다.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용자 가족들은 가족의 수감문제를 남에게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 가족이라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고 정보도 얻기 어렵다. 자녀에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숨기고 감추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도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준비되지 않는 조부모나 친인척과 살면서 방임이나 학대가 발생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양육자이거나 빈곤한 가정의 경우 아무리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부담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부모양육이나 친인척 양육과 같이 가정위탁형태의 가정에 정책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필요가 있다.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은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수용자자녀 양육가정 경제적 지원 현실화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은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 수급비율에 비해 약 5배나 높게 나타나 수용자 가족의 빈곤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의 76%가 수용 전 자녀 양육비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의 수감 후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 조사에서도 좋지 않다는 경우가 37.6%로 나타나 가족의 수감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일부의 가정에서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지원목적이나 방향이 긴급구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지 못하고 수감되지 않은 부모 중 한사람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경우 수급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수용자 가족 중 많은 수가 수감 전부터 빈곤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용관련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경제활동 불가 등의 이유로 일반 빈곤가정보다 더 특수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특수한 상황을 반영되어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국가의 보장을 현실화 하고 경제적인 보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용자의 수용기간이나 수용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마련 등이 현실화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배우자가 수용된 후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한 양육자와 그 가정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방안이 확대되도록 제도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해당되는 보건, 문화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이 요구된다.

3)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정책 개발

자녀들의 연령은 초등학교 연령인 만 7세에서 12세의 아동이 35.2%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미만이 30.7%, 고등학생 20.0%로 분포되었다. 수용자자녀들은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대적인 양육자의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이하 연령의 아동이 65.9%로 분포되어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도 필요하다.

자녀의 문제행동에서도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의 영역에서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으며 가출이나 학교장제, 형사입건도 5~7%로 나타나 비행에 대한 조속한 개입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을 경우는 비울적으로는 낮았지만 경험했다면 충격이 컸을 것이고 이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한데 자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가족 내의 비밀로 숨겨둘 가능성이 매우 많다. 가족 내 금기시된 이야기가 되어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비행이나 범죄에 연류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에게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교육영역에서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의 심리정서 치유와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상황 등을 고려한 지원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용자자녀가 부모면회를 가고 싶을 때 연로하신 노부모나 친척과 동행하기 어려워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녀동행 지원이라든지 문화체험과 진로 프로그램 등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자녀지원방안으로 면회나 접견방법에 대한 변화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모수용 사실에 대한 알권리 보장

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보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자녀들의 59.3%는 부모의 수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접견을 경험한 자녀는 37.2%밖에 되지 않아 62.8%의 자녀가 아직까지 부모 접견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자들의 91.8%는 아직 부모의 수용을 모르고 있는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접견권도 침해받

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육자들 또한 부모의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자녀들의 부모 접견권은 일단 수용사실을 알리는 단계 즉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하거나 부모 스스로가 아동에게 알려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단계를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

일부 자녀의 경우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반항심과 오해로 안 좋은 결과가 발생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학대나 그 밖의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였고 자녀가 직접적인 범죄의 피해자였다면 부모 자녀 관계를 또 다른 관점으로 적용하기도 해야 한다. 오히려 부모를 만나는 일은 피해야 하고 자녀의 의사존중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녀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의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외에는 자녀에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교육하는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에게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양육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아동권리보호 및 충격완화를 위한 경찰의 체포수칙 제정 및 준수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아동은 많지 않았지만 5.4%의 아동이 목격하였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에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된다. 따라서 경찰의 체포수칙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수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



수용자자녀들의 경험
수용자자녀 심층면접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심층면접은 부모의 수용 후 자녀들이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부모의 수용사실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심정과 어려움 및 극복경험을 탐색하여 수용자자녀의 권리침해 정도를 파악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심층면접 참여자는 세움, 세진회 등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추천받았고 부모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수감되었던 적이 있는 청소년과 성인이다. 이 조사는 이후 수용자자녀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향과 예방책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인터뷰에 응한 17명에게 심층면접 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면접이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2017년 7월부터 9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사례 당 1회씩 1시간-1시간 30분 동안 조용한 스튜디오나 참여자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 녹음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인터뷰 후에는 사례를 지급하였다. 면접 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함께 살고 있는지, 부모가 수감되고 나서 삶의 전후 변화, 부모의 수감으로 힘들었던 점, 부모의 수감으로 수감된 부모와의 접견이나 교류 정도와 가족관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풀어 인터뷰를 담당했던 연구진 회의를 거쳐 아동권리영역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기준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진은 다양한 양육자와 살고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일반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을 찾았는데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들의 거부와 미협조, 위탁가정 부모들의 아동 친부모에 대한 질문거부 등으로 인해 수용자자녀를 만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되고 있는 수용자자녀들은 한 부모나 친인척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 부모를 만

날 수 있는 권리영역에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았다.

3) 심층면접 질문내용

심층면접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도록 반 구조화된 설문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V-1 심층면접 질문내용

주제	세부항목들
가족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함께 살고 있었나요? 2. 수감된 부모가 누구인가요? 3. 그때가 언제인가요?
부모의 수감과 생활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의 수감과 관련하여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이나 들었던 것이 있나요? 2. 부모의 체포를 목격 한 적이 있나요? 3.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들었던 생각이나 심정은 어땠나요? 4. 부모가 수감되고 나서 삶의 전후 변화는 어떠했나요?(학교생활, 친구, 이사 등등) 5.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부모의 사건으로 받은 침해정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혹시 부모님의 일로 침해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생존, 발달, 보호, 참여권리에 관한 부분/성별, 연령에 따른 특성) 2. 아니면 부모님의 일로 포기한 일이나 생각, 경험들이 있나요? 3.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수용된 부모와의 관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용된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과거와 현재) 2. 수용된 부모를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났다면 :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대화할 때 어색하지는 않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만나지 않았다면 :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만날 생각이 있는지 3. 부모 출소 후 계획 : 부모님은 언제 출소하나요, 출소 후 함께 살기를 원하나요? 4. 수감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제	세부항목들
가족관계 및 도움 받은 정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2.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3. 그동안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4.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었던 말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5.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제언	그동안 느꼈던 심정이나 생각을 말해주세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2. 조사결과

1)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심층면접에 참여한 17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5명, 남자가 12명으로 남자가 많았다. 연령은 17-19세가 가장 많았고, 20대, 14-15세 순이었다. 수용된 사람은 부(父)가 14명, 모(母)가 2명이었으며 부·모 모두 수감되어 있는 사례도 1명 있었다. 부모의 수용이유는 사기·절도 등의 경제사범이 7명, 강도·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10명 등이었다. 주 양육자로는 부(모) 7명, 조부모 4명, 시설 2명, 자녀들끼리 살고 있거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도 4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 4명, 경기, 인천 6명, 경상 4명, 전라 2명, 충청 1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 대부분이 청소년 이상의 연령이었는데 이는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정도의 충분한 경험과 충격적인 사건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타인에게 노출할 수 있는 수준의 참여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족의 일이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나 청소년쉼터,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시설 종사자의 거부 등으로 인터뷰 동의를 거절되기도 하였다.

표 V-2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참여자 번호	성별	연령	현재 하는 일	수용자	주양육자
1	남	27	사회복지사	부	친조모
2	여	16	학생(고등학교 2학년)	모	외조모
3	여	14	학생(중학교 2학년)	모	계부
4	남	16	학생(고등학교 1학년)	부	본인
5	남	17	학생(고등학교 1학년)	부	모
6	남	17	학생(고등학교 2학년)	부	모
7	여	14	학생(중학교 2학년)	부	모
8	남	17	학생(고등학교 1학년)	부	친조모
9	남	17	학생(고등학교 2학년)	부	삼촌-시설-누나
10	남	15	학생(중학교 3학년)	부	삼촌-시설-누나
11	여	20	직장인	부	삼촌-본인
12	남	21	학생(대학교 1학년)	부	모
13	남	20	검정고시준비	부모	시설
14	남	16	고등학교 중퇴	부	시설
15	여	21	재수생	부	외조모
16	남	17	학생(고등학교 2학년)	부	모
17	남	20	재수생	부	모

2) 심층면접 내용분석

수용자자녀들이 경험한 내용은 14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고 이를 아동의 4대 권리에 맞춰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전체 참여자 생활실태 개요는 부록 참조)

표 V-3 권리유형에 따른 심층면접 내용분석

권리유형	내 용
생존권	건강한 보호자 부재, 안전하게 살아할 공간이 없어짐, 경제적 궁핍과 냉혹한 현실, 자살까지 생각함
	“아빠가 경찰에 끌려간 순간 앞으로 어떻게 먹고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죽고 싶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권리유형	내 용
	<p>“아무데서 안도와주니 가족들 다 같이 죽자고 할머니가 맨날 우시고....” “편의점, 배달대행, 서빙, 음식점 주방일.. 지금까지 세상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데 100만원 벌어서 주유비랑 오토바이 대여비로 100만원 나갔어요” “살 집이 없어서 찻집방 전전했는데 너무 너무 끔찍 했어요”</p>
보호권	<p>집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시설로 떠돌아다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위로, 체포과정 목격 그리고 충격</p> <p>“일시 쉼터 있다가 단기쉼터서 살다가 다시 장기쉼터에 갔는데 형들이 때리고...누나랑 살고 있어서 연락했죠 우리끼리 살자고....” “시설 식당이 아닌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형제들이랑 살고 싶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살게 됐고, 고모 덕분에 대학가게 됐죠” “경찰이 아빠를 데리고 가면서 너도 알건 알아야 한다며 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말해줬어요. 3일 밤낮을 잠을 못잤어요.”</p>
발달권	<p>비행의길, 학업중단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 친척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 지역사회 서비스의 도움</p> <p>“교도소에 간 아빠 대신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제가 그때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빠 그렇게 되고 엄마는 밤마다 일하고 공부도 싫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가출하고 술먹고 그랬죠”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 바로 그런 심정을 말하는 거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너는 니 부모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 수치스러웠어요” “쉼터 선생님이 그냥 너는 니 갈길을 가라”해주 말이 제일로 도움이 되었어요. “센터 선생님이 없었으면 집에서 이렇게 못 있고 취미생활도 못하죠. 밴드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나고요”</p>
참여권	<p>수감사실에 대한 정보 부재, 멀고 먼 접견의 길 그리고 아쉬움</p> <p>“외국 갔다고 하셔서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듣고는 아빠한테 배신감이 들었죠” “아빠가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안 말해주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계속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리 전화해도 안락도 안 되고 엄마가 날 버리고 가버렸는데 아빠까지 날 버리는 건가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았죠” “유리창 같은데서 말고 아빠 손 좀 잡아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증에 사진이 없다고 면회도 안 시켜주고.. 주민등록등본 놓고 왔다고 안된다고 하고 2시간 걸려서 갔는데.. 막 울었는데도 안된다고 하고”</p>

(1) 생존권

① 건강한 보호자의 부재

부모가 수감 되면서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건강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수감되기 전부터 한부모와 살아 왔고 그 부모가 수감되면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방임 상태가 된다. 일시적으로 키워 줄 친 인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원하지 않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친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또 다른 생존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일부 아이들은 조 부모의 집에 맡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기는커녕 조 모를 돌보는 일 역시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되어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 하고 고된 삶이 시작된다.

참여자 9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지시고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동생이랑 저를 때리고 청소 안한다고 때리고 말대꾸 한다고 때리고.. 근데 누나까지 때리니까 누나가 집에 안 들어 왔고 동생도 삼촌 피해서 도망갔어요. 저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저를 잠을 안 재우고 새벽 3시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저는 때리면 그냥 맞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부터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계속 참다가 가출했고 센터선생님이 알아봐줘서 그때부터 쉼터로 전전하게 된 거예요. 누나가 가출하니까 저하고 동생 놔두고 왜 먼저 가출했나 처음에는 좀 입기도 했는데 쉼터에서 사니까 누나가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게 서럽고... 그래서 누나랑 연락이 됐는데 누나가 안 아프고 잘 지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그냥 화가 다 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우리끼리 살자' 그랬죠.

참여자 14 아버지가 교도소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할머니랑 살게 됐는데 할머니가 치매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구한 도우미 아줌마가 오셨는데 안 오시는 날에는 제가 밥을 차려드려야 되잖아요. 할머니 간호하다가 학교에 늦거나 못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알바도 해야 하는데 야간 일하면 일하다가 힘들어서 학교 못가고 출석일수 부족으로 결국 학교도 그만 뒀죠.

② 안전하게 마음 두고 살아갈 공간이 없어짐

부모가 수감되고 나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살기 위해

집을 떠나기도 한다. 가출한 아이들은 찜질방으로, 친구네 집으로, 시설로 전전하며 뜻하지 않는 이산가족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다. 안전하게 거주할 곳이 없는 아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비행행동을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그만두고 평범하지 못하게 살아간다. 참여자들은 어린나이에 집을 나가게 되면서 집이란 곳은 단순하게 잠을 자는 곳이 아닌 “마음을 두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참여자 11 집을 나갈까 말까 진짜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 혼자 나가면 동생들은 어쩌나 동생들은 더 고생할 텐데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려서 ‘일단 나부터 살고’ 이거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 나오니까 학교도 못 가겠고 근데 잘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고 주점에 서빙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저만 일하고 갈 집도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3-4달 찜질방에서 살았는데 정말로 끔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이랑 방을 잡고 살게 된 거죠. 다시 하라고 하면 정말 못해요.

참여자 10 아با도 안계시고 누나도 나가고 집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요. 집을 나왔죠. 그래서 가출했을 때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좀 했어요. 그때 법원 위탁 프로그램 그걸 했는데 하다가 재판받을 것이라고 오래요. 저는 나가는데 줄 알았는데 가면 집에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를 갑자기 묶더니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위탁 소년원이라고 그쪽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다시 재판받으러는데 한 달 동안 유치장 같은데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거기 끝나니까 또 자립관으로 가게 됐죠.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집에 정말로 가고 싶어요.

가장이 수감된 후 남겨진 가족들은 일도 해야 하고 학교도 다니고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집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생활의 토대가 되는 터전이 가루가 된 것처럼 날아가고 남은 가족들은 유목민과 같이 살게 된다. 막상 가족은 있는데 집이 없으니 아이들은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불안한 생활이 시작 된다.

참여자 17 아바가 들어가시고 방세를 못 구하니까 주인이 꼴 보기 싫다고 엄마 보고 밤에 나가라고 했데요. 그래서 밤에 가족들이 여관으로 짐을 옮기는데 이불 들고 옷 들고 한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날이 밝아버렸어요.

여관에도 못가면 빈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구요. 비어있는 집에 가구도 없이 살아 본 적도 있어요. 밥 먹다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데... 기분이 안 좋았죠. 집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였죠.

③ 경제적 궁핍과 냉혹한 현실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아이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상을 맞게 된다. 실제로 아빠가 체포되는 순간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아가나’였다고 한다.

자녀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세차장, 음식점 서빙, 주점 주방일 등 웬만한 성인들이 하는 일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했다. 어린나이에도 안 해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돈을 벌어야 했다.

할머니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숙식이 해결되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건 진짜로 사는 게 아니었다. 용돈이나 학원비 등을 얻기 위해 아이들은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마치 전사(戰士)와도 같아 보였다.

참여자 15 수급자인데 학원비까지 할머니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깃집에서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레슨 받으러 가야해서 이모한테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돈을 많이 못내는 집이 어려운 학생을 봐주신다고 이모가 알아봐서 간거거든요. 그래서 인천까지 1시간 지하철타고 갔는데 딱 5분 봐주고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니가 낸 돈 만큼만 지도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울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서럽고 그랬죠.

참여자 14 아버지가 계속 교도소에 계시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고파서 차탈이 하구요. 아침마다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훔친 게 피해금액이 40만원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1호 처분받고 그런게 모여서 보호관찰 2년 받았죠. 큰 아빠가 술 먹고 ‘나를 찌르고 나가라’로 해서 그때 화풀이로 집을 나와 아는 형과 피시방,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고 형이랑 차탈이 하다가 결국 6호 처분 받고 여기 시설에 왔어요. 계속 절도만 한건 아니고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죠. 면허도 없는데 사장이 확인을 안하니깐 그냥 일했어요. 100만원을 벌면 주유비와 오토바이 대여비로 100만원이 그대로 나갔어요. 웨딩홀 서빙, 고깃집 서빙, 물류센터, 편의점 안해 본 일이 없었죠....

가장이 없어지자 수용자 가족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된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기를 반복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다. <참여자 16>은 아빠가 감옥에 가고 엄마는 충격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친척들도 외면해 버리고 정말로 거지처럼 살게 되었다고 한다. 돈이 없자 먹을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 얻어온 김치마저 떨어지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길에 핀 민들레를 따가지고 씻어서 반찬으로 해먹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혹시 모를 불안감이 늘 맴돌았는데, 바로 ‘남아있는 다른 부모마저 나를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배고픔을 참으며 엄마만 있으면 괜찮다고 오히려 안심하기도 했다.

④ 자살까지 생각함

부모의 수감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배신감이 들어서 아이들은 그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을 위기로 더 몰아간 것은 편견 그리고 가족들의 절망을 보는 것이었다.

위기에 닥친 아이들은 어린나이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살을 마음먹기도 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할머니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었지 실제로 부모의 수감에 대한 수치스러움, 이웃의 편견과 놀림은 괴로움 그 자체였다.

참여자 12 동생이 친구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 비밀을 말했는데 개가지네 엄마한테 말하고 개네 엄마가 또 소문을 내서 그게 학부모님 사이에 다 퍼지고 애들의 따돌림이 시작되니까 초등학생이 너무 염세적으로 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다 싫고 이제 모든 게 나한테 더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부엌에 있는 칼로 팔 굽는 상상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손목을 그어선 잘 안 죽는다 팔뚝을 그어라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랬죠.

참여자 2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후에 아빠는 엄마 빚 갚느라 지방에 가서 생활비도 못주고 연락이 끊겼는데요. 아빠 때문에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외할머니는 매일 우셨고 나라에서 우릴 안도와주니 내가 죽어야 한다며 통곡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주민센터에 밤낮으로 한 100번쯤 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주민센터가 가서 오늘도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가족들 다 죽을거라고 하셔서 겨우 지원을 받게 되셨다고 했어요. 같이 죽자고 우는 할머니랑 매일 부둥켜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만

그땐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었고 괴로웠어요.

참여자 1 어릴 땐 아빠가 거기 계신 것도 힘들고 집이 가난한 것도, 할머니랑 사는 것도 힘들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죠. 근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하.....어린 마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거지 이해가 안 되고 울다가 울다가.. 할머니가 '네가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하고 절 붙잡고 우시고 아버지 미워하시고 그러면 가슴이 아팠죠.

(2) 보호

① 집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시설로 떠돌아다니고

수용자 가족들은 처음부터 빈곤하거나 한 부모 가족이었던 비율이 높은 편이다(최경옥·이경림, 2017). 그래서인지 수용자 자녀들은 어릴 때 양육자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갑자기 살던 곳을 옮겨 다니는 일을 경험한다. 한 부모와 살았던 아이들은 돌봐 줄 조부모나 친인척을 못 만나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 맡겨진다. 그러나 시설에 살면서 아이들은 사고를 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또 다른 시설로 옮겨 다니게 된다. 한 곳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적응해야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자신이 거처할 곳을 예상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다.

시설에 살게 되면서 아이들은 수감된 부모와의 연락도 끊기게 된다. 시설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끼리 지방에 있는 부모 면회를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시설에 있다 보면 부모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시설에 형제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가족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게 된다.

부와 모, 부모 모두가 수감되어 시설에 맡겨졌던 한 삼남매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식당에서 겨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성인이 되어 퇴소하게 되자 그나마 만났던 동생도 볼 수 없고 집에 오고 싶어 하는 동생들을 달래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고 있었다. 다른 집 애들처럼 방에 둘러앉아 같이 밥 먹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빠가 출소하는 날 몸 누울 곳을 찾아 동생들과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한다.

참여자 9 부모님 이혼하시고 처음에는 엄마랑 살다가 엄마가 재혼하니까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해서 거의 버려진 건데 아빠한테 오니까 좀 살만해졌다 그러니

까 사고가 딱 났단 말이죠. / 단기쉼터에 있다가 수녀님이 다시 새로운 쉼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추천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형들에게 또 다른 구타를 당하고 시달림을 받게 된 거예요. 가족이 그립고 집이 그리워서 세상을 원망했어요. 단기쉼터에 있던 수녀님이 여기 좋다고 해서 왔는데 수녀님한테 너무 배신감이 들고 나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집이 생각났죠.

참여자 4 처음에는 엄마랑 살다가 다시 아빠한테 와서 아빠랑 새엄마랑 살다가 아빠가 들어가신 후에는 새엄마랑 살다가 그 다음엔 할머니랑 살다가 그 다음에 시설로 갔다가 다시 할머니 집에 왔다가 지금은 혼자 있고... 맨날 혼자였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었으면 힘든 시기도 안 찾아왔을 테고 하는 바람이 있죠.

② 남아있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위로

부모의 수감 후 키워준 할머니와 돌봐준 친척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죽고 싶은 순간에도 살아야겠다고 결심 한 계기는 이들의 얼굴이었고 어려운 순간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보듬어준 친인척이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가난한 할머니가 부끄러웠고 할머니와 살면서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어린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할머니가 있었기에 부모의 면회도 다닐 수 있었고 할머니가 돌봐주셨기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자신도 동네 일진이 되어서 나쁜 길로 빠졌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일부 자녀들은 비록 부모와 살고 있지는 못해도 고모나 이모의 지지로 장래희망을 생각하게 되었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꿈을 키우게 되고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먹고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참여자 12〉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엄마와 옆에서 교육적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는 외할머니를 보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대학에 합격하고 수용자자녀를 돕고 있는 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수용자자녀를 돌보고 있는 양육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부모가 수감되었다는 사건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신이 수용자자녀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이 수용자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건강한 회복력을 갖춘 아이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좋은 지지자와 좋은 보호요인들이 있다면 수용자자녀들을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참여자 1 막내고모가요.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분이세요. 어렸을 때 할머니랑 저를 같이 키우시다가 고모는 이제 서울로 오신 건데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대화가 잘 안되니까 저랑 얘기해 주고 제가 서울에 온 것도 대학을 가야 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다 고모 덕분이죠. 대학 다니는 것도 고모가 뒷바라지 해주시고...

참여자 15 이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는 거죠. 할머니랑 살게 알아봐준 것도 이모고 수급신청도 해주시고 엄마도 이모가 돌봐 주시고 아빠한테 면회 갈 때도 이모랑 가요. 이모가 거의 부모님이죠.

③ 체포과정 목격 그리고 충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집안에 들이닥쳐 아빠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겐 엄청난 충격이 된다. <참여자 16>은 밤늦게 집으로 경찰관들이 찾아와 가족들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때의 기억은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법령에는 경찰관들이 긴급 체포할 때 자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체포광경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 질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참여자 9>가 겪었던 일들을 들으며 굳이 경찰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설 명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참여자 9 아침 일찍 자고 있는데 누가 아빠를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막 옷 입고 그러는데 제가 왜 왔냐고 하니깐 처음엔 말을 안 해요.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우리한테 그카고 경찰차를 탔는데 그분들이 그 경찰 동료분이 사실 애들도 알건 다 알아야 하니깐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 카면서 '그 아빠 잡혀간다'. 그 피해자 누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신고해서 성폭행으로 간다' 그 카는 거예요.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나랑 들었는데 어안이 병병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놀래서 누나랑 3일 동안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3) 발달

① 비행의 길로

부모의 수감 사건은 아이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부모의 일을 듣고 평소

와 똑같이 공부를 하는 일이나 학교의 일상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해지면서 소극적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점차 학교를 결석하고 시설에서 탈출하면서 좀 더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점차 학업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현실도피처를 찾게 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범죄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한다.

참여자 13 시설에서 살다가 아빠가 추석 때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고모가 오셔서 아빠가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바 사건보다도 제가 시설에서 막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너무 크게 느껴 진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지? 그럼 난 어떻게 되지? 그래 가지고 몰래 시설을 나갔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아예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몇 달 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고치고 10호 처분 받고 1년 6개월 자립관에 있었죠.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은 1차적 피해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계에 허덕이다 아이들을 위해 공부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주지 못하고 지도, 감독 해줄 어른도 없어지면서 아이들은 쉽게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 남은 부모가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아이들만 남겨지게 되면서 2차적 피해를 겪는다. 아이들의 방황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아빠의 수감사실을 알게 된 후 아이가 엄마에게 거칠게 반항하고 변했다고 느끼게 된 가족들은 아이를 붙잡아 줄 아빠의 부재를 몸서리치게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도 아빠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여자 5 아빠가 들어가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 좋아졌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집도 지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엄마가 주부셨는데 일하게 되시고 예전하고 완전 달라지면서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형이랑 번갈아 가면서 동생 어린이집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리고 오는 거 해야 하고 집에서 밥도 차려 먹여야 하는데 귀찮고 형이랑 안한다고 싸우고.... 학교 안다니고 놀면서 계속 빠지니까 못 가게 되고 놀다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게 되고 막 술먹다보니까 가출하고 싶어지고 재판까지 오고 막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엄마가 아빠도 그런데 너까지 왜 이렇게 됐냐고 우시는데.. 아빠가 안계셨다면 이렇게 되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② 학업중단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

수용자자녀들은 부모가 수감된 후 집안 경제형편이 안 좋아지고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진로를 꿈꾸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모의 사건을 알게 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불편해서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며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다. 부모가 없어진다면 아이들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의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그냥 꿈을 포기하게 된다.

참여자 11 처음엔 아빠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든 저는 그냥 너무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돈 벌면서 별별 고생 다하고...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일단 사고 안치고 학교만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동생을 학교는 어떻게 하든 졸업시켜야겠다 싶어서 학교는 누나가 다 처리해줄게 그러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전학시키는 거 다 알아 보구요. 학교선생님들도 만나서 아바 면회 갈 때 다 결석처리 안되게 다 얘기 해놨어요. 일단 동생들이 졸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학 시키는 거, 수급증 만드는 거, 거주지 옮기는 거 다 제가 알아보고요. 하다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정고시 본거구요. 나중에 아바 나오시면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일부 아이들은 뒤늦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방황과 불안의 과정을 겪는 동안 뒤쳐진 학업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학원도 과외도 그 혼한 사교육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점차 학습부진과 학업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면서 공부와 멀어지게 된다.

참여자 5 학교 안가고 자꾸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대안학교를 간 거거든요. 일반 학교 못 따라가고 그냥 빠지다 보니까... 근데요. 대안학교도 프로그램이 없고 가면 문제집을 일단 풀라고 그래요. 검정고시 봐야하니까 그냥 혼자 풀라고 하는데 뭘 알려줘야지 풀지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풀고 나서 틀린 거를 해설해 주겠대요. 그래서 안 풀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③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의 하나는 심리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건으로 믿었던 부모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아이들은 부모의 잘못이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건에 직면하면서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부모에 대한 연민과 불쌍함을 느끼는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용자 가족들 중 수용자 부모들은 자식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최경옥·이경림, 2017) 심층면접에서 만났던 자녀들도 마치 부모처럼 일종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없어서 또는 그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마음의 짐을 갖고 미안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했다.

참여자 11 학교 못 다녔을 때는 아빠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제가 좀 잘했어야 하는데...

참여자 13 다 제 잘못이죠. 제가 그때 집에만 있었으면... 제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빠가 불쌍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심리적 불안으로 남자아이들은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화를 내고 싸우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여자아이들은 소극적이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엄마가 수감된 여자 아이들은 답답한 심정을 아빠와 나누기 힘들어했고 엄마를 미워하면서 대놓고 원망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가 없는 여자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속옷이 필요했고 여성으로써 겪는 어려움과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위로받고 싶었으나 호소할 때가 없어 그것은 생각뿐 점점 혼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참여자 7>과 <참여자 14>는 마음을 둘 곳 없어서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에 빠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 몰입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 12 애들이 아빠 상황을 알고 따돌리고 소문나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어울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범죄자가 돼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니깐 그 반작용으로 치마입고 화장하고 놀고 그런 애들이 혐오스럽고 욕하고 그러더라고

요. 개네가 뭐 쫓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먹살 잡거나 싸움을 많이 붙었고 사방에 가시가 솟아 있는 거 같다고 해야 하나 애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도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애들과 싸우고 책상 아래로 던져버리고... 강박적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애들 때리고 그러는 걸 응징이라는 생각하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했어요.

참여자 10 저는요. 애들이 패드립 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제가 아빠 없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니는 아빠도 없나?’ 그러면서 놀리면서 말하면 확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렸어요. 열 받아서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걸릴 뻔 했는데 아빠 얘기해서 옥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샘들이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 애들이 부모 얘기하고 그러면 용납이 안되요.

참여자 3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말이 없어졌고 웃지도 않았고 제가 저 같지 않았어요.. 애들이 엄마하고 어디 갔었다 뭐 샀다 그러면 저도 옛날 일인데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지어내서 말하고 집에 오면 새아빠 하고 한마디도 안하고 아빠는 얘기만 예쁘다고 보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속웃 사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오랫동안 다니고 있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께도 알릴 수 없었어요. 좋은 일도 아닌데 그걸 말한다 뭐 엄마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외할머니 맨날 돈 없다고 하니까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④ 친척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

이웃을 만날 때 마다 부모처럼 살지 말라는 충고는 수용자자녀들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의 부모님은 ‘수용자자녀와는 어울리지 마라’며 차별하였고 아이들은 그런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남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모여도 이웃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면회도 가보지도 않았던 친척들이 자신의 부모를 향해 수군대는 이야기와 잘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묻고 궁금해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겪어내기에는 힘들 일이었다. 불쌍하게 보는 시선과 충고의 말은 어린아이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했다.

참여자 1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동네사람들이 아빠애기를 다 알죠. 근데 다 아니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는 너희 아빠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꼭 아는 척을 해요.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싫죠. 저도 뭐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

는 걸 아는데... 그리고 이제 아빠가 들어간 거를 친구 부모님들이 아시니까 부모님 거기 들어간 애랑 같이 놀지 마라 이래서... 아빠가 원망스럽고 입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좋게 들을 수는 없었어요.

참여자 2 고모들이요 엄마가 궁금하면 면회를 한번 가보든가, 가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저한테만 얘기 하는 거예요. 굳이 저한테는 엄마 거기 있는 얘기 안했으면 좋겠는데 하기도 싫은 얘기를 맨날 물어보고 눈치주고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학교 다니는 거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끼리만 속덕거리고 제가 짜증내면 '불쌍해서 그런다' 그리고 '네가 잘해야 동생도 잘된다, 니네 아빠도 잘 된다'고 계속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잘하라고 하고 짜증 나는데 저는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어주지 못했고 부모의 사건을 들추며 더욱 차갑게 대했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받은 냉정한 시선은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계를 왜곡되고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참여자 15 제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교회에서 친구랑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니네 아빠가 그랬다며?'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친구들이 '애네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말 해주는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죠. 사람들이 저를 자꾸 이상하게 볼 때면 오히려 누군가를 괴롭혀주고 싶었어요. 저도 제 잘못이 아닌데 당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때 정말로 마음을 크게 고쳐먹지 않았으면 저는 동네 짱이 되어서 엄청 못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⑤ 지역사회 서비스의 도움

함께 살고 있던 한 부모가 수감되고 집에 의지할 어른이 더 이상 없을 때에도 지역사회 내 돌봄을 받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층인터뷰에서 만난 <참여자 9>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부모 수감 후 양육을 맡고 있던 삼촌의 학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그 일로 쉼터에 보내져서 좀 더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4>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혼자 남겨지자 학교 결석이 빈번했고 시설에 들어갔다 다시 집에 왔다가 반복 했었는데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게 되며 이제는 집에서 비록 혼자이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집에는 어른이 계시지는 않지만 더 이상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며 학업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즐겁게 취미활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9 제가 가출하고 방향하니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아신 거죠. 그리고 사정 설명 드렸더니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일시청소년 쉼터에 3일 있다가 집에 다시 갔는데 삼촌이 또 때리려고 해서 선생님한테 말해서 신고해주시고 6개월 있다 그 쉼터에 간 거예요. 거기서 중학교 졸업했죠. 거기 쉼터 선생님이 항상 해준 말이 있어요. ‘니는 그냥 니대로 살아라. 그게 답이다.’ 그 말이 저한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이 상황 듣고 그냥 힘내라거나 아니면 뭐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쉼터 선생님이 항상 모든 쉼터 선생님들이 저한테는 ‘아빠는 아파고 너는 너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라고 해준 그 말이 제일 힘이 났어요.

참여자 4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역아동센터를 다녔거든요. 저랑 10년 정도 되는 친구가 여기 알려줘 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 가지고 1318로 넘어왔어요. 센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도 없을 테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밴드도 못했을 것 같고 이제 밖에서 떠돌았겠죠. 어른도 안 계시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막 그렇게 놀았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니까 절제도 되고 주말에도 센터장님이 근무하시니까 주말에 연습도 할 수 있고 집에 있을 때보다 센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견뎠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제가 힘들어 하니까 저 같은 애들 많다고... ‘개네들도 티를 안내서 그렇지 잘 이겨내고 있다고 너도 깨끗하게 니 일 잘해내라’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친구랑 형들이 있는 게 힘이 되죠.

(4) 참여

① 수감사실에 대한 정보 부재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염려해서 부모의 수감사실을 자녀가 모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가 외국에 나가있거나 일하러 지방에 갔다는 거짓말을 만들어 우선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들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진

다. 심지어 갑자기 말도 없이 부모가 외국에 나갔다고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전화도 못하느냐며 계속해서 의심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에 빠진다. 부모의 사망이나 안 좋은 일을 상상하며 밤마다 울기도 하고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일부 아이들은 부모의 수감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나서는 그 사실을 그 당사자 부모에게서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섭섭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진술한다.

참여자 3 엄마가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새아빠가 엄마 어디 갔다 이러는데 감옥에 갔다고 해서 놀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나한테 엄마가 말도 안하고 갔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새아빠한테 들어야 하나 기가 막히고 막 섭섭하고 눈물 나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중에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게 되어 다행이고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한다. 부모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듣고 나서는 자신이 비로소 가족으로써 자녀로써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좋았다고 한다.

참여자 8 아빠가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 보내고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걱정이 되어서 불안했죠.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지방에 출장 갔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왜 전화도 못하나 무슨 사고 당하셨나 막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제가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걸 절대 비밀이라면서 교도소에 계신걸 알려주셨죠.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되셨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안심되는 거예요, 오히려. 절 버리지 않으셨다는 안도감이랄까.

많은 수의 아이들은 부모가 언제 돌아올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기 어렵고 물어봐도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답답해하고 있으며 궁금증은 불안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자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미래와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을 대처하도록 얘기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여자 5 저는 아빠가 언제 나오시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고등학생쯤 되면 나오신다고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자세히 안 가르쳐 줘서 계속 물어볼 수가 없어요.

참여자 4 옛날에는 아빠가 전주인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몰라요. 고모가 안 가르쳐주고... 아빠가 왜 들어가셨는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셔서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면회 가고 싶어도 고모가 니네 집 일은 신경 안쓰는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를 수도 없고..

② 멀고 먼 면회의 길 그리고 아쉬움

부모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 면회를 가는 과정이 멀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는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또 한 번 좌절한다.

현재 가족접견제도에서는 성인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부모 면회를 갈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을 가지고 가야만 면회신청을 할 수 있다.

면회시간도 평일에는 오후 4시에 마감이라서 토요일밖에 갈수 없는데 2-3시간 걸려서 간곳에서 면회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목 놓아 울기도 했다.

참여자 2 새 학기에는 학교에서 학생증발급 처리가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학생증을 가지고 갔는데 사진이 없다고 면회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은 학생증만 가져가고 주민등록등본을 빼놓고 갔는데 면회신청접수가 안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울고 인천에서 대전까지 갔는데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만나는데 뭐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매주 가서 거기 아저씨들이 다 알 텐데 쌀쌀맞게 안 된다고... 고생해서 갔는데 엄마 못 만나서 목 놓아 울었죠.

주민등록등본도 몇 개월 지난 거는 안 된다고 다시 떼어오라고 그러는데 학교 끝나고 가면 주민센터 문 닫아서 그걸 못 떼는 거예요. 할머니도 바쁘시니까 못해주고 정말 저는 엄마 보러 꼭 가야하는데...

참여자 4 교도소에서 가족 오라고 그래서 새엄마랑 갔는데 새엄마가 호적에 안 올라가서 가족이 아니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다른 집은 가족 많이 와서 안고 막 웃고 그러는데 여럿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을 때 혼자 아빠와 있었던 기억은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했었죠. 준비해온 프로그램을 따라 하기는 하지만 가족과 얘기할 시간도 없고 개인적인 얘기도 못하니 좀 그랬죠.

부모가 수감되어 있는 곳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몇 시간에 걸쳐 가야 한다. 차비도 만만치 않고 자신이 어떻게 번 아르바이트 비용을 아껴서 부모한테 영치금도 넣어주어야 한다고 힘들어한다. 참여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보면 누가 보호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렇게 어렵게 면회를 신청해서 만난 부모와 얼굴도 손도 만져볼 수 없는 곳에서의 10분 면회는 정말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를 항상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멀고 먼 길을 향하고 있다.

참여자 8 가족면접인가 가는데 아빠 얼굴 보면서 서로 손도 만지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래요. 근데 중학교 때 단 하루도 학교에 빠진 적이 없어서 개근상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 손을... 개근상을 만지기보다는 그냥 아빠 손을 더 만지고 싶어서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학교 포기하고 아빠 손 만지는 걸 선택했죠. 다른 날은 유리창이라서 손을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손을..

3. 소결

수용자자녀들은 1차적으로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겪고 있었다. 이후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고 충족되는지의 정도에 따라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발달과제를 잘 수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기도 하였다. 수용자자녀들이 경험한 내용은 14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 주요 권리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생존권 보장

생존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부모 수감 후에 남겨진 자녀들을 돌봐주는 건강한 어른의 부재, 안전하게 살아갈 공간이 없어짐, 경제적 궁핍과 냉혹한 현실, 자살까지 생각함’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건강한 양육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부모를 대신한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학대와 방임 등 돌봄의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이들은 가출과 학업중단, 비행으로 2, 3차의 문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다. 안전하게 거주할 집이 없어지면서 삶은 불안하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궁핍함은 자녀들을 아동으로서의 삶이 아닌 생계를 짊어진 성인 이상의 노동을 해야만 하는 극심한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수급 산정 시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수급 외에도 실질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위기에 빠진 수용자자녀의 생존을 위한 긴급지원과 수급지원 이외에 별도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수감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곳을 마련해주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이었다면 경우 부모가 수감된 후 아이들끼리만 남겨진 상태에서 누가 아이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경찰조사나 체포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시스템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보호권 보장

보호와 관련된 주제에서는 ‘집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시설로 떠돌아다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보살핌과 위로, 체포과정 목격 그리고 충격’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보호권에서는 시설보호의 경우나 위탁가정에서의 돌봄 등에서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주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부모 체포를 목격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충격을 받았던 아이들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수용자자녀들은 이때 받은 충격을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 두고 있으며 이를 눈치 채고 있는 가족들도 그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최경옥·이경림, 2017). 반면 남아있는 친인척 양육을 받으며 자녀들은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호기관이나 위탁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거주지가 옮겨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수감된 부모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교류하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겨진 아이들은 수감된 부모 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 간의 관계도 단절을 겪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히 조손가정이나 친인척 가정 등 위탁가정 형태의 양육자들에게 임시적 특별기간 우선지원 정책이나 본인의 충격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자녀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보호 외에도 수용자자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 체포 시 아이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찰의 체포수칙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경찰 및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

3) 발달권 보장

발달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비행의 길, 학업중단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 심리적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위기, 친척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 지역사회 서비스의 도움’이 도출되었다.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1차적 충격도 있었지만 다른 한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재와 지도감독이 약화되면서 자녀들은 비행의 길을 시작하고 있었다. 또한 학업 중단과 진로고민도 문제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충격으로 인해 학업능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사와 경제적 어려움, 가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수용자자녀들은 아동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위기와 심리적 변화에 부모의 수감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부가되면서 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로받을 수 있는 공적 체계의 창구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

수용자자녀들은 발달과정에서 거주지 변동, 양육자 변경,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있었고 주위사람들의 차갑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인한 3차 피해도 드러났다. 그로인해 심리적 상처와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염려되는 아이들도 만나 볼 수 있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역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기관 실무자들의 돌봄과 관심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회복할 때 큰 지지가 되어 주었다. 그들이 힘을 내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보호체계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하여 수용자자녀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수용자자녀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나 지역사회기관에서 수용자자녀의 범죄나 비행 예방하기 위한 사례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낙인감이나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한 사례발굴과 연계인데 이 역시 수용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지원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위해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만나서 일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기관 종사자에게 수용자 가족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참여권 보장

참여와 관련 주제에서는 ‘수감사실에 대한 정보 부재, 멀고 먼 면회의 길 그리고 아쉬움’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특히 참여권에서는 자녀들의 알권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녀들은 부모수감사실 또는 부모와의 관계나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염려하고 아이들을 안심시키고자 거짓말을 꾸며대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불안해하고 다른 어른들의 말을 의심했으며 부모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부모수감사실을 아는 가장 큰 장점은 부모를 만나 볼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만들어 내지만 오히려 그 점이 아이들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부모를 만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막상 그리워하던 부모님을 만나더라도 죄수복을 입은 부모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또한 짧은 접견을 위해 먼 길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고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어렵사리 찾아온 발길을 아무 소득 없이 돌려야만 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신의 삶에 대한 알 권리와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위한 가족 내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양육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정기관 내 면접환경이나 시스템이 아동, 가족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만나는 수용자에 대한 접견과정과 면접환경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I



수용자자녀 문제 대응방안 델파이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

본 장에서는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Delphi¹²⁾ 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 교환하여 의견을 응집시키는 방법으로 전문가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서도 델파이 조사의 기법을 사용하여 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전문가 합의결과를 도출 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교정, 법률, 공공, 사회복지, 학계18명이다.

이후 이 자료는 수용자 가족과 자녀를 지원과 정책제언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문제점과 자녀 지원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토대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문항별로 부처 업무 적절성과 실효성, 시급성, 중요도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후 결과를 수렴 하였고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1, 2차 조사는 모두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 자료는 총 20부를 배포하여 18부 회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21.0에서 코딩 후 분석하였다.

12) 델파이 기법은 양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는 쉽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연구문제에 대해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또는 다른 형태의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왜곡된 의사결정 달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즉, 소수인사에 의해 토론이 지배되는 현상, 동료집단의 견해에 따라야 하는 압력, 개성차이와 참여자간의 갈등, 권위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익명성, 반복, 통제된 환류, 응답의 통계처리, 전문가 합의 등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 강조된다(남궁근, 1998).

2. 조사결과

1) 조사 참여자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총 20명 중 18명으로 90%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교정 분야 6명, 변호사 2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 사회복지분야 2명, 대학교수 및 연구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VI-1 조사 참여자

분야	소속 및 직위
교정분야 6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과장
	전) 법무부 수용자 위기가족지원 담당
	교도소 사회복지과 과장
	구치소 사회복지과 교감
	前 교도소 소장
	現 교도소 소장
법률분야 2	변호사
	변호사
공공분야 3	前 법무보호복지공단 담당자
	구청 사례관리자
	구청 아동청소년센터장
사회복지분야 2	수용자 아동지원 단체 사회복지사
	아동인권 NGO 단체 관리자
학계 5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前 구치소장
	연구원
	경찰행정학과 교수

2) 1차 조사 분석결과

1차 조사는 수용자자녀로 살아가는데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아동권리 영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해야 할 지원정책 방안,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개방형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취합된 의견은 핵심용어를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연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중복되거나 비슷한 의견은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수용자자녀의 권리 침해 영역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자녀에게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총 104개의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16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한 후 이를 아동의 4대 권리 영역 별로 범주화하였다.

표 VI-2 수용자자녀 권리침해영역

권리	주요 주제	
생존	양육과 주거	양육환경 박탈, 주거불안정
	경제	수용으로 인한 가족의 빈곤
	사회적 지원	부모 부재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단절
보호	가족, 양육	양육자 부재, 한 부모 가정·위탁가정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학교생활	학교부적응과 부모수감 노출 시 또래 괴롭힘
	수사단계	체포 시 아동충격, 수색 시 아동에게 불안감 조성
	재판	부모 구속 시 자녀 방치
발달	학업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학업곤란·학업중단, 열악한 학습 환경
	심리사회	부모수감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신체건강	적절한 치료시기 놓치고 질병 노출
참여	알권리	수용된 부모에 대한 상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자녀의 알권리 침해
	접견권	장거리이동, 비용발생 등으로 면접기회 제한
	교정기관	면접시간 부족, 차단시설 있는 장소에서 접견 시 아동 충격
기타	양형	선고 양형고려 : 주된 혹은 유일한 양육자가 수감된 경우 양형 고려
	사회제도	수요자 자녀 지원 주무부처나 컨트롤타워 없음
	사회 인식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

(2) 지원정책 방안

지원정책 방안은 정부의 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정부의 역할에서 정부의 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 법원, 법무부(교정본부)였으며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제출되었다. 정부역할에 대해서는 총 52개의 항목이 제시되었다.

① 정부

표 VI-3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에서의 정부역할

부처	역할
교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자 수감 시 학령기 자녀들의 교육태도, 정서적 불안정이나 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안 교육(교사연수 등) 2. 수용자자녀에 대한 상담 3. 사례관리, 가정방문, 멘토링 제도화 4. 학업지원 5. 학교사회복지사 연결 6. 수용자자녀를 포함한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학교차원의 배려정책 개발 7. 상담교사 가이드북에 보다 정교하고 걱정한 매뉴얼로 업그레이드 8. 위센터(위스쿨)차원의 보호 치료 프로그램 개발 9. 교사, 교원,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필수 10. 부모수감에 대한 차별, 따돌림, 괴롭힘에 대한 조치 11. 학비지원, 급식비 지원
여성가족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자와 양육환경지원 2. 수용자 가족에 자녀에 대한 가족 대책 총괄(주무부처로) 3. 수용자자녀 양육자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구축과 지원책 마련 4. 수용자 가족에게 한부모지원법 안내 의무화 5. 수용자자녀 실태파악 6. 경제적 지원 7.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보건복지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자 구속 시 충격에 대한 자녀 심리상담 2. 가족 경제적 지원(긴급구호) 3. 수용자 가족을 사회복지 수혜대상으로 편입 4. 수용자자녀 전문 쉼터지원 : 친인척 보다 그룹홈에서 양육하도록 배려 5. 의료서비스 지원 6.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확보 : 보육, 지역아동센터, 지역 사례관리 7. 아동보호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수용자자녀 가족건강성 및 보호 교육 8. 수용자자녀 지원 제도화하고 양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해당 공무원과 담당자 교육 9.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개발되고 사회복지 전문가 교육에 기회 확대

부처	역할
경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포현장에서 아동 충격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체포, 수사 시 위기가정의 경우 남겨진 자녀 복지시설 연계 3. 구속자 가정통보제도 점검 4. 체포 과정 시 아동충격 보호 실행 매뉴얼 개발 5. 경찰행정 규칙에 삽입하고 경찰학교 등에서 교육 6. 체포수직 이행실태 점검 평가 7. 체포 시 수용자자녀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8. 유치장 수감 시 자녀 면접권 최대한 보장
법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피고인 양형고려 권장 2. 심리단계에서 가족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 3. 재판 시 피고인자녀 등 긴급지원필요 시 구속집행정지 제도 신설 4.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자녀문제 인식개선 교육 5. 자녀 방청 원할 경우 상담요원이 사실관계와 보호관계 적절히 설명 6. 어린아이 있는 여성의 경우 보호관찰 선고
법무부 (교정본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용자자녀관계 프로그램 시 자녀참여 적극 권장 2. 교정공무원들에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필요 3. 교정본부의 사회복지과에 재소자 가족지원담당관 확보 운영 4. 수용자자녀실태 등 제반 통계 구축 5. 자녀 친화적 접견실 환경 마련 6. 미성년자녀 있는 가정(특별면접) 접견기회 확대, 가족단위 프로그램 활성화 7. 신설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만남의집을 담 안에 설치하여 수형초기부터 시행 8. 수용자자녀도 피해자이므로 범죄피해기금 지원 확대 9. 자녀 접견기회와 시간연장(토요일 면회시간 연장 및 구비서류 간소화)
국가 인권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태조사결과와 정책대안들을 해당부처에 적극 공유 및 권고
국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가 있고 범죄사항이 위중하지 않을 경우 사회 내 구금제도(가택구금제도) 입법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시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공동생활가정이나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양육기관 및 자녀를 돕는 사회복지 시스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수용자 가족 포함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민원서식에 수용자 가족 포함
- 수용자자녀 학업 및 진로상담
- 대리양육가족 모니터링 및 지원강화, 친인척 양육 경우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의료서비스, 보건소를 통해 건강검진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가운데 통합사례관리 실시
- 주민지원센터 복지 담당자들이 한 부모 지원 대상자 중 수용자 가족이 포함됨을 숙지하도록 교육
-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용자자녀환경과 문제점 파악
- 수용자자녀 지원 시스템 구축
- 생계급여 지원 및 가정방문
-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전문 센터 설치

③ 민간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거나 민간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로써 민간단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시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국민 홍보, 옹호활동, 시민교육, 캠페인
- 수용자자녀 여름캠프 및 힐링 여행
- 부모면접 동행 및 가족접견 지원
- 후원연결
- 상담 및 사례관리
- 수용자 가족 욕구파악, 수용자자녀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 학업지원, 의복, 체육복, 교복 등 지원, 후원자 연결(성탄, 명절)선물
- 수용자자녀 악기, 운동, 취미, 특기활동 제공
- 관련정보구축, 서비스 개발, 조사연구, 플랫폼
- 대정부활동, 입법청원
- 홈페이지에 수용자자녀의 가족 질문에 수시로 답해줄 수 있는 코너 마련

(3)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수용자자녀 지원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과 그 이유와 수용자자녀사업을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

는 담당 주무부처와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취합된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용자자녀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법과 이유(순위 무관)

표 VI-4 수용자자녀 지원 내용 포함이 적절한 법(순위 무관)

법	이유
1. 아동복지법	-미성년 자녀는 아동이고 아동관련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 되므로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수용자 관련 처우로 해야 포괄적 지원가능(발달장애인지원법, 정신건강복지법 등에도 가족을 포함하고 있음) -특별법에 명시해야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음
3. 청소년복지지원법	-수용자자녀 중 청소년이 많으므로
4. 긴급복지지원법	-수용이라는 사실이 긴급이나 위기이므로
5. 한부모가족지원법	-대부분 한 부모나 조손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
6.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지원으로 확대해야 하므로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
8. 한 법에만 포함시킬 수 없음	-각 지원마다 특수성이 있어 한 법에 포함시키기 어려움 (예)부모 면접은 형집행법에, 위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아동에 대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② 수용자자녀 지원 주무부처로 적합한 곳과 이유(순위 무관)

표 VI-5 수용자자녀 지원에 적합한 주무부처(순위 무관)

주무부처	이유
보건복지부	-아동 주무부처이고 국민의 복지지원이 주된 업무이므로
여성가족부	-가족단위로 지원해야 하므로 연계차원에서 대부분 피해 가족이 여성과 아동이므로 특화서비스 개발에 장점 있음
법무부	- 법 감정을 해치지 않고 낙인감 최소화 가능 - 대상자 발굴이 용이함
총리실 산하 별도의 위원회	- 부처별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불협화음 예방차원에서

(4) 수용자자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였고 다음과 같은 응답이 도출되었다.

생계지원, 양형, 면접권, 체포충격 완화, 자녀심리상담, 가족면접환경개선, 차별금지, 자녀 학업지원, 가족지원, 그룹홈 설치, 수용자-자녀관계개선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관심

2) 2차 조사 분석 결과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 중 인권침해 소지가 될 수 있는 아동권리 영역을 제외하고 정부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민간단체의 역할, 법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 객관식 항목으로 개발한 후 조사하였고 빈도분석으로 처리하였다.

(1) 정부부처 역할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법원, 법무부 교정본부, 교육부 순으로 정리하였다. 6개 분야 정부의 역할에서는 해당부처의 소관업무로서의 업무 적절성과 성과 창출기대 가능성인 실효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 부처업무의 적절성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 분야 영역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의료지원’(4.33)이었다. 실효성 부분에서도 가장 높은 평균점수는 ‘가족 경제적 지원’이었고 다음은 ‘의료지원’(4.0)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복지와 보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구호를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VI-6 보건복지부 역할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1	지원	수용자자녀 심리상담	3.44	1.149	3.00	1.188
2		가족 경제적 지원(긴급구호)	4.38	0.697	4.06	1.056
3		의료지원	4.33	0.686	4.00	0.907
4		수급비 지원 외 별도의 위기지원	4.28	0.895	3.67	1.029
5	돌봄	수용자자녀 전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	3.61	1.145	3.28	1.364
6		수용자자녀 대리가정(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3.94	0.998	3.44	1.199
7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지원 :보육, 지역아동센터	3.67	0.970	3.50	0.924
8	교육 및 사회복지 시스템	아동보호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수용자자녀 보호 및 가족 교육	3.83	1.043	3.39	1.145
9		양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3.61	1.037	3.39	1.195
10		사회복지분야 공무원과 담당자 교육	4.11	1.023	3.67	1.188
11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4.11	1.079	3.67	1.237

②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역할에서는 가족관계영역에서 ‘가족상담 지원’(4.18)과 정책구축영역의 수용자 가족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안내 의무화’ (4.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효성에서는 ‘가족상담 지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상담지원에 대해서는 수용자 가족 상담에 대한 적절한 기관설치와 업무배치, 전문가 양성 등이 현실적으로 뒤 따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7 여성가족부 역할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1	경제적 지원	양육자 및 양육환경 지원	3.71	0.849	3.29	0.920
2		경제적 지원	3.29	0.920	3.18	0.951
3	가족관계 프로그램	가족상담 지원	4.18	0.809	4.06	0.966
4		수용자 가족 캠프	3.65	0.862	3.35	0.931
5	정책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수용자자녀 상담 매뉴얼개발 및 상담연계	4.06	0.899	3.71	0.985
6		수용자자녀 및 양육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3.76	1.091	3.53	1.281
7		수용자 가족에게 한부모지원법 안내 의무화	4.18	0.883	3.71	0.920
8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족대책 총괄	3.59	1.004	3.00	0.866

③ 경찰

경찰의 역할 중 부처업무의 적절성에서는 아동보호 영역의 ‘체포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체계에 통보할 것’ (4.67)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체포수칙 영역 중 ‘체포과정 시 아동충격 보호실행 매뉴얼 개발’이 높았다. 실효성에서도 이 두 문항은 같은 점수(4.11)로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전체 정부의 업무 조사에서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나 의견이 비교적 합의되는 양상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체포과정 아동충격 보호를 위한 실행 매뉴얼 개발’은 이미 2011년에 경찰청에서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사업이었는데 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만큼 이제라도 충분히 검토되어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표 VI-8 경찰 역할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1	체포 과정 시 아동충격 보호 실행 매뉴얼 개발	4.61	0.502	4.11	1.132
2	체포수칙 체포수칙에 자녀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직무수칙을 강행규정으로 마련	4.50	0.707	3.67	1.328
3		4.50	0.618	3.83	1.200
4	초기 수사과정에서 수용자자녀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3.94	0.938	3.28	1.127
5	체포 시 미성년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체계에 통보	4.67	0.485	4.11	1.132
6	아동보호 부모의 체포를 목격한 자녀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가 연계	4.17	0.857	3.61	1.335
7		3.89	1.079	3.33	1.138
8	부적절한 양육자, 방치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속히 통보, 특히 어머니가 구속된 경우 신중하게 대응	4.56	0.856	4.00	1.188
9	유치장 수감 시 자녀 면접권 최대한 보장	4.50	0.857	3.89	1.132

④ 법원

법원의 역할에서는 양형 및 수용자 지원 분야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의 양형 고려’ 문항과 교육 및 예방지원에서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자녀문제 인식개선 교육’부분이 가장 높았다. 업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교육 및 예방지원의 심리단계의 ‘가족노출과 인권침해 방지방안 마련’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녀를 둔 수용자의 양형고려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교육 및 예방지원의 두 항목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중요한 항목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VI-9 법원 역할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1	양형 및 수용자 지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 양형고려(어린이 있는 여성의 경우 보호관찰 선고 등)	4.17	0.924	3.28	1.179
2		재판시 피고인자녀 등 긴급지원 필요시 구속집행정지 제도 신설	4.06	0.873	3.17	0.786
3	교육 및 예방지원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자녀문제 인식개선 교육	4.17	0.857	3.44	0.984
4		심리단계에서 가족노출과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	4.11	0.832	3.56	1.097

⑤ 법무부-교정본부

법무부 교정본부의 역할에서는 가족관계 및 면접지원의 ‘아동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마련’이 부처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에서 각각 4.67점, 4.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부처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 모두에서 ‘미성년자녀 있는 가정 접견기회확대 및 가족프로그램에서 자녀참여 적극권장’과 ‘교정공무원들에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개선사업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절한 업무나 실효성 부분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I-10 법무부-교정본부 역할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1	가족관계 및 면접지원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4.11	1.079	3.94	1.211
2		미성년자녀 있는 가정 접견기회 확대(특별면접) 및 가족 프로그램에서 자녀참여 적극 권장	4.50	0.618	4.00	0.840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3	가족관계 및 면접지원	교정본부의 사회복지과에 재소자 가족지원담당관 확보운영	4.11	1.023	3.39	1.037
4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	4.67	0.485	4.33	0.686
5		가족 만남의집을 담 안에 설치하여 수행초기부터 시행	4.33	0.840	3.50	1.150
6		자녀 면접이 용이하도록 변경(토요일 면회 시간 연장 및 구비서류간소화)	4.44	1.042	3.61	1.145
7	정책개발 및 교육	수용자자녀실태 등 통계구축	4.28	0.895	3.72	1.179
8		수용자자녀에게 범죄피해자 기금 지원확대	3.59	1.278	2.71	1.160
9		교정공무원들에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필요	4.50	0.707	4.00	1.029

⑥ 교육부

교육부의 업무로는 교육영역에서 ‘부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사, 교원, 학생 인권 교육 실시’가 부처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각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정책개발에서는 ‘교육부 산하 wee센터 차원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부처 업무의 적절성과 실효성 두 부분에서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표 VI-11 교육부 역할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1	상담	수용자자녀에 대한 상담	3.17	1.150	3.00	1.188
2		사례관리, 가정방문	3.41	1.121	2.88	1.219
3	학생지원	학업지원(멘토링)	3.94	0.998	3.22	1.166
4		학비지원, 급식비 등 경제적 지원-국민기초수급지원 등 국가의 공식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 중심	3.89	0.963	3.24	1.200
5		학교사회복지사 연결	4.06	0.938	3.59	1.064

번호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M	SD	M	SD
6	교육	수용자자녀들의 교육, 정서 대처방안에 대한 교사 교육	4.00	1.029	3.56	1.149
7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으로 관련도서 비치(초등학교 각 교실)	3.50	1.150	2.94	1.392
8		부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사, 교원, 학생 인권교육실시	4.28	0.669	3.67	1.029
9	정책개발	수용자자녀 학생 실태조사	3.72	1.074	2.89	1.231
10		상담교사 가이드북 및 매뉴얼 제작	3.94	0.802	3.50	1.200
11		교육부 산하 위센터(위클래스)차원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개발	4.24	0.664	3.59	0.870
12		부모 수감에 따른 차별, 따돌림,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4.17	0.857	3.44	1.042

지금까지 6개의 부처의 전체 사업내용을 살펴 본 결과 전문가들은 경찰의 업무 중 ‘체포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체계에 통보’ 라는 부분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을 가장 부처 업무의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실효성 부분에서도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시급성과 실효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시급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4.61점인 가족지원 영역의 ‘생계급여나 양육비지원’이었고 다음은 행정영역의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로 나타났다.

실효성에서는 ‘생계급여나 양육비지원’이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교육’이 3.94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은 민원서식에 수용자 가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등 당장 시행해야 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I-12 지방자치단체 역할

번호	내용		시급성		실효성	
			M	SD	M	SD
1	가족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4.00	0.686	3.50	0.707
2		수용자자녀 학업 민 진로지원	3.89	0.832	3.39	0.850
3		생계급여나 양육비지원	4.61	0.502	4.17	0.985
4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 서비스	3.83	0.924	3.78	0.808
5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3.94	0.873	3.78	0.808
6	돌봄	수용자자녀를 위한 그룹홈 운영	3.67	0.970	3.18	1.286
7		부모가 수용된 동안 한시적으로 대리(위탁)가정 지원	3.89	1.023	3.56	1.247
8	행정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예)민원서식에 수용자가족포함	4.24	0.752	3.94	0.659
9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교육	4.12	0.697	3.94	0.899
10	정책 및 실천	지자체별로 수용자자녀환경과 문제점 파악	4.00	0.767	3.39	0.916
11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기관 설치운영	3.22	1.215	2.61	1.037

(3) 민간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 3가지

민간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 3가지를 고르는 문항에서는 1순위로 ‘경제적 지원’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순위에서는 ‘상담 및 사례관리’와 ‘수용자 가족 욕구파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27.8%, 3순위에서는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이 33.3%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가산점 계산을 하여 총점을 확인한 결과 전문가들은 ‘상담 및 사례관리’ 항목이 민간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민간단체 역할

구분	내용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순위)
수용자 자녀 지원	①수감된 부모면접 시 동행 및 가족접견 지원	1(5.6)	1(5.6)		5
	②경제적 지원	6(33.3)			18(2)
	③상담 및 사례관리	3(16.7)	5(27.8)	1(5.6)	20(1)
	④학업 및 수용자자녀 악기, 운동, 취미활동 지원				0
	⑤의복, 체육복, 교복 등 물적 지원, 후원자 연결(성탄, 명절)선물	1(5.6)	1(5.6)		5
	⑥수용자자녀여름캠프 및 힐링여행				
	⑦자녀문제 상담을 위해 수감된 부모 면접	1(5.6)		2(11.1)	5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⑧수용자 가족 욕구파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2(11.1)	5(27.8)	1	17(3)
	⑨수용자자녀 양육자 교육		1(5.6)	1	2
	⑩수용생활 및 가족면접 등 관련된 정보제공			1	1
홍보	⑪옹호활동, 캠페인		1(5.6)		2
	⑫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국민 홍보	2(11.1)	1(5.6)	1	9
이슈제안 및 네트워크	⑬관련지식 및 정보구축, 조사연구	1(5.5)		1	4
	⑭대정부활동, 입법청원		2(11.2)	4(22.2)	8
	⑮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 역할	1(5.5)	1(5.6)	6(33.3)	11

(4)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법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는 적절한 범으로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9개의 법조항을 제시한 후 1-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에서 ‘아동복지법’이 41.2%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도 ‘아동복지법’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3순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18.8%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산점을 주어 분석해본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을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는 적절한 법이라고 평

가하고 있었다.

표 VI-14 수용자자녀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법

법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순위)
①아동복지법	7(41.2)	5(29.4)	1(6.3)	32(1)
②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1(5.9)	1(6.3)	3
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2(11.8)	1(5.9)	2(12.5)	10
④긴급복지지원법	3(17.6)	4(23.5)		17(2)
⑤건강가정기본법	1(5.9)	1(5.9)	3(18.8)	8
⑥한부모가족지원법	2(11.8)	2(11.8)	2(12.5)	12(3)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2(12.5)	2
⑧청소년복지지원법	1(5.9)	1(5.9)	3(18.8)	8
⑨별도의 법 제정 (예: 특수취약계층아동 지원에 관한 법률)	1(5.9)	2(11.8)	2(12.5)	7

(5) 수용자자녀 지원 담당에 적합한 주무부처

수용자자녀지원에 적합한 주무부처로는 1순위에서 ‘보건복지부’가 55.6%, 2순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47.1%로 가장 높았고 3순위에서는 ‘법무부’가 37.5%로 나타났다. 가산점을 주어 분석해본 결과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를 수용자자녀지원에 가장 적합한 주무부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I-15 수용자자녀지원 담당에 적합한 주무부처

법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순위)
①여성가족부	4(22.2)	8(47.1)	3(18.8)	31(2)
②보건복지부	10(55.6)	4(23.5)	4(25.0)	42(1)
③법무부	3(16.7)	5(29.4)	6(37.5)	25(3)
④별도의 기구	1(5.6)		3(18.8)	6

(6) 수용자자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1차 조사에서 수용자자녀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1-3순위 순서로 정리하여 가산점 계산 후 총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순위는 생계지원, 2순위는 체포 시 충격완화, 3순위는 수용자자녀 차별금지로 나타났다.

1순위	생계 지원	2순위	부모 체포 시 충격완화	3순위	수용자자녀 차별금지
------------	-------	------------	--------------	------------	------------

3. 소결

본 조사는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정책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전문가의견을 취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델파이 기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교정, 법률, 공공, 사회복지, 학계 관련 전문가 18명에게 1, 2차 두 번에 걸쳐 이메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요약한 후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부의 역할

6개 분야 정부의 역할에서는 해당부처의 소관업무로서의 업무 적절성과 성과창출기대 가능성인 실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VI-16 부처별 업무 적절성과 실효성 응답

부처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보건복지부	-가족 경제적 지원(긴급구호)	-가족 경제적 지원(긴급구호)
여성가족부	-가족상담 지원 -수용자 가족에게 한부모지원법 안내 의무화	-가족상담 지원

부처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경찰	-체포 시 미성년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체계에 통보	-체포 시 미성년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체계에 통보 -체포 과정 시 아동충격 보호실행 매뉴얼 개발
법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의 양형고려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자녀문제 인식개선 교육	-심리단계에서 가족노출과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
법무부 교정본부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마련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마련
교육부	-부모로 인한 피해 없도록 교사, 교원,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부모로 인한 피해 없도록 교사, 교원,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부처의 전체업무 중 가장 평균이 높은 점수를 차지한 부분은 경찰의 ‘체포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보호체계에 통보’ 라는 부분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이었다. 이 두 사업이 부처업무의 가장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시급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나 양육비 마련’을 꼽았다. 민간단체의 역할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례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에서 전문가들은 수용자자녀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법제도는 ‘아동복지법’으로 주무부처로는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가장 시급하게 해결·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 ‘체포 시 충격완화’, ‘수용자자녀 차별금지’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각 영역별로 제시된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

첫째, 보호자 없이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연계방안 및 발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체포 시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정신문이나 체포 시 미성년 자녀와 양육자 등을 조사하여 아동보호 체계에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남겨진 아동 배치에 대한 공적개입 및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양육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모 수용으로 인한 위기 가정에 대해 긴급구호 및 수용자자녀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 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심리·정서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자녀를 포함한 양육자 상담 및 사례관리 등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모 체포 시 자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찰 체포 수칙과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개발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자녀가 부모를 면접할 때 받을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정기관에서는 아동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을 마련하고 가족지원을 위한 접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공적체계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여론조성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 관계 담당자와 학교 등에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상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자녀를 지원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선정되어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나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VII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검토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1. 조사개요

이 절에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과 국외 법제도 현황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수용자자녀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용자자녀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을 확인하였다. 현행 법령상 수용자와 가족, 자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용의 단계에 따라 법제에서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를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분석을 토대로 수용자자녀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사항(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 등)을 설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현행법상의 근거를 확인해 보았다. 이는 대체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행해졌다.

다음으로, 해외에서는 수용자자녀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에서 수용자 인구를 많이 차지하면서도 수용자자녀를 위한 국내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순으로 조사, 분석하였다.¹³⁾ 해외 사례는 각 국가 별 법무부, 아동복지(권리/보호)부 등 수용자자녀(가족)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및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웹사이트와 웹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인권규범을 분석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1. 9. 30.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하여 협약 당사국에게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책과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권고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개 국가의 국가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였다. 국가별 권고사항과 이행상황은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웹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국가별 정부 및 NGO보고서, 권고사항을 분석하여 조사하였다.¹⁴⁾

13) World Prison Brief가 제공하는 인구 100,000명 당 수용자 인구를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미국이 666명, 호주가 169명, 영국이 146명, 중국이 118명, 캐나다가 114명, 대한민국이 11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http://www.prisonstudies.org/>).

14) “Treaty Body Search”,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s for Human Rights,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 2017. 10. 28. 확인.

2. 조사결과

1) 국내 법제도 현황 검토

(1) 개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은 수용자의 자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수용자자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은 분명하다. 심신상실자, 수형자 등을 포함하여 아동 또한 기본권을 향유할 능력이 있다(권영성, 2007:313). 헌법재판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극장시설금지에 대하여 아동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실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등; 18세 미만자의 당구장 출입금지표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결정)].

수용자자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전문 전단), 인격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을 가진다. 국가의 모성보호 규정(제36조 제2항)은 임신부 수용자와 영유아기 아동의 보호와 직접 연결된다. 헌법은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34조 제4항). 수용자자녀 또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아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미결수용자의 가족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이 미결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가족이 그 수용된 가족을 찾아 만나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리이고 또 마땅한 도리이므로 이러한 만남을 추구하는 가족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형성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의 한 발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수용자자녀가 수용된 가족(부모)을 찾아 만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수용자자녀에 관한 법제도에는 부모를 만날 권리와 같은 인권의 측면과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한 복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국내 관련법제도 현황’ 항목에서는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수용자 가족과 자녀의 권리(인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뒤, 수용자자녀(가족)가 대상이 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에 관한 법령 위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법령상 수용자와 가족, 자녀에 관한 내용

① 수용자의 개념

현재 수용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이 형집행법에는 “수용자”를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형집행법을 준용한다(동법 제87조). 따라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은 형집행법상의 “수용자”는 아니다. 수용자의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을 고려할 때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을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경우에 형집행법상의 “수용자”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해양경

찰서의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②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현행 법령

가. 교정시설 내 출산 및 아동양육

현행법은 임신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울 포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및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2조).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자녀를 교도소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면, 소장은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허가하여야 하고, 양육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3조). 교정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유로는 “(i)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ii)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iii)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라고 밝히고 있다.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9조).

교정시설에서는 오로지 ‘여성’이 ‘자신이 출산한 자녀’에 한해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양육을 원하는 남성 수용자 또는 수감 전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던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양육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성별 내지 모가 친생모인지에 따라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18개월이라는 양육을 허용하는 기간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용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원으로는 육아거실을 운영하거나 의사의 의견을 들어 부식 내지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하는 정도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에게는 식품(영양)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놀이터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부모와 생활하는 수용자자녀에게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등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나. 아동배치 결정

소장은 (i)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출생 후 18개월이 지나거나, (iii) 유아 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 또는 (iv) 교정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형집행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시행령 제80조). 다만,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아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아동을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교정시설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 및 남겨진 아동의 배치에 관한 결정이 소장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지만 소장이 생각하기에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요청하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대안적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동’에 관한 결정을 ‘교정시설’을 관장하는 소장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복지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현행 아동보호조치 체계와도 단절되어 있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아동의 거처나 양육자 변경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아동 접견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제50조 제4항).

접견과 관련해서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는 수용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아동의 접견권은 수용된 부모가 부이든 모이든 관계없이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부모와 정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③ 수용자 가족에 관련된 현행 법령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수용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다(제21조).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다(제37조 제3항). 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해야 하고(제127조),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제128조).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가족에 대해 규정한 것은 수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사실에 대한 통지와 수용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수용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규정도 섬세하지 않다.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직계비속에게 각종 통지를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④ 수용자자녀를 정의할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상 수용자 가족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고, 가족에 관한 규정은 오직 수용자를 관리하고 수용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통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법령에서 수용자자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 법령이 반드시 형집행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체포, 구속, 재판, 형집행 관련 법제와 수용자 가족

① 수용 개시의 절차 개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집행법에는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 수용된 사람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수용이 개시되는 단계는 (1)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 (2) 징역, 금고, 구류형, 노역장 유치명령의 집행, (3) 사형이 확정되어 수용되는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

해 볼 수 있다.

가. 체포

체포는 수사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체포는 비교적 단시간이지만 (48시간 한도) 이후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구속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심문을 위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각각 10일이다(제202조, 제203조). 다만, 검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국가보안법 제19조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의 한도를 넓혀서 지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10일간의 구속기간을 1차 연장허가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결국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20일, 검사에 의하여 30일 합계 50일을 구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소 후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제92조 제1항).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제92조 제2항).

다. 징역, 금고, 구류, 노역장 유치명령의 집행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는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라. 사형

형집행법에 따라 사형이 확정된 자는 수용한다.

② 규정 현황

피의자의 체포, 구속 등 인신구속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이 정하고 있고 각급 기관별로 규칙과 예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관련 규정 어디에도 인신구속 시에 대상자의 가족이나 자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나 추상적인 차원에서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은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

- 인신구속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재판예규 제1410-8호]
-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재판예규 제1180호]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61호]
-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대검찰청예규 제814호]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18호]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31조(영장의 집행) ① 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나이·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37조(현행범인의 체포) ③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여야 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제774호]

제95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그 시간·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제775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의경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힘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3조(체포·구속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체포 현장에 피체포자의 자녀인 아동이 있는 경우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판결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할만한 사례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11.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결정례가 있다. 법원 집행관의 민사집행 서류의 송달과 집행절차가 만 10세, 만 8세인 아동들만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점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 및 제5조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이다(2016. 11. 17.자 결정 16진정0039100, ‘민사집행과정의 아동보호지침 마련 관련 정책권고’ 참조).

③ 재판 단계에서의 수용자자녀 고려 여부

현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인자 중에 피의자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수용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조사관은 피고인의 어린 자녀나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의 상세한 현황, 피고인 이외의 다른 부양자의 존부, 피고인의 수용으로 부양가족이 받을 생활상 곤란의 정도, 생활비의 충당이나 생계유지의 대체 수단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된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할 때에는 의견서 양식(전산양식B2100)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이 양식에는 “이 의견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가족사항(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가족의 주거사항, 수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부수적 불이익을 찾아볼 수 있는 형벌감수성에 대한 개념분석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의견서나 법원조사관의 면담조사결과에 의존하여 그 유무와 유형을 사건별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결국 수용자자녀에 관한 양형사항은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 수용자자녀를 양형판단에 고려한 판례가 있다.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피고인에

1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9쪽

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430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의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의무와 모성보호를 명시한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권리협약[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제3조),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제9조), 국가의 아동권리실현의무(제4조)]등을 언급하면서,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피고인의 딸이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④ 문제점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기타 규정에는 모두 체포나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보고 있는 현장에서 체포나 구속을 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의 법집행에 관한 인권 기준이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 중에 체포나 구속이라는 법집행 현장에서 발견되는 수용자의 자녀(특히 아동)를 어떤 원칙에 따라 대우할 것인지에 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용이 개시되는 각 단계에서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보호자의 수용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와 연결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나아가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가 수사 상황이나 재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별도의 절차도 존재하지 않으며 양형위원회가 만드는 양형기준에는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요청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4) 국내의 수용자 가족 지원·복지 관련 법제 현황

① 별도의 지원 근거 법률 부재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가족 지원 정책 현황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수용자의 사회복귀’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교정시설이 연계하여 수용자를 위한 가족상담, 가족교육 및 캠프 등 프로그램 제공
- 수용자가족 지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기타
		내방상담	교정시설 내 상담			
2012	2,825	3	246	440	2,112	24
2013	5,079	390	814	1,607	1,748	520
2014	6,589	-	1,230	1,773	2,642	944
2015	14,311	-	2,037	3,114	7,944	1,216
2016	13,321	-	970	3,097	7,760	1,494

* 기타 : 수형자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수형자가족 자녀교육, 수형자 인성교육 등

[법무부]

- 2011년~2016년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실적

(단위: 명, %)

단위(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족사랑캠프 (가족포함)	58	825	1,844	2,071	2,827	3,719
가족접견실 이용 (가족포함)	30	135	740	1,372	1,709	3,603
가족만남의 날 이용	11,566	11,681	11,578	11,855	12,670	14,338
가족만남의 집 이용	1,120	1,177	1,261	1,338	1,390	1,435
서울대 멘토링 참여 자녀	27	41	28	17	24	4

- ※ 부모의 갑작스런 구금으로 부모의 돌봄에서 격리될 수 있는 수용자의 자녀 등을 위해 형기에 관계없이 가족접견을 제공하는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서비스'를 '16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0월에 전면 시행
(주요 내용 : 긴급 전화 사용, 가족접견 이용, 전문가 상담 주선 등)
- ※ 가족접견실은 연도별 예산 편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기관별 구축 작업을 진행중이며 '16년 말 현재 전체 52개 교정시설 중 18개 기관에 완비하였으며 '17년에는 6~7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
- ※ 법무부 직급 급여로 조성된 천사 공익신탁기금을 통한 불우수용자자녀 등 지원
 - 2016년 5월 : 수용자자녀 학자금 등 총 2천만원 지원(26가족)
 - 2017년 5월 : 불우다문화가족 등 긴급생계비 총 2천만원 지원 예정(20가족)
- ※ 교정관련 민간 법인 등과 연계하여 불우수용자자녀 장학지원 사업 등 적극 전개
 - (재)같이함께, (사)기독교세진회, (사)세움, (사)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등
- ※ 수용자 가족지원센터 설치 관련
 - '11년 업무협약 체결 당시, 가족지원안내센터를 교정시설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물리적 공간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하지 못함 (민간 법인 사회 내 설치 사업 추진 중)

③ 지원·복지 관련 법제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를 직접 지원하는 취지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용자 가족이 특정한 문제(예를 들어 가장의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발생)에 부딪혔을 때 대상이 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반 법령이 있는지 일반적인 복지에 관한 법령을 위주로 살펴본다.

가. 아동복지법

가) 개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법 제3조 제1호). 법 제2조 제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다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법 제3조 제4호),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동조 제5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자녀인 아동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아동정책계획 및 부처 간 협력

동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금까지는 위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인 아동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향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수용자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동법에 따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지원은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실시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정

책조정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11조). 그러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부모 수용 후 남겨진 아동에 대한 항목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수용자자녀가 보호대상아동이 될 때에는 이러한 보호조치의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라) 취약 가정 통합서비스

동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이다.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시행령 제37조). 이러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지원 대상 가정에 수용자자녀가 있는 가정이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한 분야로 수용자자녀가 겪는 제반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아동복지시설

동법에 따라 설치되는 아동복지시설로는 중앙/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지역가정 위탁지원센터가 있다. 그 밖의 아동복지시설로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상담소, (7) 아동전용시설, (8)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현재 수용자자녀들도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별도로 관리되거나 분류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인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우선 아동복지법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졌고,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한부모가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호 다목).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이다(제4조 제5호).

또한 이 법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제5조의2

제2항),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이고(제12조 제1항)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제12조).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한다(시행규칙 제4조).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조사 시에 부모 중 한 명의 수용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는 없지만, 일부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교정시설과 연계하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위한 가족상담, 가족교육 및 가족사랑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⁶⁾

16)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otheragency/otheragency2.do>, 2017. 10. 29. 확인.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각종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이다(제7조 제1항).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행한다.

동법상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8조의2 제2항 제3호). 따라서 수용자자녀는 1촌인 부나 모가 수용 중인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마. 긴급복지지원법

동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원의 사유가 되는 “위기상황”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포함시키고 있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원대상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법 제9조).

동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복지위원, 공무원 등에 대해 임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7조). 수사기관과 교정시설의 공무원도 위 공무원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가족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프로세스가 작동하려면 수용 과정에서 수용자 가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법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동법의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법 제13, 14조).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와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법 제15조). 만약 수용자의 자녀가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동법에 따른 지원이 행해져야 한다.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한다(동법 제9조). 동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동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청소년복지시설로는 (1) 청소년쉼터, (2) 청소년자립지원관,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있다.

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개념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동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에게 적용된다. 동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복지·교육·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법 제4조).

아. 초·중등교육법

동법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그 밖에 가구 소득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

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60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법 제60조의4 제3항).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은 금융자산,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부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되고 대신 조부모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법 제60조의5, 시행령 제104조의4 제2항 제2호).

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동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를 별도의 지원대상자로 보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동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정보, 학교생활기록 정보 중 담당교원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국민건강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의 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일정한 기준의 연체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¹⁷⁾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보에 '경찰서의 장이 범죄피해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는 포함되는데, 피의자(수용자)의 가족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

17)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4.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의 장이 범죄피해자 중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람의 가구정보에 관한 언급은 없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의자(수용자)의 가족 중 위 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료 또는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복지관 등의 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2조).

④ 소결

이상과 같이 관련 법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법제도가 갖는 한계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지원대상자의 발굴

수용자의 자녀를 어떻게 발굴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나 법령이 전무하다. 상당수의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수용자의 뜻과 무관하게 수용자의 자녀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의 자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굴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둘째, 지원욕구의 다양성 포착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용자나 가족,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다. 수용자의 가족이 겪는 여러 문제는 수용자가 저지른 형사상 범죄와 구분될 수 없기에 일반적인 경제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존재하는 여러 복지제도나 기관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수용자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수용자의 자녀는 보호자의 수용, 재판이라는 복잡한 법적 과정을 겪으면서 심리적·정서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쉽다. 동시에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용자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욕구의 다양성을 세심하게 포착해야 한다.

셋째, 법제도와 정책의 근본적 검토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식이 고양되어

가고 있지만 수용자의 자녀로서 겪는 여러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하려는 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도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운용상의 보완이나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다각적 차원에서의 어려운 고민과 과제가 펼쳐져 있다.

넷째, 다양한 기관의 연계와 협력 필요성

다양한 배경과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수용자자녀를 둘러싼 이슈를 하나의 법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관련된 여러 법령과 소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체포나 구속의 집행 단계, 재판 및 형집행 단계에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법무부와 사법부,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항이나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소관사항일 수 있다. 다양한 기관의 연계와 협력이 없으면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우려도 있다.

2) 국외 법제도 현황 검토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1) 미국

① 수용자자녀 현황과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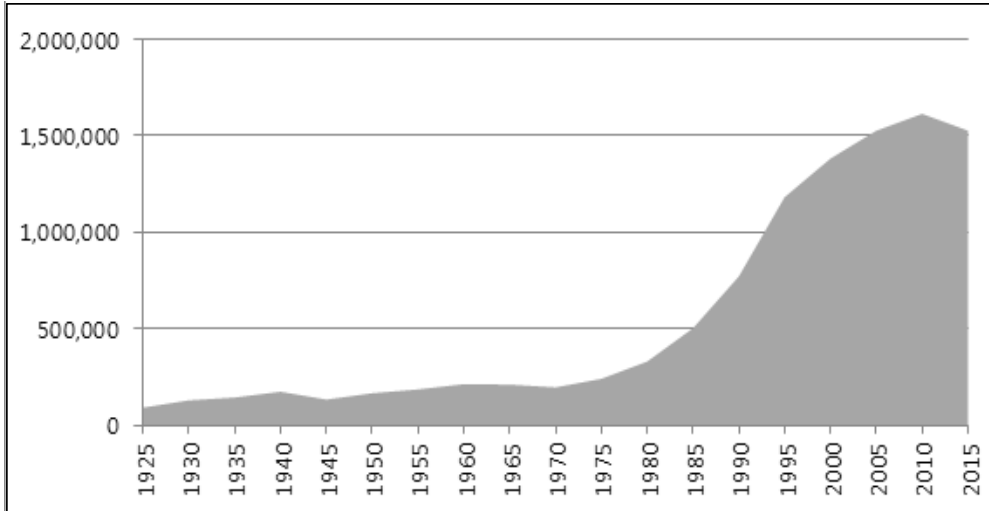
가. 미국의 수용자 및 그 자녀 현황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나라이다. 미국 법무부(U. 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사법정책실 산하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이하 ‘사법통계국’)에서 1980년부터 매 해 수감자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법통계국 사이트에서는 1925년부터 현재까지의 수용자 통계를 제공한다.¹⁸⁾ 미국 내 수용 인구는 1925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40년 간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Publications & Products: Prisoner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s://www.bjs.gov/index.cfm?ty=pbse&sid=40>, 2017. 10. 28. 확인.

그림VII-1

미국 내 교도소 수용자 인구, 1925-201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risoners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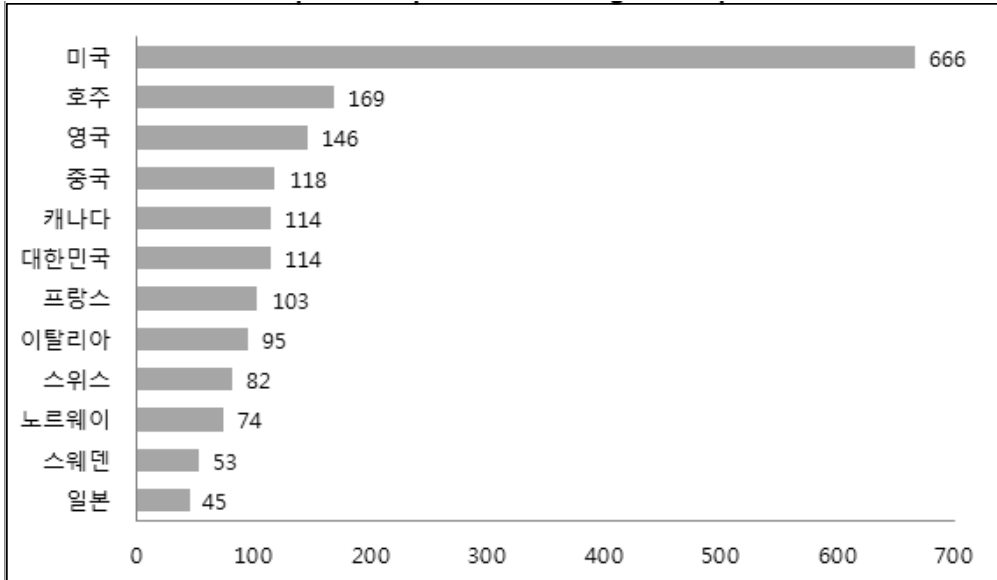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5년 미국 내 교도소 수감자 인구는 1,526,792명에 달한다. 미국 인구 100,000명 중 666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용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높은 편이다. 전 세계의 교도소에 관한 정보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World Prison Brief 웹사이트에서는 국가별 담당 정부기관, 수용 인구, 수용률, 여성 수용률, 미성년자 수용률, 외국인 수용률 등 여러 통계를 접할 수 있다.¹⁹⁾ 이 웹사이트에서 찾은 주요 국가별 인구 100,000명 당 수용자 인구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VII-2>과 같다.

19) World Prison Brief, <http://www.prisonstudies.org/>, 2017. 10. 28. 확인.

그림VII-2

주요 국가별 인구 10만명 당 수용자 인구

World Prison Brief. London: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Research



※ <http://www.prisonstudies.org/world-prison-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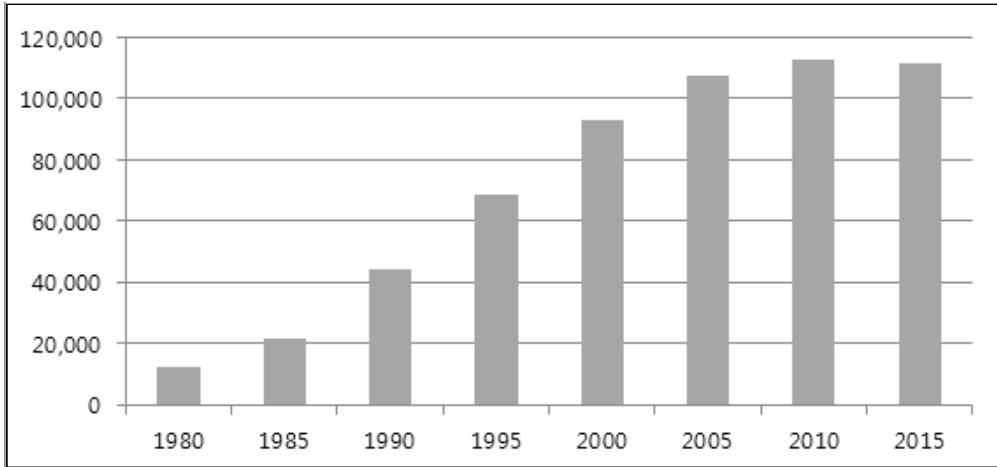
특히 미국 내 여성 수용자는 1980년에는 12,331명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111,495명에 달해 수용 인구가 무려 9배 늘었다. 이는 남성 수용자의 증가세에 비해 2배 높은 증가세이다.²⁰⁾ 여성 수용자의 인구 자체는 남성 수용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주 양육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재는 가족의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친다.²¹⁾

20)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수용자는 303,643명에서 1,415,297명이 되어 4.7배 늘었다.

21) The Sentencing Project, "FACT SHEET: Trends in U. S. Corrections", 2016, p.4.; David Murphey and P. Mae Cooper, "Parents Behind Bars - What Happens to Their Children?", Child Trends, 2015. 10, p.2.

그림VII-3

미국 내 여성 수용자 수, 1980-201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risoners Series



나. 수용자자녀 지원 현황

미국 내 수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에 수용자자녀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법통계국은 수용자에 관한 통계와는 별도로 간헐적으로 수용자자녀에 관한 자료를 발표해 왔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8년 발표된 것으로서 1991년, 1997년, 1999년, 2004년, 2007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15년간의 경향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²²⁾ 사법통계국 2008년 자료에서는 미국 내 수용자자녀를 170만 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자녀수를 집계한 수치였다. 한 시민단체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수용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아동이 미국 내 약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아동 중 7%(14명 중 1명)는 함께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다녀온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흑인, 빈곤층, 지방에 거주하는 아동에게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500만 명이란 수치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수용된 경우의 아동은 집계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 '수용자자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²³⁾

이처럼 미국 내에는 수용자와 그 자녀의 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용자 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물론이고, 수용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22) Lauren E. Glaze and Laura M. Marunshak,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2010. 3. Revised.

23) David Murphey and P. Mae Cooper, 2015. 10, p.1.

운영되고 있다.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은 정부, 민간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② 관련 정책의 원칙 및 기본적인 내용

가. 대통령 및 정부 정책

2001년 임기를 시작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2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였다. 대통령은 정부가 사회복지에 예산을 들이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10년 간 7억 달러를 사용하여 1억 명 이상의 위기 아동들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²⁴⁾ 여기서 언급된 위기 아동은 수용자자녀, 문맹 청소년, 십대 미혼모, 약물 중독자 등이었다. 이후에도 부시 대통령은 수차례 수용자자녀 지원을 연설에서 언급한다. 다음 해인 200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수용자자녀를 위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²⁵⁾ 부시 대통령은 2003년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수용자자녀 멘토링을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²⁶⁾ 2004년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수용자자녀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출소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4년 간 3억 달러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기초 아래, 정부는 가족의 안전과 안정 촉진 2001년 개정법(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Amendments)의 일환으로 수용자자녀 멘토링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06년 수용자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녀와 가족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

24) George W. Bush,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on Administration Goals", 2001.

Our budget provides more than \$700 m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for a federal compassion capital fund, with a focused and noble mission, to provide a mentor to the more than 100 million children with a parent in prison, and to support other local efforts to fight illiteracy, teen pregnancy, drug addiction and other difficult problems.

25) George W. Bush, "2002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2.

Our country also needs citizens working to rebuild our communities. We need mentors to love children, especially children whose parents are in prison. And we need more talented teachers in troubled schools. USA Freedom Corps will expand and improve the good efforts of AmeriCorps and Senior Corps to recruit more than 200,000 new volunteers.

26) George W. Bush, "2003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3.

I propose a \$450-million initiative to bring mentors to more than a million disadvantaged junior high students and children of prisoners. Government will support the training and recruiting of mentors; yet it is the men and women of America who will fill the need. One mentor, one person can change a life forever. And I urge you to be that one person.

27) George W. Bush, "2004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4.

를(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2006)에 의하여 명문화하고, 소관 사무를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 위임하였다. 위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걸쳐 수용자자녀 지원을 크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는 2012년 수용자자녀에 관한 활동을 하는 실무그룹을 소집하여 연방 프로그램과 정책을 평가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위 실무그룹이 미국 내 유명 프로그램인 Sesame Street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용자자녀와 가족에 대한 활동을 하는 11명의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으며,²⁸⁾ 웹페이지를 비롯한 수용자자녀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20개의 연방 기관의 대표들이 협력하여 만든 youth.gov라는 웹페이지에서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⁹⁾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수용자자녀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하위 항목은 트라우마, 폭력 노출, 약물 오남용, 복지, 서비스 및 지원, 가이드 및 자원 등이다.

나. 법무부 사법제도실의 예산 책정

2007년 제정된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of 2007)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DOJ 산하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 이하 “OJP”)에서는 총 4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두 번째 기회법 관련 정책에 집행해 왔다. 이 예산은 재사회화를 위해 쓰였고, 여기에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기회법 예산은 매 해 늘어 2015년과 2016년에는 6천 8백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OJP가 의회에 제안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기존 예산에 3천 2백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총 예산이 10억 달러에 이른다.³⁰⁾ 이 중 부모를 체포할 때의 수칙 마련과 관련된 예산이 125만 달러, 수용자자녀 지원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500만 달러 책정되었다. 특히 체포 수칙과 관련한 예산은 2017년에 처음 책정된 것으로, 주나 지역사회의 경찰관이 수용자자녀와 가족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수칙을 통해 경찰관은 체포되는 자의 자녀를 책임감

28) “Champions of Change: Champions For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champions/champions-for-the-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2017. 10. 28. 확인.

29)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youth.gov, <https://youth.gov/youth-topic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2017. 10. 28. 확인.

30) U.S. Department of Justice, “FY 2017 Budget Request”, 2016, p.9.

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자녀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체포되는 자의 가족들은 경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트라우마를 줄이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³¹⁾

또한 OJP는 앞서 언급한 youth.gov 웹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5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하였다. OJP는 수용자자녀 현황을 언급하며 부모의 수용이 자녀의 생계와 학교 문제,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수용자자녀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서술하고 있다.³²⁾

다. 사법통계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국은 수용자자녀와 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사법통계국의 자료가 대표적이다. 사법통계국에서 수감자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인데, 해당 사이트에서는 1925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와 별도로 수용자자녀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해 왔는데,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2008년 발표되었다.

③ 관련 법령의 내용

미국 법무부차관은 2013. 6. 12. 백악관에서 IAC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가 DOJ의 지원을 받아 프로토콜을 제작하고, 부모가 체포될 당시 그 자녀를 신체적 감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³³⁾ 그러나 많은 법 집행당국은 실제로 아동의 트라우마를 방지할 정책, 절차, 훈련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법 집행 당국의 2/3는 부모를 체포할 경우 그 자녀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을 명문화한 정책이 없고, 아동 복지 당국의 1/2은 체포되는 자녀의 트라우마를 방지할 명문화된 프로토콜이 없다.³⁴⁾ 다만, 법은 부모의 수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집행되고 있을 뿐이다.³⁵⁾

31)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FY 2017 PERFORMANCE BUDGET", 2016, p.110.

32)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FY 2017 PERFORMANCE BUDGET", 2016, p.125.

3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U. S. Department of Justice, 2014, p.xi.

3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2014, p.1.

35)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2014, p.2.

가.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샌프란시스코 수용자자녀 파트너십(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이하 “SFPIP”)은 수용자자녀와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복지사, 정부 관계자 등이 모인 단체이다. 부모의 수용이 수용자자녀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끝에, SFPIP는 아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연구진은 30명의 수용자자녀와 심층 면접을 한 뒤에 권리장전 초안을 작성하였다. 2003년에 발표된 이 권리장전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³⁶⁾

수용자자녀 권리장전은 총 8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체포 수칙을 계발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이 놀라지 않도록 사이렌과 경광등의 사용을 피한다.
 - 체포되는 자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없는 곳에서 수갑을 채운다.
 - 체포되는 자가 위협조적인 경우, 다른 경찰관이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
 - 아동과 그 양육자에게 체포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 체포된 자가 어디에 있는지,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등을 알린다.
2. 나는 나에 관한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수용자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관의 직원을 양성한다.
 - 진실을 이야기한다.
 - 귀 기울여 듣는다.
3. 나는 나의 부모에 관한 결정에 있어 나의 존재가 고려될 권리가 있다.
 - 자녀와 가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검토한다.
 - 부모의 체포가 가족 보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판결 전 조사 보고서(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s)에 가정에 미치는

36) 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Bill of Rights”, 2005 revised.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4. 나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양육자를 지원함으로써 수용자자녀를 지원한다.
 - 후견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5. 나는 부모와 대화하고,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다.
 - 아동 친화적이고, 부모-자녀간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접견 환경을 마련한다.
 - 수용자를 교도소에 배치할 때 가족이나 자녀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 보건복지부는 부모-자녀 간 연락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6. 나는 부모의 수용을 겪으면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수용자자녀 문제를 다루는 직원이 수용자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수용자자녀 문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심리치료사, 상담원, 멘토 등을 제공한다.
 - 연방/주 교정 예산의 5%를 수용자 가족 지원에 배정한다.
7. 나는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심판·비난·낙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같은 상황에 처한 수용자자녀들이 서로 교류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부모가 수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한다.
8. 나는 부모와 평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ASFA의 개정을 검토한다.³⁷⁾
 - 구치소와 교도소에 가족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 수용자의 사회 재통합을 지원한다.
 - 재활과 (수용)대안책에 초점을 맞춘다.

37) 이하에 후술된 ‘자녀가 15개월 이상 위탁 양육된 경우 양육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의 ASFA 조항을 의미한다.

나.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of 2007)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of 2007: 이하 “SCA”)은 출소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이다. SCA는 I. 범죄통제 및 안전한 거리에 관한 법에 관한 수정³⁸⁾, II. 약물중독 치료 및 멘토링 보조금 프로그램³⁹⁾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약물중독 치료 및 멘토링 보조금 프로그램의 세부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C편 2장 243절이다.

<p>Title II—ENHANCED DRUG TREATMENT AND MENTORING GRANT PROGRAMS</p> <p>Subtitle A—Drug Treatment</p> <p>Subtitle B—Mentoring</p> <p>Subtitle C—Administration of Justice Reforms</p> <p>Chapter 1—Improving Federal Offender Reentry</p> <p>Sec. 231. Federal prisoner reentry initiative.</p> <p>Sec. 232. Bureau of prisons policy on restraining of female prisoners.</p> <p>Chapter 2—Reentry Research</p> <p>Sec. 241. Offender reentry research.</p> <p>Sec. 242. Grants to study parole or post-incarceration supervision violations and revocations.</p> <p><u>Sec. 243. Addressing the need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u></p> <p>Sec. 244. Study of effectiveness of depot naltrexone for heroin addiction.</p> <p>Sec. 245.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for research.</p> <p>Chapter 3—Correctional Reforms to Existing Law</p>	<p>II. 약물중독 치료 및 멘토링 보조금 프로그램</p> <p>A편—약물중독 치료</p> <p>B편—멘토링</p> <p>C편—사법 개혁 행정</p> <p>1장—연방 범죄자 재사회화</p> <p>231절. 연방 범죄자 재사회화 보조금</p> <p>232절. 교도소 여성 수감자의 구금에 관한 부서</p> <p>2장—재사회화 연구</p> <p>241절. 연방 범죄자 재사회화 연구</p> <p>242절. 가석방 및 보호관찰 연구에 관한 보조금</p> <p>243절. 수용자자녀의 요구 해결</p> <p>244절. 헤로인 중독 치료를 위한 나트렉손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p> <p>245절. 연구 예산 배정</p> <p>3장—현행법에 대한 개정</p>
--	--

SCA는 수용자자녀 수의 증가를 언급하면서[3절 목적 (b)(6)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38) Title I—AMENDMENTS RELATED TO 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39) Title II—ENHANCED DRUG TREATMENT AND MENTORING GRANT PROGRAMS

위하여 건강한 가정 및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101절 (a)(4)(A)조].⁴⁰⁾ 또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교도소 기반의 가족 치료 프로그램 개발·실행·확대,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정보 구축 등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SCA는 DOJ 산하 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이하 “NIJ”)의 책무와 관련,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 미성년 자녀의 비행·일탈 가능성 등을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1절 (a)(1)조].⁴¹⁾ 미 법무부장은 수용자자녀를 위한 모범 프로그램을 개발할 책임을 지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정국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자녀의 복리후생에 적합한 방법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책, 절차,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수용 기간 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출소 후 자녀의 장래와 복지를 위한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43절 (a)조].⁴²⁾ 법무부장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이를 1년 내에 공표한다[243절 (b)조].

40) Sec 101. Reauthorization of adult and juvenile offender State and local reentry demonstration projects

(a) Adult and juvenile offender demonstration projects authorized

(4) providing programs that—

(A) encourage offenders to develop safe, healthy, and responsible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41) Sec 241. Offender reentry research

(a)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may conduct research on juvenile and adult offender reentry, including—

(1) a study identifying the number and characteristics of minor children who have had a parent incarcerated, and the likelihood of such minor children becoming adversely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me time in their lifetime;

42) Sec 243. Addressing the need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Best practices

(1) In general

From amounts made available to carry out this section, the Attorney General may collect data and develop best practices of State corrections department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relating to th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such State departments and agencies to ensure the safety and support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including those in foster care and kinship care), and the suppor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between incarcerated (and formerly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as appropriate 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children.

(2) Contents

The best practices developed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policies, procedures, and programs that may be used by States to address—

(A) maintenance of the parent-child bond during incarceration;

(B) parental self-improvement; and

(C) parental involvement in planning for the future and well-being of their children.

다. 입양 및 안전한 가정을 위한 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7년에 승인하여 의회를 통과한 입양 및 안전한 가정을 위한 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이하 “ASFA”)은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복지 체계 내에서 위기 아동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위탁 양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⁴³⁾ 이 법으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권 박탈을 가능해졌고, 입양이 보다 쉬워졌다.

미국 내에서는 부모가 수용된 경우에도 동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ASFA는 자녀가 최근 22개월 중 15개월 이상 위탁 양육되었다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42 U.S. Code § 675 (5)(E)].⁴⁴⁾ ASFA를 제정할 때에는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박탈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주 교도소 내 평균 수감 기간은 7년, 연방 교도소 내 평균 수감 기간은 9년으로 평균적인 징역형이 ASFA에서 정한 15개월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ASFA를 그대로 적용하면 수용자는 양육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⁴⁵⁾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교도소 내 수감

43)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CW360° : a comprehensive look at a prevalent child welfare issue -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Child Welfare, 2008, p.10.

44) 42 U.S. Code § 675 - Definitions

As used in this part or part B of this subchapter:

(5) The term “case review system” means a procedure for assuring that—

(E) in the case of a child who has been in foster care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for 15 of the most recent 22 months, or, i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has determined a child to be an abandoned infant (as defined under State law) or has made a determination that the parent has committed murder of another child of the parent, committed voluntary manslaughter of another child of the parent, aided or abetted, attempted, conspired, or solicited to commit such a murder or such a voluntary manslaughter, or committed a felony assault that has resulted in serious bodily injury to the child or to another child of the parent, the State shall file a petition to terminate the parental rights of the child’s parents (or, if such a petition has been filed by another party, seek to be joined as a party to the petition), and, concurrently, to identify, recruit, process, and approve a qualified family for an adoption, unless—

(i) at the option of the State, the child is being cared for by a relative;

(ii) a State agency has documented in the case plan (which shall be available for court review) a compelling reason for determining that filing such a petition would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or

(iii) the State has not provided to the family of the child, consistent with the time period in the State case plan, such services as the State deems necessary for the safe return of the child to the child’s home, if reasonable efforts of the type described in section 671(a)(15)(B)(ii) of this title are required to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hild;

45) Sarah Schirmer, Ashley Nelis, and Marc Mauer,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Sentencing Project, 2009, p.9.

자 81%는 수용 기간이 2년 이상, 58%는 4년 이상이고, 연방 교도소 내 수감자는 그 수치가 각각 92%, 77%에 이른다.⁴⁶⁾

ASFA는 양육권 박탈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① 아이를 친인척이 양육하고 있을 때, ② 주정부 기관이 양육권 박탈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때, ③ 주정부가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5개월 이상 수용된 수용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한다. ① 사회복지사가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회복지사가 부모에게 가정재통합 지원을 하였으나 부모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③ 부모가 그 자녀를 살인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법원에서 판단된 경우에는 15개월이 되기 전에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대상 아동이 수용자자녀인지 알지 못하고, 이를 파악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SFA는 수용자자녀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⁴⁷⁾ 한편 양육권 박탈은 법원에서 심리 절차(Termination Hearing)를 거친다.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되는 경우, 아동은 주로 입양 절차를 거쳐서 다른 가정에 속하게 된다.

라. 주법

가) 수용자자녀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

캘리포니아 주법은 부모를 체포할 때 아동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 복지 및 시설에 관한 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이하 “WIC”) 300조~305조에 표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조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경찰관의 행동은 부모의 체포 시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① 체포를 당하는 사람에게 아동에 대해 묻거나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는 없고, ②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준비시키거나,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대안 양육자의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볼 의무도 없다. 따라서 아동은 친척이나 이웃에게 보호받거나, 경찰서에 따라가거나, 아동 복지 서비스 시설에 가거나, 혼자 집에 남겨지게 된다.⁴⁸⁾

46)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2008, p.10.

47)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2008, p.11.

48) Ginny Puddefoot and Lisa K. Foster, “Keeping Children Safe When Their Parents are

다만 일부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아이에게 미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례가 있다. *White v. Rochford* 판결은 경찰관이 양육자를 체포하면서 어린 아이를 고속도로에 있는 차 안에 내버려 두어 아이에게 해를 입힌 경우 경찰관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사례이다.⁴⁹⁾ 이 사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아버지를 체포하면서 3명의 아동을 차에 내버려 두었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걸어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어머니가 찾아갈 수 없었다. 결국 몇 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법원은 경찰관이 아이를 위험한 곳에 고의적으로 방치하였으므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경찰관이 WIC 305조에 따라 아이를 보호조치한 뒤에는 반드시 아동 복지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부모, 후견인이나 친척은 즉시 통지를 받아야 하고, 복지국 직원이 아이의 복지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아이는 구류에서 벗어나, 후견인이나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보내져야 한다.

아동복지국과 소년법원은 가족 문제에 개입하여 요보호아동에게 일정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모가 체포되는 경우의 아동은 요보호 아동에 속하지는 않으므로, 아동복지국이 경찰관에게 특정한 요청을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나) 체포~수용까지 형사 절차에서 수용자자녀에 관한 규정⁵⁰⁾

체포 당시 자녀가 함께 있었다면 다른 부모나 친척, 믿을만한 친구 등에게 아이를 맡겨야 한다.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면 카운티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이하 “CPS”) 기관에 의하여 아이가 응급 보호시설(emergency shelter)로 옮겨진다[WIC 300(g)조 및 306조].⁵¹⁾ CPS가 개입 없이 친척 등에게 아이가 양육된다면 법

Arrested: Local Approaches that Work” , California State Library, California Research Bureau, 2007. 7, p.21.

49) *White v. Rochford*, 592 F.2d 381 (7th Cir. 1979). 비슷한 사례에서 다른 결론에 이른 판결례로는 *Walton v. City of Southfield*, 995 F.2d 1331 (6th Cir. 1993) 참조.

50) 이하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것이다.

51) WIC 300(g) The child has been left without any provision for support; physical custody of the child has been voluntarily surrendered pursuant to Section 1255.7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he child has not been reclaimed within the 14-day period specified in subdivision (g) of that section; the child’s parent has been incarcerated or institutionalized and cannot arrange for the care of the child; or a relative or other adult custodian with whom the child resides or has been lef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ovide care or support for the child, the whereabouts of the parent are unknown, and reasonable efforts to locate the parent have been unsuccessful.

원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CPS가 개입하였다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법적 후견인이 지정된다. 아이를 친척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CPS에 요청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CPS 요청에 의하여 구금 심리 절차(Detention Hearing)가 개시될 수 있다. CPS가 ‘부모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 심리 절차가 48시간 내에 개시된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부모를 위하여 변호인을 지정하고, CPS 사회복지사에게 가정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부모와 그 자녀는 이 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모두 열람할 권리가 있다.⁵²⁾ 이외에도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 하에 가족 재통합(Family Reunification)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재통합 명령을 할 때에 아동의 연령, 부모와 자녀의 관계, 범죄의 종류와 확정된 형, 자녀에게 미칠 영향, 아동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⁵³⁾

다) 수용된 부모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규정

2015년 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부모가 수용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⁵⁴⁾ 다만 수용의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양육비 미지급에 있다면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위 의무는 출소 후에 다시 재개된다.

텍사스 주법에 의하면, 추정에 반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법원이 아동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의 주급이 연방(주 40시간 기준) 최저 임금과 같다고 추정한다. 이와 같이 추정된 주급은 양육비 산정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2015년 개정된 주법은 양육의무자가 90일을 초과하는 지역/주/연방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⁵⁵⁾

52) Strickman & Clake, “Incarcerated Parents Manual: Your Leg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Legal Service for Prisoners with Children and Prisoner Legal Services, 2010, p.7.

53) Strickman & Clake, 2010, p.12.

54) 2015 California Assembly Bill No. 610(AB 610) CHAPTER 629

4007.5. (a) Every money judgment or order for support of a child shall be suspended, by operation of law, for any period exceeding 90 consecutive days in which the person ordered to pay support is incarcerated or involuntarily institutionalized, unless either of the following conditions exist

55) 2015 Texas House Bill No. 943(HB 943)

SECTION 1. Section 154.068, Family Code,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Sec. 154.068. WAGE AND SALARY PRESUMPTION. (a) In the absence of evidence of a party's resources, as defined by Section 154.062(b), the court shall presume that the party has income equal to the federal minimum wage for a 40-hour week to which the support guidelines may be applied.

라)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

하와이 주에서는 공공안전부(the 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서 주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수용자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수용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 교정 시스템 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수용자 부모와 그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⁵⁶⁾ 다만 수집된 데이터의 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⁵⁷⁾

④ 수용자자녀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

가. 생존 - 양육, 주거, 경제적 지원

수용자자녀 중에서도 특히 수용시설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신한 상태로 수용이 된 경우, 임산부에게 맞는 식이, 비타민, 태아 검사, 산부인과 의사의 기본 진료, 임상 간호사(nurse practitioner)의 정기적인 방문 등이 제공된다. 출산 시에는 앰블런스로 병원에 이송되고, 출산 후 1-2일 간 자녀와 함께 지내다가 24-48시간 이내에 수용시설에 돌아온다. 몇몇 시설에서는 자녀의 특별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시설에 모자녀 간 면접을 요청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에서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여 교도소가 아닌 사회 기반 시설에 자녀와 함께 수용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2008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여성 수용자의 2%⁵⁸⁾인 170 가정이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었다.⁵⁹⁾ 임산부인 수용자를 지원하

(b) The presumption required by Subsection (a) does not apply if the court finds that the party is subject to an order of confinement that exceeds 90 days and is incarcerated in a local, state, or federal jail or prison at the time the court makes the determination regarding the party's income.

56) 2015 Hawaii Senate Bill 913(SB 913)

SECTION 2. Chapter 353, Hawaii Revised Statutes, is amended by adding a new section to part I to be appropriately designated and to read as follows:

"§ 353 Incarcerated parents; data collection. Beginning on July 1, 2016, the department shall collect the following data upon intake of offenders into the correctional system:

(1) The number of offenders who are parents;

(2)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een, per offender who is a parent; and

(3) Any other information about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at the department deems useful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incarcerated parents or their children."

57) "Child Support and Incarcer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child-support-and-incarceration.aspx>, 2016.10.2.

58)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 수용된 인구의 2-4%(500-600명)가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

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표VII-1 수용자자녀 생존권 지원 프로그램

단체명 혹은 프로그램명	내용	지역	웹사이트
MIRACLE project	수용자자녀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교도소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는 수용자는 출산, 산후조리, 모유 수유 교육, 부모 교육, 아동 발달 교육, 약물 교육, 테라피 등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시점으로 400명 이상의 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The Mother-Child Reunification Program(MCRP)	-최대 20명이 이용 가능한 신생아실 운영 -아동의 면접 시간을 연장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상담사 등과 함께 면접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Friend Outside: National Organization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빈곤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있다. 그 외에 접견 지원, 자녀 돌봄, 상담, 재결합 정보 제공,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캘리포니아 주	http://www.friendsoutsid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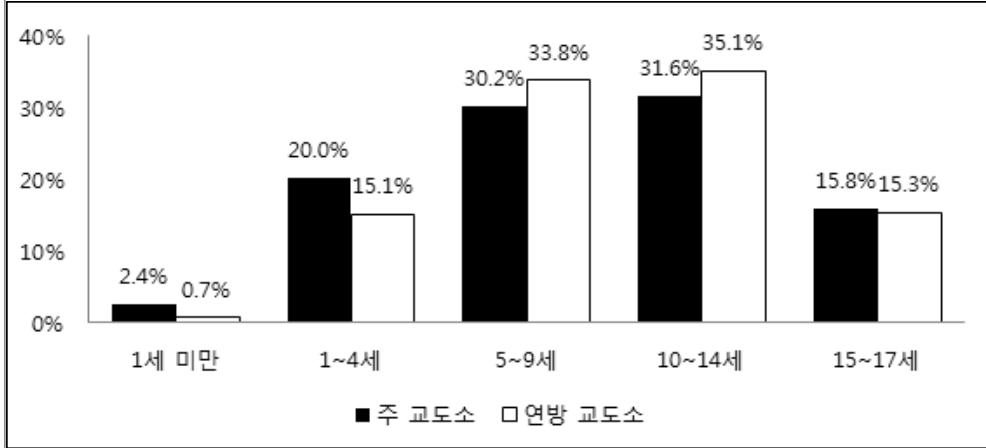
나. 보호 - 가정, 학교생활, 수사 및 재판 절차

수사 및 재판 등 형사 절차에서 수용자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은 아동의 연령이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통계에서 발췌한 수용자자녀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주 교도소와 연방 교도소 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5~14세로 초·중등학생이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경찰관은 적절한 태도를 견지하고, 알맞은 판단을 하여야 한다.

되었다.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2008, p.23.
59)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2008, p.15.

그림VII-4

수용자자녀의 연령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risoners Series



다. 발달 - 학업, 심리·신체·사회적 건강

아동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달 수준에 걸맞게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부모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 사회복지사, 양육자, 학교 교직원 등이 연계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⁶⁰⁾

표VII-2 수용자자녀 발달권 지원 프로그램

단체명 혹은 프로그램명	내용	지역	웹사이트
Camp Celebration	여름방학 기간 동안 2박 3일 간 교도소 근처 숲에서 가족들이 캠프를 하는 대표적인 합숙 프로그램이다.	일리노이 주	
New Hope Oklahoma	수용자자녀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7개 학교에서 실시하는 11개의 방과 후 교실, 1주일간의 여름 캠프, 명절 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needs)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 관리를 한다.	오클라호마 주	http://www.newhopeoklahoma.org/

60)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2008, p.20.

단체명 혹은 프로그램명	내용	지역	웹사이트
Promises for Families	수용자자녀를 위한 여름 캠프, 방과 후 교실, 과외 등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와 자격을 갖춘 상담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산 안젤로, 텍사스 주	http://promisesforfamilies.org/index.php/en/
Sesame Street-Little Children, Big Challenges: Incarceration	부모의 수용을 겪으면서 문제에 부딪힌 3-8세의 미취학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툴킷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언어 사용 방법 등을 알려 준다. 10개 시범 주 에서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온라인	http://www.sesamestreet.org/parents/topicsandactivities/toolkits/incarceration/
The Osborne Association: Children	현재 부모가 수용되어 있거나 과거에 부모가 수용된 경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낙인과 따돌림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 친화적 환경과 아동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 주	http://www.osborneny.org/index/cfm
Big Brothers Big Sisters	수용된 부모나 남매를 둔 아동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재결합 준비를 위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7개 주	http://www.bbbsmidflorida.org/
the Lac Courte Oreilles Tribe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참여 - 알 권리, 면접, 교정기관

방문 및 면접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심리적 교류의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수용자의 가족들이 교도소를 방문할 때 문제되는 것은 ① 교통(거리) ② 비용(주유비, 비행기요금, 숙박비, 식비 등) ③ 대기시간이나 교정시설 공무원을 대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⁶¹⁾ ④ 아이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 등이다.⁶²⁾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족 친화적인 접견의 예로는 ①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개발 ②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의 접견 ③ 사생활을 덜 침해하는 방식의 접견 등이 있다.

61)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62) Traci LaLiberte and Elizabeth Snyder, 2008, p.16.

표VII-3 수용자자녀 참여권 지원 프로그램

단체명 혹은 프로그램명	내용	지역	웹사이트
Friend Outside: National Organization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두고, 주에 위치한 29개 교정기관에 자녀를 위한 접견 대기실을 제공한다. 교통편 지원, 사례관리, 갈등해결 워크숍, 부모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http://www.friendsoutside.org/
Abe Brown Ministries	가족들이 교정시설에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단체이다. 매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수용된 여성을 위하여 상담과 부모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탬파, 플로리다 주	http://www.abebrown.org/
Mommy reads	2009년 설립된 단체로, 수용된 여성이 자녀를 위하여 책을 읽어주거나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녹음된 파일은 mp3 플레이어에 담겨 책, 편지와 함께 자녀에게 전달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의 기부에 의하여 운영되며, 기부된 돈은 책, mp3 플레이어, 우편 비용 등으로 쓰인다.	게인즈빌, 플로리다 주	https://www.facebook.com/MOMMYREADS/
Storybook Project	Mommy reads와 마찬가지로 수용자 부모가 책을 읽어 녹음을 하면 이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17개의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일리노이 주	http://www.lssi.org/prisoner-family-ministry/pfm-the-storybook-project.php
Service Network for Children of Inmates	미국 내 모든 주의 교정시설 방문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1,5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하였다.	마이애미, 플로리다 주	https://www.childrenofinmates.org/
Family Treatment Program's Prison Visitation	Volunteers of America of Minnesota 라는 NGO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 법원과 연방 변호사협회와의 파트너십 하에서 운영된다. 수용자가 신청을 하면 단체에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네소타 주	

마. 기타 - 양형, 지원 제도, 사회적 인식

미국은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양형의 비례성을 촉진하기 위해 1984년 양형개혁법에 의해 설립된 사법부 산하의 초당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연방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를 두고 있으며, 연방양형위원회는 연방 양형 실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⁶³⁾ 연방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적절한 양형인지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① 연령(age), ② 교육 및 직업적 재능(education and vocational skills), ③ 정신적·감정적 상태, ④ 육체적 상태(약물·도박 중독 포함), ⑤ 고용 기록(employment record), ⑥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책임(family ties and responsibilities), ⑦ 공동체 유대관계(community ties), ⑧ 범행에서의 역할 ⑨ 범죄 전력(criminal history), ⑩ 생계형 범죄 의존도 ⑪ 등을 명시하고 있다.⁶⁴⁾

연방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 가족이 겪게 될 위험(The danger, if any, to members of the defendants family as a result of the offense)’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i)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에게 중대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의 상실로 이어지는지 (ii) 그 상실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가 유사한 상황의 다른 피고인에게 미치는 구금에 따른 피해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지 (iii) 다른 효과적인 교정·개선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부양이나 경제적지원이 대체될 수 없는지 (iv) 양형으로써 그 상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⁶⁵⁾

6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59쪽.

64) 28 U.S.C. § 994 - Duties of the Commission

(d) The Commission in establishing categories of defendants for use in the guidelines and policy statements governing the imposition of sentences of probation, a fine, or imprisonment, governing the imposition of other authorized sanctions, governing the size of a fine or the length of a term of probation, imprisonment, or supervised release, and governing the conditions of probation, supervised release, or imprisonment, shall consider whether the following matters, among others, with respect to a defendant, have any relevance to the nature, extent, place of service, or other incidents 2 of an appropriate sentence, and shall take them into account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do have relevance—(1) age; (2) education; (3) vocational skills; (4) mental and emotional condition to the extent that such condition mitigates the defendant’s culpability or to the extent that such condition is otherwise plainly relevant; (5) physical condition, including drug dependence; (6) previous employment record; (7) family ties and responsibilities; (8) community ties; (9) role in the offense; (10) criminal history; and (11) degree of dependence upon criminal activity for a livelihood.

65) Patti B. Saris et al, “the Guidelines Manual 2016”,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2016, pp.477-478.

United States v. Roselli는 피고인의 두 명의 자녀들이 낭포성섬유증을 앓고 있고 처는 건강히 심각하게 쇠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고,⁶⁶⁾ United States v. Johnson은 피고인이 세 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그 중 한명은 갓난아기이며 보호시설에 있는 자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을 한 사례이다.⁶⁷⁾ United States v. Galante 역시 피고인의 가족 부양 상황, 처가 영어를 하지 못해 구직을 할 수 없는 상황, 피고인이 자녀들을 방과 후에 헌신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형을 하였다.⁶⁸⁾

United States v. Floyd는 감형이 아닌 구금 유예를 인정한 사례이다. 부부가 사기죄를 공모한 사건이었는데, 부모가 동시에 구금되면 자녀들이 양육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한 명에게는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다.⁶⁹⁾ 다만 변호인이 자녀의 양육 상황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한편, 출소를 앞둔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이제 막 수용된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방문 절차를 개발하고 부모-자녀 양육자 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용자와 그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중요성 강조함 ② 수용자에게 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교육함 ③ 지역사회의 지원과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복귀를 도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⁷⁰⁾

66) United States v. Roselli, 366 F.3d 58 (1st Cir. 2004).

67) United States v. Johnson, 964 F.2d 124 (2d Cir. 1992).

68) United States v. Galante, 111 F.3d 1029 (2d Cir. 1997).

69) United States v. Floyd, 945 F.2d 1096 (9th Cir. 1991).

70) Kathryn Russel Brown et al, "Children of the Incarcerated: Collateral Victims of Crime - A Resource Guide", UF Levin College of Law Center for the Study of Race and Race Relations, 2015. 3, p.6.

표VII-4 수용자자녀 기타 지원 프로그램

단체명 혹은 프로그램명	내용	지역	웹사이트
Hope House DC	수용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범을 줄이고 수용자를 사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수용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가정 간의 연결을 공고히 하는 것 2) 일반 대중의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 3) 수용자자녀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워싱턴 D.C.	http://www.hopehousedc.org
Collaborative for children in Hillsborough of Incarcerated Parents	수용자자녀와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 입법 운동,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동이 현장에 있을 때의 체포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힐즈버러 카운티, 플로리다	
La Bodega De La Famila	약물오남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형사 절차 지원을 한다.	뉴욕, 뉴욕 주	
Prison Fellowship	신앙을 기반으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Angel Tree는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미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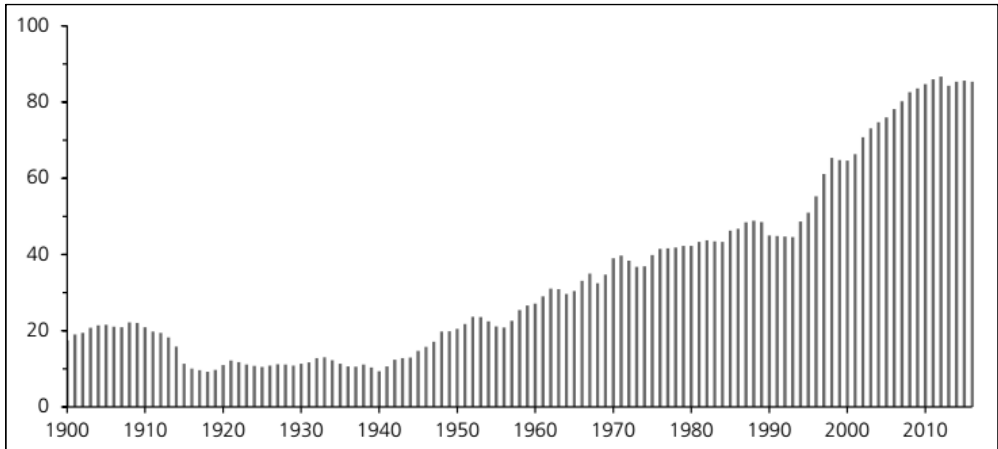
(2) 영국

① 수용자자녀 현황과 지원 현황

1993년 이후 영국의 수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영국 범죄자 관리청(National Offender of Management Service, NOMS)에서 발표하는 수감자 통계에 따르면 2017. 3. 31. 조사 당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도소 수감자는 85,500명이며,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감자 수는 매년 평균 3.5%, 90% 가까이 증가하였다.⁷¹⁾

71) Grahame Allen & Chris Watson, "UK Prison Population Statistics", House of Commons

그림VII-5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용자 수, 1900-2016⁷²⁾



가. 여성 수감자수의 증가

영국 범죄자 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1900년대 초 잠시 감소하였던 여성 수감자는 1960년대부터 증가하였고, 2005년에 4,467명으로 최고치 기록한 후 2016년 조사 당시 여성수감자는 3,854명이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감옥에 있는 여성 중 66%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감옥에 있는 어머니 중 1/3 이상이 한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⁷³⁾

나. 수용자자녀 현황

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수용자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2009년을 기준으로 160,000명 아동의 부모가 수감 중(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⁷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200,000명이 넘는 아동이 부모의 수감을 경험하였고, 이는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보다 6배 많은 숫자⁷⁵⁾에 해

Library, 2017.

72) 위 Grahame Allen & Chris Watson, 4면.

73) Rona Epstein, "Mother in Prison: The sentencing of mother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Howard League What is Justice? Working Papers, 2014. 3.

74) 박선영·신연희, "수용자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14면.

75) Margarete Parrish & Caroline Long Burry, "Twofold Adversity: Incarcerated Mother and

당한다.

어머니가 수감된 경우 아동의 양육 상황은 다음과 같다.⁷⁶⁾ 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새로운 배우자가 양육(25%), ② 조부모의 양육(25%), ③ 친구 혹은 친척에 의한 양육(29%), ④ 입양(12%), ⑤ 자신이 살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음(5%), ⑥ 알 수 없음(4%).

영국의 교육계에서 수용자자녀를 다루는 기구, 전문화된 인력이 없는 상황이며 정책 연구 역시 시민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② 관련 법령 및 정책

영국 수용자자녀 지원의 골격을 이루는 정책은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 아동을 위한 변화(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⁷⁷⁾이며, 아동법(Children’s Act)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인권법(Human Right Act, 1998) 제8조 제1호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⁷⁸⁾ 아동권리협약(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아동의 최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제3조), 가족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존중할 것(제9조)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⁷⁹⁾

가) 대중 보호와 재범 감소를 위한 5개년 계획(Protecting the Public and Reducing Reoffending)

2006년 영국 내무부에서는 대중 보호와 재범 감소를 위한 5개년 계획(Protecting the

Child Protection”, 2013. 9. 17.

76) 위 Rona Epstein.

77) 2003년 정부의 정책제언인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아동을 위한 변화(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는 2004년 아동법 제정에 기여한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이다. 이에 위 정책에서 설정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건강(Be healthy)
- 안전(Stay safe)
- 즐기기과 성취(Enjoy and achieve)
- 긍정적 기여(Make a positive contribution)
- 경제적인 안녕 달성(Achieve economic well-being)

78)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7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 2015, 224면.

Public and Reducing Reoffending)을 발표하였다. 수용자의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모교육과 관계성 증진 기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방형 교도소를 늘려서 가족 접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계획(Children and Young People's Plan):

아동청소년 계획(Children and Young People's Plan)에 따라 잉글랜드에서 150개 지방정부 중 13개 정부에서 수용자자녀를 인식하였고, 5개 정부는 수용자자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다) 수용자자녀 검토(Children of Offender Review):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라) 스코틀랜드 권고안:

“아동, 청소년, 가족(Children & Young People's Commissioner Scotland)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보다 구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수형자 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조사하고 28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⁸⁰⁾ 그 중 권고 7에서는 “가족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때 경찰은 그들의 미성년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 트레이닝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⁸¹⁾고 정하여 경찰이 일정한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⁸²⁾

나. 관련 판례

영국의 경우 법제도의 형성에 판례법이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리딩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자녀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0) Marshall, K. Not Seen, Not Heard, Not Guilty. The rights and status of the children of prisoners in Scotland. Edinburgh: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CYP), 2008.

81) Recommendation 7 [Addressed to Chief Constables of Scottish Police Services] Police should receive guidance and training on dealing with children sensitively when a family member is being arrested or detained.

82) 민간단체 Family Outside(<https://www.familiesoutside.org.uk/>)에서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지원으로 마련된다. 이은선,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관한 비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2016. 10.), 104-105면.

가) R (on the application of Stokes) v Gwent Magistrates Court ⁸³⁾

16, 15, 6세 및 9개월 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Stokes가 미납된 벌금으로 12일간 구금되도록 하는 보상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High Court가 이를 파기한 판결이다. High Court는 “이 행위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로 어머니를 어린 자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시하였다.⁸⁴⁾

나) R (on the application of P and Q)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⁸⁵⁾

아기가 18개월 이상이 되면 감옥 내 “Mother and Bay Unit”을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규정에 관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Court of Appeal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러한 간섭은 ① 법에 따라, ② 인권법 제8조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③ 민주사회에서 필수적⁸⁶⁾(주: 비례성의 원칙)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⁸⁷⁾고 판시하였다.⁸⁸⁾

83) R v Gwent Magistrates Court [2001] ALL ER (D) 125.

84) “separate completely a mother from her young children with unknown consequences of the effect of that order on those children, had to take into account the need for proportionality and ask itself whether the proposed interference with the children’s right to respect for their family life was proportionate to the need which made it legitimate. Committal to prison must be a remedy of final resort if all else has failed.”

85)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1] EWCA Civ 1151.

86) “It must b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at is to say, the reasons given for the interference must be ‘relevant and sufficient’... It must correspond to a ‘pressing social need’ and be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aim pursued”

87) “Such an interference can only be justified under Article 8.2 if three conditions are fulfilled:

i) It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law’...

ii) It must be in pursuit of one of the legitimate aims provided for in the Article ...

iii) It must b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at is to say, the reasons given for the interference must be ‘relevant and sufficient’... It must correspond to a ‘pressing social need’ and be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aim pursued”

88) ‘항소법원’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한국의 항소법원과는 차이가 있음. 이하에서는 영문명 그대로 표기.

다) R v Rosie Lee Petherick⁸⁹⁾

한편, 최근 Court of Appeal에서는 R v Rosie Lee Petherick⁹⁰⁾ 사건에서 아동의 수용을 양형에서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2살 아동의 한부모인 Rosie Lee Petherick은 음주운전으로 4년 9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고 아동은 그 아버지와는 거의 접촉이 없는 상태다. 이에 2012. 10. Court of Appeal은 자녀를 고려하여 4년 9개월의 형을 3년 10개월의 징역형으로 감형하였다. 주목해볼 만한 것은, 해당 판결에서 법원이 인권법 제8조와의 ‘균형’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위 판결에 관하여 양형은 법관의 재량이 크고, 법원이 아동의 제8조상의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균형’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⁹¹⁾

③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

가. 출산과 양육

영국에서는 매년 약 120명의 여성이 감옥에서 아기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⁹²⁾ 이에 감옥에서 출산하거나 18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여야 하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영국의 특징적인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는 여성구금시설에 설치하는 “Mother and Baby Unit(MBU)”이다. MBU는 별도의 거주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MBU에서 어머니는 양육권 행사 및 영아에 대한 일상적인 보살핌이 가능하다.⁹³⁾⁹⁴⁾ 원칙적으로 아기는 18개월까지 MBU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판결에서와 같이 18개월 영아로 대상을 제한한 위 제도는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현재 MBU는 영국의 여성교도소 중 6곳에 설치되어 있다.⁹⁵⁾

양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민간단체인 바날도(Barnardo)와 감리교회 미션(The Methodist Mission)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89) R v Petherick [2012] EWCA Crim 2214.

90) 위 판례.

91) Epstein, R. "Mothers Behind Bars", CL&JW, (2013) 177 JPN 531.

92) Women Prisoners, Ministry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uk/offenders/types-of-offender/women>

93) <https://www.justice.gov.uk/offenders/types-of-offender/women>

94) "Women Prisoners", Prsion Serveice Order, order number 4800.

95) Brozefield, Eastwood Park, Styal, New Hall, Peterborough, Askham Grange의 6곳이다.

표VII-5

바날도&감리교회 미션의 양육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체명)	내용	사이트
Parenting Matters (Barnardo)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에게 수감의 시작부터 석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가족 문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HMP Maghaberry, HMP Magilligan and Hydebank Wood College and Womens' Prison에서 시행하고 있다.	https://www.barnardos.org.uk/
Storybook Dads Project (The Methodist Mission)	수용자가 아이들을 위하여 동화책을 읽고 이를 녹음하여 책과 함께 자녀에게 보내는 프로젝트이다.	http://www.storybookdads.org.uk/
Women in Prison (여성교도소)	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과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 출소자들에게 자녀양육권과 가족문제, 기초생활 지원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중인 수용자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제공하는 한편 모유수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교도소 방문신청을 별도로 받고 연장도 가능하도록 한다.	

나. 부모-자식, 공동양육자 간 유대 및 접촉 강화

교정시설 내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가족 '방문'을 강화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방문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VII-6

민간단체의 가족 간 유대강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체명)	내용	사이트
Building Stronger Families (PACT96)	2005년 이래로 약 2400명의 수용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공동 양육에(co-parenting)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https://www.prisonadvice.org.uk/building-stronger-families
Angel Tree (Prison Fellowship)	민간단체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교도소의 부모가 카드를 작성하여 아동에게 보내어 수용자자녀와 부모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https://www.prisonfellowship.org/about/angel-tree/

프로그램 (단체명)	내용	사이트
Prison Visitor Centres (Partners of Prisoners and Families Support Group, POPS)	교도소와 협력하여 가족들의 방문을 돕고, 수용자 가족들의 고민을 지역공동체와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접견 가족들을 위한 지침서 제공, 캠핑, 자선행사 모임 등을 제공한다.	https://www.prisonadvice.org.uk/building-stronger-families
MATTA	수용자인 어머니에게 자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돌체스터 가족지원 서비스 (Barnardo)	방문자센터시설의 편의 향상을 통해 수용자 가족의 방문을 촉진한다.	https://www.barnardos.org.uk/
Family Lives (Action for Prisoners' and Offenders' Families 단체와 2014년 병합)	범죄자 관리청과의 계약을 통해 수용자자녀를 위한 “도움의 전화(Offenders' families helpline)”을 운영한다. 무료로 지원되는 전화에는 통역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http://www.familylives.org.uk/
Prison Advices & Care Trust (PACT)	-가족 돌봄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여성수용자의 자녀 문제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의 교도소 방문을 지원한다.	https://www.prisonadvice.org.uk/

다. 수용자 가족 전반에 대한 지원

수용자의 가족을 교정시설 외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Barnardo의 ‘수용자자녀 회복 프로젝트(Empowering Children of Offenders Project)’는 수용자자녀의 사회적, 감정적, 정신적 안녕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담당자가 수용자자녀와 그 가족을 지원한다.⁹⁷⁾ 그 외에 Prison Advice & Care Trust 에서는 구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가족을 지원하며, Prisoners' Families and Friends service 단체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수용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웨일즈의 사설교도소인 HM Parc Prison에서는 출소자의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며, 민간단체인 Partners of Prisoners and Families Support Group(POPS)는 인터넷 기부프로그램인 “Just Giving

96) Prison Advice & Care Trust

97) 박선영·신연희, 137-138면.

Project”와 문자 기부 프로그램인 “POP 25”를 운영한다. 인터넷 Just Giving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으로 자녀와 가족에게 법률 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POP 25” 프로그램을 통해 익명의 기부자는 문자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수용자자녀 지원을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단체인 Bucks Association for the Care of Offenders(BACO)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회원들에게 기부금과 기부금품을 받아 수용자의 출소 이후 생활비 및 취업 준비 비용지원에 사용한다.⁹⁸⁾ 다만 이들 지원은 모두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아니다. POPS는 “Bank Workers”를 설립하여 수용자의 가족을 돌보고,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출소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출소 후 출소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이다.

(3) 호주

① 수용자자녀 현황

Austrian Bureau of Statistics⁹⁹⁾의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호주의 수용자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36,134명에서 2016년엔 38,845명으로 증가하여 약 8%가 증가하였다. 성인인구 100,000명당 208명으로 2015년의 196명에서 약 6%가 증가하였다. 수용자자녀에 관해서는 Austrian Bureau of Statistics나 Austr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같은 공식적 기관에서도 수용자의 자녀 숫자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구축해 놓지 않았다(Saunders & McArthur, 2013). 수용자자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이다(VACRO, 2006). 1982년 Hounslow와 동료들이 1982년 “Children of Imprisoned Parents”라는 논문을 통해 수용자자녀의 존재에 대해 부각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 된 배경에 대해서 민간단체인 VACRO(2006)는 구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자녀 문제도 정책적 쟁점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으며,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정의의 변화 등이 1970년대 말에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용자자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호주 역시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수용자자녀의 숫자에 대한 공식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연구자들에 의한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Quilty는 2003년에 호주 전체에서 15

98) 이은선,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관한 비교”, 성균관대학교 일 반대학원 학위논문(2016. 10.), 104면.

99)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4517.0>

세 이하의 아동의 0.5%가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후 빅토리아 교정국은 2004년에 빅토리아 주 안에 4,000명의 아동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Corrections Victoria, 2004). 2005년에 Quilty는 호주 아동의 5%, 호주 원주민 아동의 20%가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구금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 2012년 호주의 “건강과 복지부”에서 수형자의 건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형자의 28%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으며, 수형자의 21%가 그들의 어린 시절 부모가 구금된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여성 수용자에 대한 조사에서도 자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호주 내의 여성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여성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Shlonsky et al., 2016). 빅토리아 교정국은 여성 수용자 증가에 주목하였다. 빅토리아 주 내에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여성 수용자가 17.8% 증가하였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5). 자녀에 대한 조사에서 2014년 6월에 여성 수용자의 71.8%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중 28.9%는 아동의 유일한 양육자였다. 2012년~2013년 사이에 빅토리아 여성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은 5~15명이었다(Shlonsky et al., 2016). Dennison과 동료들(2013)은 퀸즈랜드에서 17세 이하 아동의 0.8%가 아버지의 1년 이상의 구금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중에 0.5%는 원주민 자녀였지만, 연간으로 추정하면 4.4%의 원주민 자녀가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평생의 경험으로 추정한다면 비원주민 아동의 3.3~3.8%, 원주민 자녀의 12.5~16.3%가 아버지의 구금을 경험한다고 분석되어, 원주민 자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역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구별된 법이나 제도는 없다. 2004년에 “Standing Committee on Community Services and Social Equality”는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orrective Services 내에서 부모가 구금되었을 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아동 사무관(Children Officer)이 반드시 임명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tanding Committee on Community Services and Social Equality, 2004). 이후 2008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권고되었지만, 2013년에 ACT Attorney-General’s Office는 여전히 이러한 권고사항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Saunders & McArthur, 2013).

그러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부분적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경우 빅토리아 주와 뉴웨일즈 주는 필요한 경우 경찰은 범죄자의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법원 단계의 양형에서도 뉴웨일즈 주의 경우 Section 21A(2)(d) of the Crimes (Sentencing Procedure) Act 1999 (NSW),

Commonwealth Crimes Act (1914) s. 16A에서는 양형시 고려할 사안중의 하나로 가족과 부양할 자녀의 어려움이 기술되어있다(Trotter et al., 2015). 아동법원은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함께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미성년자 자녀의 돌봄에 관해 법원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아동보호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 Protection)는 여성 수용자의 경우 빅토리아 교정국이 운영하는 'Mothers and Children Program'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교정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Trotter et al., 2015). 교정국은 특히 여성 교도소에 여성 수용자와 자녀가 5세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Mothers and Children Program"을 운영하며 모든 교도소에 친아동적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정부기관의 노력 외에도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민간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단체는 SHINE for KIDS, VACRO 등이다.

② 지원현황

가. 교정국

Bartels & Gaffney(2011)은 호주 교도소, 특히 여성 교도소에서 아동 친화적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평했다. 교도소 측에서 신체 접촉이 허락되는 방, 놀이터가 구비된 아동 친화적 방문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와 엄마 수행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동유닛을 제공하고 있다.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유아의 경우, 엄마 수행자가 프로그램과 교육, 치료에 참여할 때는 유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일부 여성 교도소에서는 부모교육이 필수인 곳도 있다(McCormick et al., 2014). 또한 교도소 직원들은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퀸즈랜드 타운스빌 여성 교도소 내에는 유아와 엄마 수용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엄마와 아기 유닛 Mothers and Babies Unit"이 있다. 독립된 건물에서 거실, 샤워실, 야외 놀이터는 공유하지만 각 엄마와 아기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주어지며, 자녀들은 5살까지 엄마와 함께 거주 가능하다. 2016년에 15명의 아동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외에 매주 금요일엔 자선단체인 "Save the Children"의 직원들은 여성 수용자자녀들을 교도소에 데리고 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 아동들은 엄마와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책을 함께 읽고 노래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기본은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수용자가 출소후의 미래를 계획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Millington, 2016).

빅토리아 여성 교도소에서도 빅토리아 교정국과 법무부 주관으로 1981년부터

“Mother and Children Program”을 영/유아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 엄마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결정이 되면 Child Protection에 통보를 해야 한다. Kids Days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교정국은 Christian Family Center와 자원봉사자의 협력으로 1년에 3번 두 시간 동안 개최한다. 평소 방문에서는 어른들의 이야기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동들은 방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행사에서는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성, 아동의 필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액티비티 룸에서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고, 책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Millington, 2016).

나. 아동법원(Family Division of Children’s Court)¹⁰⁰⁾

호주는 관련 아동기관을 통해 보호의 대상자가 되면 아동법원(Children’s Court)에서 아동의 법적, 복지적 지원에 대한 결정을 한다. 대상 아동은 부모의 방임,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자가 없을 때이다. 아동법원 기록을 살펴보면 본 법원에 사례가 접수된 가족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다. 참여한 기관의 명단을 살펴보면, 복지기관, 학교, 병원, 경찰, 청소년 지원센터, 정신건강 센터 등이다. 다음으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명령이 현출되어 있다.

다. 경찰

호주 전체 경찰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표준안은 없지만, 뉴웨일즈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경찰이 부모를 체포하고 그들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복지서비스 아동보호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hild Protection)와 빅토리아 경찰 간의 프로토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과 가족법(Child Youth and Families Act 2005)에 의거해서 부모가 구금 상태가 될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돌볼 다른 양육자가 없을 때 경찰은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에 신고토록 명시되어있다(Trotter et al, 2015). 뉴웨일즈 주의 경우에도 경찰핸드북(Police Force Handbook)에 경찰관은 경찰에 연행된 자에 대해 부모의 구금, 부모의 죽음, 부모의 입원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책무가 있음이 명시되어있다(NSW Police Force, 2013). 즉, “다른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경찰은 반드시 아동의 돌봄을 위해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에 신고해야 한다” (NSW Police Force,

100) <http://www.courts.qld.gov.au/courts/childrens-court>

2013, p. 31). 또한 아동에게 의료적 관심, 특별한 의료적 관심, 음식과 옷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 상담과 치료 같은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는 점검하도록 구체적인 책무도 지시되어있다(Trotter et al., 2015).

라. SHINE for Kids

SHINE for Kids¹⁰¹⁾는 1982년에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Children of Prisoners' Support Group(COPSG)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아동가족센터, 교도소 내 부모-자녀 지원 프로그램, 학교 내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 연구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아동가족센터(Child and Family Centres)는 교도소 방문 전과 방문 후에 들리는 곳으로 수용자 가족과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쉬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을 제공받는다.

교도소 내 프로그램으로는 Prison Invisits Program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이 교도소를 방문할 때 좀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서 자녀의 부모 방문을 독려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숙련된 아동돌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자녀가 부모를 방문할 때 동행해서 부모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또 다른 교도소 내 프로그램은 Child/Parent Activity Day로서 좀 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른 자원봉사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수용자와 자녀가 함께 4시간 동안 만들기, 공놀이 등을 할 수 있다. 공휴일에 운영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본 단체는 또한 학교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Breaking the Cycle initiative는 수용자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능력을 향상하고 자신감과 자존감 높이며 가족과 학교 간 유대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수용자자녀들이 학교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며 학교 출석도 모니터링 해준다. 본 단체 직원이 구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아동들이 있는 5개 학교와 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자녀들에 대해 1:1 혹은 그룹을 형성해서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돕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아동의 정보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 돌보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카운슬링을 제공한다.

수용자자녀로 스스로 밝히거나 가족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부모를 만난다. 사회복지사의 주선을 통해 상담이 이

101) <https://shineforkids.org.au/>

루어진다. 만약 돌보는 사람이 학교 내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VACRO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학교 내 지지그룹을 운영하는데 한 그룹은 10명 정도의 아동으로 구성되며 모두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지지 그룹에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초대되기도 한다. 지지그룹에 참여를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마. Victorian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Resettlement of Offenders (VACRO)

VACRO¹⁰²⁾는 1976년에 설립된 단체로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대부분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수용자, 출소자, 수용자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수용자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인 Video Visits은 교도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와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용자와 자녀들이 화상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아동에 중점을 둔 가족 테라피 프로그램인 SUPPORTING KIDS AND YOUTH (SKY) 이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족은 신청 가능하며 카운슬러는 수용자 가족을 방문해서 자녀, 남은 부모, 가족 등을 상담한다. 원주민 가족 방문 프로그램 Aboriginal Family Visits Program은 한 가족당 6주에 한번 이용가능하다.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기차표와 버스표를 제공한다.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자동차 기름 값을 지원한다. 또한 교도소와 집 사이의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가정에겐 숙박비도 지원이 된다. 특별 가족연락전문가(Specialist Family Liaison Worker)는 아버지 수행자들이 자녀의 필요와 보호에 관해 복지국의 아동보호국과 연락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VACRO는 2008년에 Legal Services Board of Victoria의 지원을 받아서 Geelong Magistrate's Court에서 3년간 "Family Links"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Hastrich, 2015). 법원에 Family Worker를 배치해서 교도소 구금형이 나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0~17세 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6회 정도를 만나서 위기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피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 이행 보고서에서 연구자는 본 프로젝트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며, 이중의 50% 이상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VACRO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하기 위한 교육 사업도 실시하

102) <http://www.vacro.org.au/HOME.aspx>

였다. 학교 직원과 교사와 관련기관을 초대하여 구금이 가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러한 가족과 자녀를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방법,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내 자원과 단체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4) 캐나다

① 수용자자녀 현황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¹⁰³⁾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캐나다 내에는 14,741명의 수용자가 있으며, 성인 인구 100,000당 51명의 비율이다. 2012년에 14,265명, 2013년에 14,470명 보다 증가했지만, 2014년에 15,140명, 2015년에 15,167명보다는 감소한 숫자이다. 캐나다 정부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자녀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McCormick et al., 2014). 수용자가 입소 시 자녀 유무와 부모 양육 기술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다(McCormick et al., 2014).

연구자들과 수용자 가족/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은 수용자의 증가로 인해 자녀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단체인 CFCN은 2013년에 약 18만 명에서 35만 명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혹은 부모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추정하였다(Mussell, 2016). 엘리자베스 프라이어 소사이어티¹⁰⁴⁾는 45,000 명의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교도소에 있으며, 1년간 256,000명이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수용자자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Fraser Valley 대학 연구팀은 캐나다 내에서 재판 전 구속의 증가, 여성 구금의 증가, 캐나다 토착민(aboriginal) 구금 증가, 외국 국적자 구금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부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모가 구금된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McCormick et al., 2014).

캐나다 내에서도 수용자자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제도가 구축된 것은 아니며, 아동복지와 지원에 관련한 법과 제도, 조직은 있지만 수용자자녀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Mussell, 2016). 정부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인권 단체인 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은 UN의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제공과 부합되는 사안으로서 국가는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이익

103) <http://www.statcan.gc.ca/tables-tableaux/sum-som/l01/cst01/legal31a-eng.htm>

104) <http://www.just-kids.ca/kidsincrisis.html>

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2012). 앞서 언급된 Fraser Valley 대학 연구팀은 캐나다 연방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이 자녀와 가족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기타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와 민간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McCormick et al., 2014). 그러나 대다수의 단체들이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아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차원의 노력은 교정국 외에도 경찰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British Columbia's Child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Act에 의거해서 아동이 즉각적인 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부모의 체포 후에 즉시 아동복지 기관에 이를 통보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McCormick et al., 2014).

교정과 경찰단계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논의된 바대로 캐나다에서 수용자 가족과 자녀 지원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는 CFCN, Elizabeth Fry, John Howard Society, Prison Fellowship Canada, FEAT 등이며, 수용자자녀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는 FEAT가 유일하다. 다른 단체들은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가족지원에 자녀지원이 포함된 형태이다.

연방 교정국의 지원과 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② 지원 현황

가. 캐나다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Canada)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바로 교도소이다.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장한다기보다는 가족관계 강화를 통해 수용생활의 안정과 재범억제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Bayers(2011)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교도소는 여성 교도소를 중심으로 장난감이나 놀이방과 같은 친아동적인 환경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구치소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교정국이 친아동적 방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Bayers, 2011).

교정국¹⁰⁵⁾은 가족과 친구의 방문은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방문 외에 “개인가족방문프로그램(Private Family Visit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침실과 부엌, 거실, 화장실 등이 갖춰진 가정과 같은 별도

105) <http://www.csc-scc.gc.ca/correctional-process/index-eng.shtml>

의 시설에서 가족만남을 할 수 있다. 모든 수형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정폭력에 위험이 있는 자, 특수 처우를 기다리는 자는 안 된다.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동거자, 자녀, 부모, 위탁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과 같은 강한 유대가 있는 사람이며 두 달에 한번 3일간의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방문을 강화하고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교도소에 가는 방문객에게 한 달에 두 번 낮은 비용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엄마-자녀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 MCP)을 여성 연방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다(Brennan, 2014). MCP 프로그램은 여성 수용자들의 필요와 상황을 분석하고 권고들을 제시한 “Creating Choice”보고서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으로서, 이 보고서는 “연방 형을 선고받은 여성들에 관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Federally Sentenced Women’s, TFFSW)”에 의해 만들어졌다. MCP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수용자는 자녀와의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고한 자녀를 교도소에 있게 할 수 없다는 주장과 무고한 자녀를 엄마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Belknap, 2007). 여성 수용자가 신청하면 4살까지의 자녀는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 거주할 수 있는 “풀타임 참여”와 5살에서 12살의 자녀는 주말과 휴일 동안 거주 가능한 “파트타임 참여”로 구성되었다. 2014년에 Brennan은 그간 프로그램 참여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시점인 2012년에 단 1명만이 풀타임 참여를 하고 있었으며 2009년부터 파트타임 참여자는 없었다.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시행 첫해인 2001년이며 총 8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참여자는 계속적으로 감소했다. 참여자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08년에 Public Safety Canada가 참여 여성 수용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에 있었다(Brennan, 2014). Brennan(2014)은 이러한 결정의 바탕에는 정부는 여성 수용자를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도소는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곳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교정국은 2014년에 어머니 수용자들을 위해 추가적 공간을 확보해서 본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Shingle, 2014).

연방교정국과 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re(NCPC)는 함께 예산을 지원해서 Big Brothers Big Sisters(BBBS)를 통해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5개 지역에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멘토링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한 PRA Inc.는 멘토링은 프로그램은 그 목표한 바대로 자존감 상승, 미래 계획, 의사결정 능력, 행동, 학업성취도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냈다고 보고하였다(McCormick et al., 2014).

나. FEAT (Fostering, Empowering and Advocating Together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FEAT(Fostering, Empowering and Advocating Together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¹⁰⁶⁾는 온타리오에 있는 5만 명의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다. FEAT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가족방문(Family Visit), 방과 후 학교(After School), 포레 멘토링(Peer Mentorship Project), 역량증진 수련회(Empowerment Retreats)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방문(Family Visit): 가족이 교도소 방문을 할 때 어른은 35달러,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아동들에게는 간식과 활동, 장난감이 제공되며, 멘토들이 동승해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상담도 제공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부모와 만났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부모에게 편지도 쓰고 이는 부모에게 전해진다.
- 방과 후 활동(After School Program): 6~9세반, 10세~12세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 사회적 기술 개발, 학교에서 집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선택하는 법을 학습하기 등을 목표로 한다. 미술활동,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 팀 활동,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수다시간 등에 참여하며, 매주 멘토와 다른 친구들과 모두 모여 영양가 있는 가정식 저녁 식사를 만들어 즐기는 시간도 갖는다. 학업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튜터들의 도움을 받아 학과공부와 숙제를 함께 한다.
- 포레 멘토링 프로젝트(Peer Mentoring Project): 가족의 구금을 경험한 수용자자녀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 인지적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리더십, 멘토십 기술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구축하고, 자존감을 강화시키며, 학업성취도를 높이고자 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롤 모델도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젝트는 토론토의 구금률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되며, 1주에 한번 세 시간 프로그램이며, 아동(6~9세), 청소년(10~14세), 10대(15~19세) 반으로 구성된다. 팀 단위의 활동, 게임, 토론, 요리교실,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배양하고 사회성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Global and Mail”에 소개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강화되었으며, 고립감이 감

106) <http://featforchildren.org/>

소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이 안정되고 학업능력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 역량증진 수련회(Empowerment Retreats): 매년 가을 주말에 열리는 4일간의 수련회로서 7~11세, 12~15세, 16~19세 반으로 구성되며, 소녀들에게만 제공된다.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면서, 팀 활동을 하고, 카누 등의 스포츠 활동, 요리, 낚시 등을 즐기게 된다. 성인 여성 멘토들의 지지를 받으며 동료들과 건강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Let's Chat 시간에는 부모의 구금으로 인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자체 평가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녀들이 자존감, 자신감, 사회적 기술, 리더십이 강화되었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감소하고, 대응전략이 개발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소사이어티 (Elizabeth Fry Society)

엘리자베스 프라이 소사이어티¹⁰⁷⁾는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로 캐나다에서는 1939년 밴쿠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여성 범죄자, 수용자, 출소자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현재 캐나다 내에 아틀란틱, 온타리오, 브리티쉬 콜롬비아, 퀘벡, 프레이리, 밴쿠버 지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소사이어티의 밴쿠버 지부는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Just Kids¹⁰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봄/여름 방학 1주간 진행되는 “Blue Sky 캠프”에서는 6~15세의 수형자 자녀들이 서로 어울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숙련된 카운슬러들이 수형자 자녀들에게 상담과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다. 15세가 넘는 수용자자녀들은 상담사 훈련과정을 거쳐서 본 캠프에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Saturday Club에서는 6세~15세 아동들이 다른 수용자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시간을 보내며 위의 봄/여름 캠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활동이 제공된다. 크리스마스 때는 산타와 함께 수용자자녀들이 점심을 함께 하는 행사가 제공된다.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The Storybook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에서 제공된 연령에 맞는 동화책을 가지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부모가 동화책을 녹음하여 자녀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Alouette 여성 교도소, Fraser Valley 교도소, Surrey 구치소에서 프로그램

107) <http://www.caefs.ca/>

108) <http://www.just-kids.ca/>

이 운영되고 있다.

라. 캐나다 가족과 교정 네트워크 (Canadian Families and Corrections Network)

“캐나다 가족과 교정 네트워크(Canadian Families and Corrections Network)¹⁰⁹⁾”는 1992년에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단체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을 제시하며, 수용자 가족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가이드 북을 발간하는 것이다. 특히, 2005년에는 Time's Up: A reintegration toolkit for families 가족을 위한 재통합 툴킷”을 발행하고 가족 구성원의 체포와 구금의 상황에서 가족이 어떻게 위기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교도소에 간 상황에 대한 아동 도서를 출간하여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Millhaven, Joyceville, Collins Bay, Bath, and Grand Valley 등 네 개의 교도소에서 Visitor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 방문을 온 가족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수용자 가족들이 방문 전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방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향후 더 많은 교도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 존 하워드 소사이어티

1867년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인 존하워드 소사이어티¹¹⁰⁾는 캐나다 전역의 60개 지역사회에 지역사무소가 있다. 주로 수용자와 출소자 지원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수용자와 출소자 가족을 위한 사업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자료집을 통한 정보제공, 교도소 방문지원, 수용자 자녀들의 모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Caring for Families 프로젝트”를 통해 수용자 가족들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후 “The family Guide 2013”을 출간하여 수용자 가족들에게 재판과정, 교정시설 내 생활, 출소 후 지원, 네트워크,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도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 불어 등 6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교도소를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Sylvia’s Family House”를 통해 프레이저 벨리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방

109) <http://www.cfcn-rcafd.org/#new>

110) <http://johnhoward.ca/>

문 은 수용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레이저 벨리 지역에서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동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바. 프리즌 펠로우십 캐나다 (prison fellowship canada)

1976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용자 지원단체인 Prison Fellowship의 캐나다 지부도 198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주 사업은 수용자와 출소자 지원이지만 수용자자녀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Prison Fellowship이 크리스마스에 실시하는 수용자 지원 사업은 “Angel Tree” 이다.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모금활동을 통해 수용자자녀 한 명 당 최대 30달러의 선물을 구입하여 구금된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총 2,400명의 수용자자녀에게 선물이 전달되었다.

3)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및 이행현황

(1) 국제인권규범의 분석

① 아동권리협약

가.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90. 9. 2.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1. 12. 20.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나. 수용자자녀 관련 조항

수용자자녀는 다른 아동이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하며,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부모의 상황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제2조), 공공 또는 민간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제3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제4조)’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자녀는 ‘부모의 수용’이라는 사유로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 수용자자녀에게는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제7조),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경우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제20조)가 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받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수용 동일 경우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아동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시할 자유 및 사법적·행정적 절차상 진술의 기회 부여(제12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제16조), 교육받을 권리(제28조) 등을 밝히고 있다.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의 자녀들” 일반 토론의 날 권고¹¹¹⁾

가. 배경

아동권리협약 제4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 9. 30.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하여, 협약 당사국에게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책과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포, 조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1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s for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11.aspx>, 2017. 10. 28. 확인.

나. 권고사항 분석

가) 구금의 대안

당사국은 주된 양육자에게 선고를 내릴 때 가능할 경우 비구금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회복적 정의의 원칙 고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고려 하에 개별 사례 별로 구금에 대한 대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부모의 수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국은 경찰, 법원, 수용시설 직원 등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자녀 앞에서 구속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체포모범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부모의 체포로 인한 트라우마를 강조).

다) 아동 발달과 차별금지의 권리

수용자자녀들이 다른 아동들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수용자자녀는 낙인으로 부터 보호될 권리, 부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발달을 위해 가족 생활과 사회적 환경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므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수용시설에서 지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동이 수용자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아동들에게 건강, 교육, 식품, 놀이터를 포함하여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감금 상황의 제약 범위 내에서 수용된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 수용된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정기적으로 수용자 부모와 직접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

부모가 강력범죄자인 경우, 자녀를 사회적 낙인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등 수용자자녀의 권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마) 가족 문제

(가) 수용된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의 경우

유아기의 부모-자녀 간 접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이 부모와 구금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지는 사법심사과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선택권 보장). 구금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다른 가족과의 접촉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및 국적 등의 권리의 보장도 중요하다.

(나) 수용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용된 부모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결합할 수 있는 구금시설 밖에서의 방문도 허용되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선고 사양형에 아동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모를 아동이 면접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구금시설의 접근성), 당사국은 면접을 위한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바) 아동의 의사 존중

당사국과 기타 관련 기관은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대안적 보호

부모와 관련된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아동의 거처나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안적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것을 권장한다.¹¹²⁾ 판결과 재판 전 대책을 강구할 때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대안적 보호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 재정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당사국이 수용자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박탈하는 결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자) 정보 공유 및 실태 파악

수용자자녀는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의 상황(행방)에 대하여 진실을 알 권리와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수용된 부모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수용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동과 따로 지내는 (남겨진) 아동에 대한 실태를 기록하고(특히 초기 형사

112) "Guideline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UN General Assembly 64 Session, A/RES/64/142, 2010. 2. 24.

사법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

차) 대체 통신 수단

당사국은 기술이 허용하는 한 수용된 부모와의 전화, 화상회의 등 정기적인 접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카) 전문가 교육

당사국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들과 접촉하는 경찰, 검사, 판사, 구치소·교도소 직원 등 모든 전문가 및 교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전문가들이 수용자자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의 교육은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교육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예를 들어, 체포를 하는 법집행전문가들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대한 교육 실시). 전문가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국제인권규범의 이행현황

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행현황 비교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10개 국가의 이행현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수용자의 자녀들” 일반토론의 날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표Ⅶ-7>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Ⅶ-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자녀 권고사항에 대한 여러 국가의 이행현황 요약¹¹³⁾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자녀 관련 내용	대한 민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탈 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 웨이	일본	중국
체포~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							
구금시설 방문에 관한 권리, 구금시설 조건				○	○	○	○	○	○		
접촉·연락을 지속할 권리		○	○	○	○	○	○	○	○	○	

113) 각 국가별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 △ 등으로 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자녀 관련 내용	대한 민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탈 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 웨이	일본	중국
차별금지		○									
아동의 의사 존중		○		○	○			○			
대안적 보호	○		○	○	○	○	○	○	○	○	△
재정지원	○		○	○	○				△		△
정보공유 및 데이터 구축		○				○			○	○	△

②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행현황 분석

가. 대한민국

가) 대한민국 제3·4차 국가보고서(2008)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고서 중 수용자자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경우, 그룹홈이나 가정위탁보호 등 대안양육이 확대 제공되고 있으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아동상해보험료, 전세자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190항). 수용자자녀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수용되어 부모와 분리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대안양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아동, 빈곤·실직·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위탁, 복지시설, 전문치료 및 영양소 등의 입소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234항).

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2011)

위원회는 아동 관련 법령 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본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2항).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적용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33항), 수용자 자녀 역시 관련 절차에서 그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다.

나. 영국

가) 영국 제3·4차 국가보고서(2008)

영국 정부는 Every Child Matters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아동이 환경에 관계없이 지원적이고 양육적인 가정환경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211, 212항).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296항). 다만 국가보고서에서는 수용자자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나) 영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2008)

위원회는 ‘수용자자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수용자자녀의 실태에 대해 우려하면서(44항),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자자녀가 그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낙인과 차별을 방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45항).

다. 캐나다

가) 캐나다 제3·4차 국가보고서(2012)

캐나다는 수용자자녀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차별금지(39항), 아동 관련 법규와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중요한 고려사항(40항)이라는 일반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포함하여 컨퍼런스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 정부는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협약을 포함한 협약 조항에 대한 두 포럼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캐나다 정부는 University of Victoria, British Columbia 대학교의 아동 권리와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소의 전문가를 위한 아동권리교육(CRED-PRO)을 통해 아동 권리 전문가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CRED-PRO는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건강 정책, 훈련 및 서비스에 대한 아동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갖고 있다(44항).

나) 캐나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2012)

위원회는 캐나다 정부가 모든 아동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배경별로 데이터를 분류하도록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성이 있는 특수

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1항).

라. 호주

가) 호주 제4차 국가보고서(2011)

호주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중 ‘수용자자녀(Children of imprisoned parents)’ 항목을 따로 두고 있었다(124-125항). 국가범죄예방 프로그램(the National Crime Prevention Program)의 지원을 받는 호주 정부의 부모 프로그램에 의하면, 수용자자녀는 그의 부모와 보다 긴밀한 관계(meaningful relationship)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둔 수용자에게는 유아발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금된 부모와 만나기를 원하는 자녀에게는 교통편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자녀와 그 가족들 간의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돕고, 부모와 가족들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한다(124항).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호주의 6개 주와 노던 테리토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새 교도소가 운영될 예정인 호주 수도 특별구에서도 실시될 예정이다(125항).¹¹⁴⁾

나) 호주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2012)

호주 정부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위원회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호주 원주민 여성들이 교도소에 지나치게 많이 구금되어 있어서 그 자녀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용자가 출소 후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사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72항).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호주 정부에 아래의 네 가지 사항을 권고한다(73항). 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법 및 행정 조치를 검토하여 수용자자녀가 가족 구성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분리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는 예방 및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부모 체포 당시 아동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

114) 호주는 호주 수도 특별자치구(ACT), 노던 테리토리(NT) 등2개의 특별자치구, 뉴사우스웨일즈(NSW), 퀸즐랜드(QLD), 남호주(SA), 태즈메니아(TAS), 빅토리아(VIC), 서호주(WA) 등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프랑스

가) 프랑스 제3·4차 국가보고서 (2007)

프랑스 국가보고서에서는 구금된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수용 가능한 생활 조건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부모의 구금을 명령할 수 없다(299항). 구치소는 가족들이 가장 적절한 조건에서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하고(301항), 프랑스 법령에 따라 구금된 여성들은 18개월까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302항). 다만 현재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도소는 25곳 뿐이며, 구금된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양육하고 있는 18개월 이하의 아동들은 약 50명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특히 가족 방문 공간을 도입하고 있으며, 3시간 동안 교도관들의 직접적인 감시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304항).

국가보고서에서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자원 봉사 활동이 수용자자녀를 위한 교도소 행정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다(306항). 예를 들어 공식협회 FREP은 가족 방문을 지원하고, 구금된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도 실시한다(307, 309항). 법무부는 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2004-2006년 동안 약 30,000유로를 지원하였다(311항).

나) 프랑스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대안적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의 접촉 부족과 가족과의 만남의 기회, 가정과 기관 간 지리적 거리, 아동의 의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61항), 아동의 견해를 반영하고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62항).

바. 이탈리아

가) 이탈리아 국가보고서 (2003)

이탈리아 정부는 부모의 구금으로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 특히 수용자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도소 제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신부,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수용자에게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284항). 나아가 정부는 4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에

제도 위 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낮에는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은 3세가 될 때까지 수용자인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다(285항).

한편 대통령령에서는 가족의 유대에 교도소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교도소는 수용자와 자녀의 접촉 횟수를 늘리거나, 요청에 따라 수용자와 자녀가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이탈리아 정부는 구금 지역과 협력하여 통계자료를 발간한 바 있고(286항). 수용자가 어머니인 경우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8항).

나) 이탈리아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구금 시설에서 어머니와 수용자자녀의 관계 보호에 관한 입법을 환영하면서도, 그 실행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살고 있는 아기, 가택연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어머니와 헤어질 위험이 있는 자녀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55항). 위원회는 협약 제9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용자자녀의 가정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56항).

사. 스위스

가) 스위스 제4차 국가보고서(2007)

스위스의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법령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임신 또는 막출산을 마친 수용 여성이 자녀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일정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180항). 예를 들어 취리히 주에서는 수용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함께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고, 지역보육센터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나) 스위스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취리히 주에서 수용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한 점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수용자자녀의 수와 실태, 부모와 수용자자녀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52항). 이에 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수용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보장하고 정기적인 방문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53항).

아. 스웨덴

가) 스웨덴 제5차 국가보고서(2011)

스웨덴의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권리 강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확인하고, 육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실시한다(207항). 구체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수용자가 자녀와 우호적으로 관계 형성을 돕는 양육과정을 교도소와 보호관찰국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209, 326항). 예컨대 스웨덴의 교도소 중 일부에서는 2주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가정생활 및 양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스웨덴 정부는 특히 위 제도가 장기 수용자들이 가족과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9항). 2010년 제정되고 2011년 발효된 구금과 수감에 관한 법률에서는(Act on Imprisonment, Act on Detention) 수용자가 유아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회 복지 기관과 필수적으로 상의하여야 한다(325항).

나) 스웨덴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사회복지법과 교육법에 따라 아동의 청취권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거주 방문, 양육권 등에 관한 부분에서 아동의 청취권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19, 20항).

위원회는 여러 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그 자녀의 방문을 돕기 위하여 ‘방문 아파트(visiting apartment)’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취한 다양한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경제적인 제약으로 방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한편, 장거리로 인해 방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방문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35항).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가 아동친화적인 방문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장려하면서, 수용자자녀가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6항).

자.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제4차 국가보고서(2008년)

노르웨이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시작된 수용자에 대한 양육 상담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8주 동안 4~7명의 수용자들이 만나게 되며, 정부는 모든 구금 시설에서 이러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182항). 수용자의 휴가 쿼터를 연장하거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데에 수용자의 자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하여 연장된 전화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정부는 수감된 부모와 자녀의 접촉을 위하여 방문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빈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특히 부모의 수감 장소를 정하는 데에 아동의 거주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의 방문이 아동친화적인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수용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몇몇 교도소에서는 자녀의 방문이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 아파트(visiting apartment)’를 설치하였다(182항).

나) 노르웨이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아동과 부모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32항), 수용자에 대한 자녀의 방문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부모의 방해가 있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동복지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아동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33항).

차. 일본

가) 일본 제3차 국가보고서(2009)

일본 정부는 아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서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8항). 다만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강제 추방, 구류, 구금 등의 사유로는 부모와 아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①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서 안 되고(278항), ②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282항), ③ 분리된 부모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283항), ④ 체포·구금·국외 추방·본국 송환·사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284항)는 원칙을 서술하며, 제1·2

차 국가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 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는다(1차 국가보고서 123항).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도(道) 정부가 친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1차 국가보고서 125항).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면접교섭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일본 행형법 45조·46조에 의하면 수형자는 가족들과 면접교섭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1차 국가보고서 128항). 분리된 부모의 소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는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특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그의 소재를 친인척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문맹인 경우에는 교도소 직원이 대신하여 서신을 보낸다. 구금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즉시 사망 사실이 알려진다(1차 국가보고서 129항). 다만 이는 모두 수용자의 권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수용자자녀’의 관점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지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후견인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아동은 위탁 가정이나 보호 시설에 보내질 수 있다(1차 국가보고서 138항).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중 4~5%는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보내진다(1차 국가보고서 140항). 대안적 보호를 제공할 경우, 최대한 아동에게 ‘원가정과 같은 환경(a home environment)’을 제공하여야 한다(2차 국가보고서 245항).

일본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아동 보조금(Child Allowance), 아동양육 보조금(Child-Rearing Allow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위하여 자녀양육 보조금(The Child-Rearing Allowance)을 지급받을 수 있다(57항). 여기서 한부모가정은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 아동의 분리로 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수용자자녀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나 통계는 따로 없지만, 지급 자격에 의하면 아버지가 수용된 아동을 어머니나 법적 후견인이 양육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VII-8 일본의 아동양육 보조금 개요¹¹⁵⁾

보조금 지급 자격	아버지가 따로 살고 있으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그 아동의 어머니나 법적 후견인에게 지급
금액(월)	아동1인: 9,880~41880엔 아동2인: 5000엔 추가 아동3인: 1인당3000엔 추가
보조금을 받는 아동 수	911,852명

나) 일본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2010)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대안적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가정에 기반한 보호 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염려하면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계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52-53항).

카. 중국

가) 중국 국가보고서(2012)

중국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수용자자녀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정환경 및 대안적 보호 등을 서술하고 있는 목차(V. The family environment and substitute care)에서 부모와 분리된 아동, 가족 재통합 등을 다루고 있기는 하다(C. Separation from parents, D. Family reunification, 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 Children deprived of family environment).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수용자자녀의 권리나 그에 대한 보호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부모와 분리된 아동을 다루고 있는 목차(C. Separation from parents)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 제16조가 “업무’나 ‘그 밖의 사유’로 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부모가 그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다.¹¹⁶⁾ 이는 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경우에 관한 법 내용을 서술한 것일 뿐, 수용자자녀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① 학교 교육 시스템과 ②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91, 92항). 특히 학교에서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경우, 인적 사항과

115) 2006. 3. 31. 기준

116) 90. Article 16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provides that when parents cannot perform their duty of guardianship with respect to minors because they work elsewhere or for other reasons, they shall entrust such duty to others.

연락망을 기입한 자료를 만들어 아동과 부모의 상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에게는 정신건강교육, 심리 상담 클리닉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감정적인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숙련된 학교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아이의 집을 방문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제도는 모두 부모와 분리된 아동(children left behind)에게 제공되는 것인데, 이에 수용자자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에 가정 재통합 등의 목차에서도 수용자자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나) 중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2013)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9항). 또한 위기 가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다(53항). 특히 위원회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에 가족에 기반한 양육보다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지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대안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거나 가족에 기반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한다(54항).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수용자자녀 역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 요약 및 제언

국내·외 제도정책과 국제인권규범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¹¹⁷⁾

1) 수용자자녀(가족) 정의/지원대상자의 발굴/부처 간 협력 및 컨트롤타워 구축

국내 관련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의 지위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수용자 가족은 오직 수용자를 관리하고 수용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

117) 정책제도 제언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지원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다양한 민간단체의 지원현황 및 활동내용은 본문 참고).

를 통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의 자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법제도는 전무하다. 우선, 수용자자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수용자자녀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수용자 및 그 가족 지원과 연관된 부처인 법무부(형집행법 등), 보건복지부(아동복지법 등),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교육부(초·중등교육법 등), 행정안전부(경찰), 사법부(법원)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전제로 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수용자자녀(가족)를 대상으로 특화한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수용자자녀의 사례 발굴과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수용자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용자자녀 보호에 관한 이슈도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최고의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의 체계 속에서 고민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수용된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 및 접견권 보장/아동보호체계와의 유기적 연결

아동은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 아동발달에 필요한 가족생활과 사회적 환경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수용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수용자를 ‘출산한 여성’에서 ‘모든 부모’로 확대해야 한다. 남겨진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아동의 배치에 관하여는 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고려하되, 공적인 체계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수용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남겨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를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수용이 개시되는 각 단계에서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어 정책의 기초로 활용되고, 아동보호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정부의 안정적 재정 확보/정부의 자료수집(실태조사)과 연구 및 정책개발/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이는 국가이다. 미국은 2006년 수용자자

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녀와 가족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2006)에 의하여 명문화하고, 소관 사무를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 위임하였다. 법무부 사법제도실(Office of Justice Program)은 2017년 처음으로 체포수칙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는데, 수용자자녀 지원 예산이 연간 약 500만 달러(약 56억원)에 달한다. 법무부 사법통계국은 수용자자녀와 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무 및 법무부의 수용자자녀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of 2007), 수용으로 인하여 자녀가 15개월 이상 제3자에게 위탁 양육되었다면 수용자의 양육권은 박탈당할 가능성에 처하게 되는 입양 및 안전한 가정을 위한 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체포~수용까지 형사절차에서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규정’과 같은 다양한 주법이 있다. 수용자자녀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생존’에 관해서는, 임신부인 수용자를 지원하는 등 양육과 주거 및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 (2) ‘보호’에 관해서는, 유아-미취학아동-초등학생-십대와 같이 아동의 연령 단계에 따른 가정과 학교생활, 수사 및 재판절차에 관한 지원 (3) ‘발달’에 관해서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학업, 심리·신체·사회적 건강을 위한 지원 (4) ‘참여’에 관해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수용된 부모를 방문하고 면접할 권리,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는 수용자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은 비록 아동권리협약에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수용자자녀/가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수용자의 자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그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수용자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4) 지방정부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개발 및 권고/경찰의 훈련 및 교육/법원의 비구금조치 및 양형 고려

영국의 수용자자녀 지원의 골격은 정부가 마련한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 : 아동을 위한 변화(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라는 정책 제언이며, 아동법(Children’s Act)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계획에 따라 잉글랜드 가운데 5

개의 지방정부는 수용자자녀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용자자녀의 상황과 필요를 조사하고 28개의 권고안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가족위원회’는 이 권고안에 따라 경찰이 범죄자 체포 시 미성년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수용된 어머니와 자녀의 분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R (on the application of Stokes) v Gwent Magistrates Court], 유일한 양육자에 관한 형을 선고할 때 2살 자녀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도 했다(R v Rosie Lee Petherick). 여성 수용자는 수용시설에서 출산할 수 있고, “Mother and Baby Unit(MBU)”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를 18개월까지 일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 가족의 방문과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및 상담, 접견 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자자녀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경찰로 하여금 수용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생후 18개월까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일상적인 양육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이익에 충실한 법원의 판단 원칙은 참고할 만하다.

5) 경찰의 아동보호국 신고의무/수용된 부모와 생활/교정시설 직원 교육/양형에 고려/수용자자녀 돌봄에 관한 법원의 결정

호주는 수용자자녀(가족)만을 구별한 법이나 제도는 없으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빅토리아 주 및 뉴웨일즈 주의 경찰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부모가 구금 상태에 처할 상황에서 자녀를 돌볼 양육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뉴웨일즈 주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에는 ‘가족과 부양할 자녀의 어려움’을 고려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미성년자녀의 돌봄에 관한 사항은 아동법원(Family Division of Children’s Court)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 교정국은 각 여성 수용자와 자녀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5세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Mothers and Children Program”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교도소에서 아동친화적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은 부모가 구금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한다. 특히 아동법원이 주목할 만한데,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적절한 양육자가 없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관하여 명령(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부모의 수용으로 남겨진 자녀를 위해 아동보호체계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례이다.

6) 아동친화적인 접견/수용된 부모와 생활/경찰의 아동복지기관 통보의무

캐나다 역시 수용자자녀(가족)만을 특화한 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대부분의 지원과 서비스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과 지원은 교정단계와 경찰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교정국은 “개인가족방문프로그램(Private Family Visiting Program)”을 실시하여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시설에서 두 달에 한 번 3일 간의 접견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 수용자는 “엄마-자녀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을 통해 자녀와 거주하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방교정국은 “Big Brothers Big Sisters(BBBS)”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도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경우, 경찰은 지침에 의거하여 부모의 체포 후에 아동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아동복지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감 시설이 아닌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무려 격월로 3일 간의 접견을 보장하는 점과 남겨진 아동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아동복지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한 경찰 지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안정적인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7) 국제인권규범의 실천/수용자자녀(아동)의 최우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마지막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아동권리협약 가운데 수용자자녀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책과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 권고사항을 분석하였다. 수용자자녀는 다른 아동이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을 보유하며 동등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포, 수사(조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영국, 캐나다, 호주), 서유럽권(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북유럽권(스웨덴, 노르웨이), 아시아권(중국, 일본)에 걸쳐 10개 국가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의 자

녀들” 일반토론의 날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의 권고사항과 다른 국가들의 이행현황은 우리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의 방향은 수용자자녀(아동)의 이익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수용자의 자녀들” 일반토론의 날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형사절
차 단계에 따라 수용자자녀 정책 제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VII-9 형사절차 단계에 따른 수용자자녀 정책제안 정리

단계	형사절차 단계 별 제안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문가 교육 및 훈련 제공: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들과 접촉하는 경찰, 검사, 판사, 수용시설 직원 등 모든 전문가 및 교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전문가들의 교육 및 훈련 제공,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 실시(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아동권리협약 필수 교육) ◦ 실태 조사 및 정책계획: 수용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동과 따로 지내는(남겨진) 아동에 대한 실태 기록, 수집된 기록 바탕 아동 지원 ◦ 아동의 권리 존중 모니터링 실시: 체포 순간부터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포함한 법 집행관 등 법 집행과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수용자자녀(아동)의 권리를 존중 이행 여부 모니터링
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체포를 하는 법집행전문가들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교육 실시 ◦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체포모범사례 발굴 ◦ 체포 시 자녀 현황 파악
조사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자녀 실태 파악 및 기록 : 특히 초기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수행 필요하고 중요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 고려 ◦ 강력범죄자 부모가 아동에 미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검토 및 연구 ◦ 자녀의 접견이 수용된 부모의 진술·행동유도 압력수단 사용 금지 내지 일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금지
판결 (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양육자 선고 시 비구금조치의 고려(회복적 정의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 개별 사례 별로 구금의 대안 고려(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 ◦ 부모의 판결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재판에서 고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행방에 관한 아동의 정보접근의 권리 존중 ◦ 양형에 자녀(아동) 고려

단계	형사절차 단계 별 제안	
	함께 사는 아동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수용시설 거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 유아기의 부모-자녀 간 접촉의 필요성 고려(부모에게 양육될 권리) ◦ 수용된 임신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지원: 권리로서 보장, 형선고와 기타 결정들은 모유 수유를 위한 최적의 기간 고려 ◦ 구금시설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 및 국적, 체류자격 등 권리 보장 ◦ 건강, 교육, 식품(영양), 놀이터를 포함한 충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 부모로서의 역할 완수 위한 수용된 부모 교육 등 지원 ◦ 아동의 수용시설 밖 비수용가족과의 접촉권 보장
수용	남겨진 아동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견권 보장: 정기적으로 수용된 부모와 직접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아동의 존엄성과 개인정보보호에 적합한 방문 보장, 수용시설이 아동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면접을 위한 비용 및 이동 지원 → 외국에 부모가 수용된 경우에도 보장 - 접견을 위한 대체통신수단 마련 및 지원: 기술이 허용하는 한 수용된 부모와의 전화, 화상회의 등 정기적인 접촉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 및 관련 비용 지원 - 수용시설의 접근성: 아동이 면접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 - 아동친화적 접견실 보장 - 학교 등 아동의 삶의 다른 요소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방문 허용 및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접시간 허용 -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결합할 수 있는 구금시설 밖에서의 방문 보장 ◦ 수용기간 결정 및 교도소 이동 시 아동의 접견권 고려 ◦ 교도소 내의 아동 접견 관련 직원 및 아동 대사(ambassador) 배치 고려 ◦ 부모가 폭력범죄 내지 아동학대로 수용된 경우에는 아동의 방문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소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 수용자 가족의 낙인 방지 ◦ 지역사회의 지원과 자원 이용 및 연계

단계	형사절차 단계 별 제안
형사절차 전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의사 존중 및 고려: 부모의 모든 형사사법 절차단계, 즉 체포, 조사, 재판 및 선고, 수용,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을 포함한 각 단계 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발달과 차별금지 권리 보장: 낙인으로부터 보호, 부모와 함께 생활할 권리 및 아동 발달에 필요한 가족생활과 사회적 환경을 영위할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대안적 보호체계 보장: 부모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아동의 거처나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안적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을 보호(가이드라인 준수 권장), 아동 개별적으로 구체적 상황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자녀 및 가족의 알 권리 보장: 부모의 체포 당시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의 상황(행방)에 대하여 진실을 알 권리 및 관련 지원정책(혜택)을 알 권리 보장,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수용된 부모 관련 정보 제공 필요 → 정보의 제공은 아동친화적 방법으로 아동에게 적합한 언어 및 형식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 보장: 부모가 강력범죄자인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 미디어의 책임 명시,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준수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에 관한 결정의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당사국이 수용자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박탈하는 결정은 아동 이익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VIII



결론 및 제언

1.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제도 및 정책 방안
3. 맺음말

1.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방안은 가족 중심적 정책, 공동체 중심적 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수용자자녀 인권보장이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수용자자녀 지원정책의 중심에 “가족”이 위치하는 것과, 사회연대와 유대를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¹¹⁸⁾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부처들과 민간의 협력을 결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해당 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들, 민간전문기관들, 학계 등 네트워크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가족과 교도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형사사법기관과 민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형사사법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반관반민의 특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일종의 TF팀)을 두고, 이 중간지원조직이 컨트롤타워의 지휘를 받아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성과 공공철학을 가진 반관반민의 조직으로서 기존의 법무부와 형사사법기관 중심, 또는 사회복지조직 중심으로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던 개별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일정 부분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현존하는 기금(복권기금, 범죄피해자지원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 및 기업의 기부금 등 다원화된 재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민간전문기관 및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 성원들을 서비스전달체계에 구성하는 것은 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공동체 중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18) 가족중심정책은 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과 실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DiZerega & Verdone, 2011). 이를 범죄통제정책에 적용하면 범죄인 또는 수용자에 한정하던 기존의 형사사법 정책과는 달리 범죄인 및 수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족 및 가족 지원자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신연희, 2014).

2. 제도 및 정책 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내에서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해 정부부처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출발점이 된 2011년의 “수용자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업무협약”은 부처별로 수용자자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부처별 협약사항들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었고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직하지 않은 까닭에 현재까지 부처별 이행실태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¹¹⁹⁾

이하에서는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부처별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용자자녀의 인

119) 2011년의 “수용자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업무협약”에 참여하였던 부처들(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과 서울대학교가 당시에 체결하였던 협약사항들을 점검해보았다.

먼저 법무부는 자녀 및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수용자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들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던 “가족사랑캠프”, 가족접견실을 마련하여 아동친화적인 접견환경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상담의 부재, 자녀들의 접견권 보장, 위기에 처한 수용자자녀 발굴 및 연계의 미흡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경찰청은 부모 체포과정에서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하고 일선 경찰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실행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은 경찰의 직무상 권고사항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경찰의 직무규칙에 당면규정이 되도록 하는 일,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한 경찰관 교육, 아동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일 등이 경찰의 역할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협약사항으로 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지만 법무부와 복지부의 연계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용시설과 연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자녀들을 발굴하는 일, 이러한 아동들에 대해 가정위탁, 시설위탁,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과학부는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기로 하였으나 후속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분명하다. 아이들의 학업지원, 학습멘토링, 상담지원, 교육비지원,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 책자를 통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녀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대상자로서의 선정됨으로 인한 낙인방지,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교사, 일반교사 등에 대한 교육, 일반학생들의 인식개선 등에 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서울대학교는 재학생(멘토)과 수용자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수용자자녀 멘토링 프로그램은 몇 개 대학으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다. 멘토들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멘티 연계체계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권상항에 관한 본 연구결과, 수용자자녀의 인권회복을 위한 지원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다양한 공적기관들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은 양육, 주거, 교육, 심리, 복지, 보호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핵심내용은 자녀들의 살아가는 가정, 학교 등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가 학령기 아동이므로 교육부도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체포 시 목격과정이나 접견 시 받았던 충격 등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아동 친화적인 접견의 필요성도 매우 큰데 이러한 요인은 이들의 부모 즉, 부모의 수사 과정이나 수감 상황에서 발생 되었으므로 경찰과 법원이나 교정본부가 속해있는 법무부 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절에서는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도출된 아동 권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각 부처별 지원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형사절차 단계인 예방, 체포, 수사, 재판, 판결, 수용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업무에 맞추어 제안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부모의 수용 단계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지원의 내용에 따라 수용자자녀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자녀지원과 관련된 부처는 아동지원과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사법부, 법무부, 교육부 순으로 정리하였다.

(1) 보건복지부¹²⁰⁾

① 수용자자녀를 특수취약계층 아동이나 위기가정 아동으로 지정

본 조사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수용자자녀수는 일일 평균 22,000명이고 연간 54,000명으로 추산되었다. 우리나라 아동인구의 0.49%가량 된다. 해마다 5만 명의 아동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수용자자녀들의 인구현황을 보더라도 이들을 우리사회의 특수취약계층 집단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의 네 명 중 한명은 취학 전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 역시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수용자자녀들은 전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특히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120)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담당과장은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 2차 아동종합정책계획에 수용자자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이며, 아동복지지원시스템 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면 취약아동 및 방치된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녀들은 빈곤을 포함하여 양육자 변경, 거주지 부재,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기능과 구조적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를 특수취약계층 아동이나 위기가정 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아동에 대한 정책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와 지원내용을 포함시키고 아동·가족에 대한 모든 실태조사 항목에 수용자자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후 정부의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수용자자녀 및 수용자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각 기관 기구에서 수용자자녀 권리 존중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② 보호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정비

수용자자녀들은 대개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도 이미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와 분리되는 시점인 수용 개시 시점(통상 경찰의 체포 단계)에서부터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정과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한 자녀들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일의 시작은 보호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 교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시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한 일이다.

③ 아동보호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아동 재배치 고려

본 연구에서도 부모 없이 방치되어 있다가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는 아이들도 존재하고 친인척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임하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기도 함을 확인하였다. 아이들은 돌봐줄 어른이 없이 홀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도 했고 보호자 없이 빈곤한 생활을 하다가 학업을 그만두고 비행에 빠지기도 했다. 부모 수용 후 미성년 자녀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된다면 아동보호시스템에 신고하고 이후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심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후 아동보호기관은 남겨진 아동 배치에 대해 공적으로 개입하고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들만 집에 있는 경우 누가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외국의 경우 그 신고를 경찰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경찰단계에서 경찰이 직접 하거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연결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④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가정 지원

수용자자녀의 보호권 및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양육자를 비롯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되었다(법무부, 2014). 아동들은 가족의 기능 상태나 양육자의 특성에 따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자녀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모의 수감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당수의 아동들이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용자자녀는 남아있는 친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74%), 다음은 조부모나 친인척, 친척 외의 사람과 살게 되는 경우 순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한부모가정이고, 후자는 위탁가정(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있는 다른 한쪽부모(친생 부 또는 모)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기능지원, 또는 양육자 지원의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혼자서 자녀양육과 생계부양, 거기에 수감된 배우자 수발에 이르기까지 일인다역의 많은 짐을 진 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정은 수용자자녀 가정의 다수로 대개는 모가 가장이 된다. 어린 자녀를 돌보며 일해야 하는 여성에게 일자리 사업이나 주거지원 사업 등이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주거, 경제, 심리, 자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 발굴 및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정 기능 지원차원에서의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부모 모두와 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아동들도 있다(한부모가정에서 부모의 수감 또는 수감과 함께 부모의 이혼 등). 이 경우 대개는 조부모나 친인척가정에서 양육되게 된다. 이때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이사, 전학 등 새로운 양육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부모 수감 이전부터 함께 살았던 가정도 다수이다. 어떤 경우든 급작스럽게 닥친 가족의 사건과 아동 양육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와 빈곤 등은 양육자들을 힘들게 한다. 조부모 양육가정(대리양육가정위탁)이나 친인척이 양육하는 경우(친인척위탁가정)에 대해 수용자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육자 교육, 수용된 부모와의 접견관련 지원 등과 같은 별도의 양육지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⑤ 가정위탁제도 내 특수가정위탁 마련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양부모 모두와 분리되는 자녀, 또는 양육자가 부적절한 경우에 양육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가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친인척 외의 사람이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의 경우 수용자자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 ‘특수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 중 수용자자녀를 위탁하여 양육하는 가정위탁을 이른다. 일반가정에서 실시되는 위탁 내용 중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분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분리기간도 한시적일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일반가정위탁 내에 수용자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수가정위탁이 필요하다. 아동발달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친 가정이나 원 가정 복귀나 지원이 미흡한 일반가정위탁에 비해 수용자자녀 가정위탁제도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이지만 부모접견이나 수용자와 자녀관계 지원, 수용자 사회복귀 이후 재결합 시 아동의 가정 적응 등 가족의 회복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용된 가족과 연계를 맺고 수용자자녀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수용하고 지지해 줄 특수한 공동생활가정 등의 위탁 형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설보호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일대일 서비스가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된 부모에 대한 부모 접견이나 가족기능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자녀들이 성별이 다를 경우 함께 얼굴을 보고 유대감을 갖기도 힘든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수용자자녀에게 특화된 소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이나 대리양육가정이 도입되어야 하고 일반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대리양육가정의 복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⑥ 아동복지관련 종사자 교육

아동관련 부처 정책담당자 및 아동복지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스템 내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기관 사회복지사, 돌봄 종사자 등이 수용자자녀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연구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자녀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들을 기준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수용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수용된 부모와의 관계의 질(밀착 내지 친근한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느슨하거나 무관심한 경우,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수용 전부터 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과 자녀들의 연령 및 발달 단계, 그리고 수용된 부모와 분리된 기간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자자녀와 가족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가 발표되도록 지원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여성가족부¹²¹⁾

① 가족지원과 실태조사

현재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주로 가족과 관련된 사업, 청소년상담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수용자자녀들은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 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서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손가정 아동”에 해당한다.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에서 수용자가족을 특수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가족관계 프로그램이나 가족기능강화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특별히 취약한 가족의 역량강화사업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수용자자녀 가족, 수용자자녀의 양육자 및 보호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수용자자녀를 포함시켜 해당 지역사회 내 수용자자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②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수용자가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목하는 일, 양육자 가이드북의 제작 및 배포, 양

121)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여성가족 가족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현재 건강가정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의 홍보활동(캠페인, 리플렛 등)에 수용자자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였다.

육자 상담 등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일 등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수용자자녀 상담 매뉴얼 등이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청소년상담과는 다르게 수용자가족이나 자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가족이 수용되고 남은 가족은 수용자가족이 갖는 어려움과 위기로 인해 고통과 가족 해체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 제2, 제3의 피해자라고 불리 우는 가족들이 다른 가족의 사건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과 매우 관련이 높다. 현재 수용자 자녀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소외와 배제는 범죄인 부모와 무고한 자녀를 분리시키지 않는 가족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가족의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발생될 사회적 낙인이나 어려움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가족 중에 아동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가족정책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람직한 가족문화 조성을 통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여성가족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수용자자녀들에게 낙인을 부여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가 수용자자녀권리장전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한다. 수용자자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의 주체자로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수용자자녀권리장전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3) 경찰청¹²²⁾

우리나라 형사절차 단계에서 진행되는 결정에서는 수용자자녀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자녀와 가족을 정책대상자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수용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경찰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아동을 고려한 체포수칙 마련

부모가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의 아동이지만 부모의 체포과정을 목격하고 있었고 심층면접에서도 집안 수색과정과 소지품 압수, 부모 체포사유를 자녀들에게 고지한 점 등은 어린 아이들에게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체포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의 체포수칙과 요령에 대한 경찰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국외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제도실은 체포수칙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경찰에게 부모 체포 시 아동보호 원칙에 대한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아동권리와 수용자자녀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자자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경찰로 하여금 수용자의 가족을 보호하는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권고한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현장에서 체포할 때 경찰이 지켜야 할 준칙을 설정해야 한다.

② 아동보호시스템 연계

부모가 수용 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모가 체포 된 후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동보호시스템에 연결해 주어야 한다. 국외 자료를 살펴보면 그 첫 신고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나 스코틀랜드, 호주의 빅토리아 주 및 뉴웨일즈 주 등에서는 부모의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남겨진 아동을 확인

122)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경찰청 수사기획과 담당계장은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경찰청의 역할에 대해, “체포 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피의자신문조서 서식을 개정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범죄수사준칙과 인권규칙 매뉴얼에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아동보호체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경찰교육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였다.

하면 아동복지기관이나 아동보호국에 이를 통보해야한다는 일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자녀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 업무를 담당할 체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체포 및 구속을 수행하는 최초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단계에서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부모 없이 미성년 아동만이 수일 이상 집안에 남겨진다면 이는 방치 또는 방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업무 중 아동학대(방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및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아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경찰은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에게 앞으로 전개될 조사나 절차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수용자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자원, 국가의 지원이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시스템 연계는 경찰이 그 실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표준화된 직무 지침서를 제공받아야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경찰을 대상으로 체포 시 아동의 보호방안에 관한 내용을 임용교육, 보수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를 표준화된 직무 지침서로도 만들어야 한다. 경찰에 관련된 학교나 학과의 커리큘럼 등에 수용자자녀와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4) 사법부

재판과정 중 수용자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의 구속, 재판이 가족이나 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을 시 아동의 불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고려하여 정보접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5) 법무부

① 검찰

검찰이 직접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인권 보호를 위해 앞서 본 경찰의 체포시 지침과 동일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신문시 자녀에 관한 내용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정보를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형에 고려하고, 남겨진 수용자자녀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정보를 아동보호시스템 연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 수용되는 피의자의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성도 크다.

② 교정본부¹²³⁾

가) 아동친화적 접견시스템 조성

본 연구의 많은 곳에서 수용자자녀들이 부모의 접견과정이 무섭고 불편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등장한다. 접견과정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적인 접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텔파이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가족친화적인 교도소 환경개선’을 중요한 법무부의 업무로 선정하고 있다.

호주의 교정국은 모든 교도소에서 아동친화적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도소 직원들은 부모가 수용된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교육을 받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정본부에서도 가족친화적인 접견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시행하고 전 교도소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적인 접견실을 아동이 있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하며 성과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아동 중심의 수용자 가족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나) 접견과정 개선

본 연구결과 수용자자녀들은 부모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기도 한다. 수의를 입은 부모의 모습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부모 앞에 가로막힌 유리문, 짧은 접견시간,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힘들어 한다. 일부 수용자 가족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가도 그러한 사실에 자녀가 받을 충격을 염려하여 알리지 않고 앓다. 접견과정의 불편함은 수용자자녀의 부모에 관한 사실을 알권리와 접견권을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정본부는 수용자와 미성년 수용자자녀의 접견시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수용자자녀가 쉽게 접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가족연결을 위한 직원을 배치하는 등 가족접견의 접근

123)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담당과장은 수용자 자녀지원에 관한 교정본부의 역할에 대해, “수용자자녀를 위한 접견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친화적 접견실 확대, 가족만남의 집의 물리적 여건개선, 자녀와의 접견시에는 수용자의 사복착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보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접견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 교정기관 내 가족상담실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각 교정기관 내 수용자자녀 및 가족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용자자녀 및 수용가족들은 가족접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용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수용자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접견민원실에서도 접견신청이나 영치금을 맡기는 외에는 다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정보제공 등 별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용자 가족들은 지역사회 내에서는 가족의 수용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출 외에는 알리지 않고 있는 편이다. 그나마 교정기관에 가서는 교도관들이 자신들을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곳에 와있는 가족접견을 기다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목적과 심정으로 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장점과 수용자 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여 각 교정기관 내 가족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과 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수용자자녀 및 위기가정자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아직까지 교정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주도의 수용자자녀 조사는 실시된 바 없다. 자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국내 최초로 교정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용자자녀의 수와 그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녀의 수를 파악하고 특히 위기가정이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수용자자녀의 수를 파악하는 일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및 가족을 지원하고 출소 후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교육부

① 학교체계 활용방안 모색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논의에 학교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자녀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멘토링, 상담,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학교체계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관심도 크다. 아동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학교체계를 활용하여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의 역할을 정하기에 앞서 가정, 학교, 민간전문기관, 공적기관 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체계에서 수용자자녀임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학교체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숙고가 필요하다.

② 낙인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학교에서 부모의 수용사실이 소문나거나 알려질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되는 상처는 매우 크다. 본 연구 조사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부모 수용사실이 공개된 후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육기관 종사자와 구성원들에게 수용자자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지도방안에 대해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수용자자녀가 교사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담교사나 교육복지·학교사회복지와 관련된 담당인력이 있다면 특별한 조치가 지원되겠지만 그 역시 낙인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우 조심스럽다. 학교체계 내에서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노출로 인한 부작용인 만큼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의 발굴방법의 개발과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사실이 노출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박선영·신연희, 2012: 198).

③ 교사 및 학교종사자 교육

수용자자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개선과 아동권리보호 차원에서 교사연수나 교사 교육 등을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 수용 후 남겨진 자녀가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다는 언론보도¹²⁴⁾가 있는 후 학교나 교사의 역할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체계 내

124) 2015. 11. 11. 국제신문, “〈추적 60분〉 11일 예고-낙인에 명든 수용자의 아이들”,

에서 교사 등이 수용자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호요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④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학업을 중심으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양육환경의 불안정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수용자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외아동에 대한 출발선상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사업, 교육복지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의 체계에 수용자자녀 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박선영·신연희, 2012). 특히 현행 제도권 내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교도소 수용자 및 출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멘토링, 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제행동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어느 한 유형의 서비스에 한정하지 말고 심리·정서적 치유, 학교적응력 향상, 비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멘토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다(신연희, 2015).

(7) 지방자치단체

① 특수취약계층 아동 및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

지역사회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이다.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국가의 역할이 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관리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용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과 복지전문가들은 수용자자녀가 특수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의 아동임을 인식하고 행정지원 체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② 수용자자녀를 서비스대상자로 설정

외국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자자녀 캠프, 방과후교실 멘토링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51111.99002100821>

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수용자자녀를 우선서비스 대상자로 분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아동청소년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아이돌보미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위탁보호 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빈곤가정에 대한 수급자 선정 등 일련의 일들에서 수용자자녀를 서비스대상자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복지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이 프로그램을 제공,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상담 과정에서 정보노출 방지, 민원담당 종사자 교육

수용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위기가정 발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경찰, 교정기관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수용자 가족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찾았다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이나 민원접수를 받을 때 신원과 정보가 노출되어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상담실이나 면접실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 등에 관한 관련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

(8) 아동의 권리유형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금까지 제안된 정부와 지방단체의 역할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생존, 발달, 보호, 참여)별로 부모와 분리되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주된 과제는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분리 단계 권리 유형	분리초기단계: 수용초기 (체포 등 최초수용)	분리중기 (미결수용 및 재판기간)	수용 장기화 (기결수형자, 장기수형자)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양육자 부재시 아동보호체계와 연계체계 마련, 아동보호시스템을 통한 아동 재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초기단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 가정 지원 수용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수용자자녀를 위한 특수가정위탁제도 마련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포현장에 자녀가 있는 경우 체포 규범 마련 자녀의 양육환경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인의 자녀를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체계에서 낙인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발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자자녀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상담, 멘토링, 학습지원 수용자자녀 심리정서 상담과 치유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사실과 원인에 대한 고지(아동의 발달단계와 사건의 내용 등 면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사실과 재판과정에 관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 접견권 보장을 위한 접근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적 접견환경 조성 - 아동을 고려한 접견시간과 접견방식 마련 - 가족사랑캠프 등 가족프로그램 확대 실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자자녀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수용자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제정 각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교육 커리큘럼 개발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구축 수용 중 태어난 자녀의 양육 문제 		

2) 민간과 협력방안

수용자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주도로 실태조사나 연구 등 수용자자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수용자 지원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멘토링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나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수용자자녀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민간단체를 통해 수용자자녀를 돕고 있었다. 국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정단계나 경찰단계의 사업만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주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국가와 민간지원단체간의 협력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물론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에 지원하거나 협력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자녀와 양육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수용자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부모의 성별, 부모-자녀관계, 자녀들의 연령, 수용된 부모의 분리기간, 양육자나 자녀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완화 및 예방과 가족개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수행 되어야 한다. 수용자자녀들은 다른 일반 상담과 달리 가족의 이야기를 밖으로 드러내기 어렵다. 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따라서 수용자자녀들만으로 구성된 편안한 모임, 심리적 완화, 캠프지원, 진로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자녀의 안정된 삶은 양육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수용자 양육자만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예를 들면 자녀에게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리는 문제, 그러한 과정을 겪은 후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부모 접견지원 프로그램

민간단체들은 자녀들의 부모접견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모 접견에서 필요한 교통(거리), 비용(주유비, 숙박비, 식비 등) 등을 제공하고 국가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혼자서 먼 길을 이동하거나 혼자 부모를 접견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수용자자녀는 교도소에 있는 부모의 생활을 궁금해 할 수도 있고, 부모 접견시 발생될 수 있는 어려가지 일들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다. 자녀들에게 부모접견과 관련된 부분과 혼자 부모를 접견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등을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접견 동행사업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연희, 2017a).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접견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내야 할 것이다.

(3)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용자자녀와 접촉하고 있는 경찰, 검사, 판사, 교정기관 직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커리큘럼, 교육 매뉴얼, 안내서 등을 의미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거나 노하우를 갖춘 민간단체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국가의 연구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된 후 경찰, 법원, 교정기관, 학교, 사회복지기관, 각종 사회단체에 단계별로 접근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제작될 필요가 있다.

(4) 네트워크 및 플랫폼의 역할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민간의 역할 중 상담 및 사례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중요하게 꼽고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나 플랫폼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용자자녀 권리옹호를 위한 정책제안과 모니터 역할과 제도개선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자녀 지원 컨트롤타워가 구성되면 민간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수용자자녀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천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의견 등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관련법 정비방향

(1) 관련법 정비의 기본방향

수용자자녀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할 것인지와 해당 주무부처에 관한 논의, 기본법 제정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근거법률 및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수준

으로 관련법의 정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법률의 정비 : 기본법 제정 혹은 관련 법률 개정

수용자자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에 수용자자녀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²⁵⁾

수용자자녀의 지원을 선언하는 법률에는(그것이 기본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혹은 다른 법률이든) (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수용자자녀를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담겨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수용자자녀가 부모의 수용 절차 단계별로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리가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수용자자녀 사례를 확인하고 발굴하는 방안, (마) 멘토링이나 상담 등을 수행할 주체와 그 구체적인 내용, (바) 수사, 재판, 교정기관 관계자와 사회복지사, 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도 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책기본계획과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수용자자녀에 관한 계획과 실태조사 항목도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법들의 개정을 통해서도 수용자자녀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컨트롤타워 구축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정부와 관련 공적기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국내에서 수용자자녀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법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교정기관에서 구호차원의 일시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125)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대해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수용자자녀 인권보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아동·청소년인권법”(가칭) 제안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는데 가칭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용자자녀들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긴 하지만 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사업은 별도의 국가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 않다. 단일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을 수 있고, 아동의 문제는 가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수용자자녀들은 아동이면서 한 가족의 일원이고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동과 가족을 포괄하고 있는 법이나 정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첨가하는 논의도 가능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 체계 중 어느 한 부처나 부서에서 수용자자녀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나 단일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선적으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본다.

현재 수용자자녀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취약아동에 포함되는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처의 기능별로 모두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과 단체, 지역사회자원, 형사사법기관과 수용자가정 및 자녀를 연계할 수 있는 담당기구가 부재하기에 수용자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기관들의 기능을 결집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관료제의 분업구조 특성상 부처별로 정책적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수용자자녀들에게 상당기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지원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용자자녀를 “특수취약계층 아동”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용자자녀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TF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¹²⁶⁾

컨트롤타워와 TF팀은 취약아동보호에 대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지역사회기관들의 전문기능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및 관장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집행기구의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신연희, 2015b: 78). 집행기구는 협업시스템을 관장하고 자원을 결집시키고 이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우선 분산된 정부 내의 업무들을 조율하고 기능을 결집하는 일(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일(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형사사법 단계별로(체포단계,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재판단계, 형집행단계, 출소하여 자녀와 성공적인 재결합이 가능한 단계) 연계하는 일, 수용자자녀들이 있는 개별가정의 사례를 관리하는 일,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고 실행결

126) 집행기구의 조직에 대해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집행기구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구보다는 아동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부처 가칭 “아동정책처”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과를 평가하는 일 등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각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정비

① 체포 담당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설정

수용의 개시 단계(주로 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단계)에서 집행담당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장 집행 시 수용자자녀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녀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며, 현장에 있는 자녀가 다른 적합한 보호자나 적절한 아동보호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수용자의 자녀 유무, 자녀가 체포 현장에 있었는지의 유무, 자녀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지의 유무(예를 들어 의학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 양육자에 대한 정보 등을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이를 (수용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수용자자녀 국가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수용자자녀지원 정책은 자녀들의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형사사법기관에 행해지는 공식적인 조사에 수용자자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발간되는 어느 자료에도 미성년 자녀들에 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신연희, 2015b: 79).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경찰청의 “범죄통계”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감”,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서도 자녀의 실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전무하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정보는 수집되고 있지 않고, 설령 수사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것이 교정기관에 전달되지도 않는다. 수용자와 그 가족은 자녀에게 부모의 수용을 숨기기를 원한다는 점도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피의자조사,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신입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절차에서 수용자자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의 수용이 장기화될수록 아동들의 상황은 악화되는 만큼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교정통계연보의 수록, 출소예정자 조사에 자녀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¹²⁷⁾

③ 양형기준에 자녀요인 추가

수용자들이 재판받을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재판 단계에서 수용자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유무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해당 수용자가 아동의 양육에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제정하는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아동의 존재 유무’를 양형사유로 추가하는 방안,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양형조사관의 조사사항에 ‘피고인이 양육해야 하는 아동의 존재 유무’에 관해 필요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① 접견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의 실질적 접견권 보장

형집행법을 개정하여 수용자들이 모든 수용장소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과 배려 속에서 아동인 자녀와 접견할 수 있도록 접견 장소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형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이 접견을 위해 수용시설에 방문가능한 시간과 요일을 배려하여 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화나 화상접견, 전자우편 활성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수용자 위기자녀 발굴을 위한 자료수집 및 아동보호체계로의 연계

교정시설에서 신입수용자 조사항목에 자녀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그 과정

127) 수용자자녀 정보수집에 관한 연구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례적인 실태조사와 국가계획 차원의 정책수립이 요구된다면서 국가통계 구축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아동이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에 즉각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형집행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극빈가정의 아동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수용자의 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다. 현재 가능한 경제적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용자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계부양자의 수용으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수용된 가족에 대한 지원, 방문에 따른 경비 등 수용자가족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수용자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학금 지원, 양육자에 대한 취업 및 소득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급여지원과 같은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양육자의 수용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아동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양육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해 범죄수용자자녀를 범죄피해자로 범주화하고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3. 맺음말

수용자자녀 문제는 수용자 내지 수용자 가족과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일로서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국가전체의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수용자자녀의 인권이 방치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관심영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수용자자녀의 생활환경이 수용자의 가정, 학교 내지 지역사회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공동체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수용자자녀들의 인권문제는 지역공동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공동체가 수용자자녀의 인권활동을

위한 자원, 이를테면 활동가나 지원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할 잠재력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 내에서도 전담부서가 부재하거나 여러 부처가 수용자자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율되고 집중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기업이나 시민 단체, 언론 등 민간부문의 관심 또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 중간지원조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나아가 지원자원을 가진 민간부문의 관심 등이 모아질 때 문제해결은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의 기본권보장을 기본가치로 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가의 주도하에 수용자자녀들의 인권실태를 폭넓게 다루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초연구의 특성상 비중을 두고 다루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보장을 현실화하고 사회적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적기관들의 기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집행기구의 조직구성 등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경래(2013), “미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수용자의 자녀, 장애소년, 보호시설수용소년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1, pp.1-35.
-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 남궁근(1998), 「행정조사 방법론」, 법문사.
- 남상철·신연희(2002), “재소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제 15호, pp.99-124.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2016),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박선영·신연희(2012), 「수용자자녀지원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2014), 「2013 가족사랑캠프 프로그램 평가조사」, 법무부 교정본부 미발간자료.
- 법무연수원(2017), 「2016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신연희(2017a), 「아이 곁에 아빠가 안 계실 때」, 양성원.
- 신연희(2017b), “수용자자녀들의 양육자안정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 11권2호, pp.189-214.
- 신연희(2016), “부모의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1호, pp.129-158.
- 신연희(2015a),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출소준비 유형자 및 출소자 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제 51호, pp.219-249.
- 신연희(2015b),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지원방안과 지원필요성”,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정책 세미나」, 2015.11.06.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국회의원 유승희, pp. 27-82.
- 신연희(2014),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자녀 및 자녀양육자의 프로그램 욕구와 클라이언

- 트 중심 접근의 적용”, 「교정담론」, 제 8월2호, pp. 281-301.
- 신연희·변호순(2014), “아버지의 수용과 자녀들의 문제행동: 재정불안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미국의 사례”, 「교정연구」, 제 63호, pp. 145-171.
- 신연희(2012), “수용자 위기가족의 문제와 지원 방안: 탄력성 이론의 접근”, 「한국범죄학」, 제6권2호, pp. 123-156.
- 신연희·이백철(2008).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학대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법무부.
- 이동훈·신연희·최관·방기연(2015) 「출소자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5
- 이은선(2016), “수용자와 출소자의 가족 및 자녀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에 관한 비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 전영실·신연희·김영식(2007)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경옥·이경림(2017), “수용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비난과 생존 사이에서-”, 「한국사회복지학」, 69(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 2015.

〈국외문헌〉

- Adalist-Estrin, A. (2006). Understanding the Needs of Children and Families of the Incarcerated: Implication for School [PowerPoint]. Family Corrections Network, Jenkintown, PA.
- Acoca, L., & Raeder, M. S. (1999). Severing family ties: The plight of nonviolent female offenders and their children. *Stan. L. & Pol'y Rev.*, 11, 133.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Welfare. (2013), *A Picture of Australia's Children*,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Welfare.
- Bartels, L. Gaffney, A. (2011). Good practice in Women's prisons: literature review.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ports, Technical and background paper 41.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Bayes, S. (2011). Acknowledging and Reaching Children of Prisoners. *Canadian Children Study*, 32(1), 9-15.

- Belknap J. (2007).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3rd ed.). Belmont, CA: Thompson Wadsworth.
- Bilchik, S. (2007). "Mentoring: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isoners". *Research in Actions*, Issue 10. Mentor, National Mentoring Foundation.
- Binswanger IA, Krueger PM, Steiner JF. (2009). Prevalence of chronic medical conditions among jail and prison inmates in the USA compared with the general population.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63(11):912–919
- Braman, Donld. (2004) *Doing time on the outside: incarceration and family Life in Urban. America*.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rennan, S. (2014). Canada's Mother-Child Program: Examining Its Emergence, Usage, and Current State. *Canadian Graduate Journal Sociology and Criminology*, 3(1), 11-33.
- Brewer-Smyth K, Burgess A. W, Shults J. (2012). Physical and sexual abuse, salivary cortisol, and neurologic correlates of violent criminal behavior in female prison inmates. *Biological Psychiatry*. 55:21–31
- 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2012).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ponse to List of issues concerning additional and updated in related to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 Cho, R. M. (2009). The impact of maternal imprisonment on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results from children on chicago public school. *Journal of Human resources*, 44, 77–797.
- Corrections Victoria (2004). *Mothers and children program policy*.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4), 472–486.
- Cunningham, A. & Baker, L. (2004). *Waiting Mommy: having a Voice to the H Victims of imprisonment*. London, Ontario: Centre for Children and Fam the Justic System.
- Dallaire DH, Ciccone A, Wilson L. (2010). Teachers' experiences with and expectation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281–290
- Dallaire, D. H. (2007). *Incarcerated Mothers and Fathers: A Comparison of Risks for Children and Families*. *Family Relations*, 56(5), 440–453.

doi:10.1111/j.1741- 3729.2007.00472.x

- Dallaire, D. H., & Aaron, L. (2010). Middle Childhood: Family, School, and Peer Contexts for Children Affected by Parental Incarceration. In J. M. Eddy & J. Poehlmann (Ed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pp. 101–120).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Murphey, D., & Cooper, P. (2015) “Parents Behind Bars – What Happens to Their Children?” , *Child Trends*, 2015. 10.
- Dawson, A. Brookes, L., Carter B., Larman, ., & ackson, D. (2013). Stigma, health and incarceration: Turning the tide for children with parent in prison. *Journal of Child Health Care*, 1(1), –5.
- Dennison, S., Smallbone, H., Stewart, A., Freiberg, K., & Teague, R. (2014). ‘My life is separated’: An examination of the challenges and barriers to parenting for Indigenous fathers in prison.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4 (1), pp. 1089–1108.
- DiZerega, M., & Verdone, J., (2011). “Setting an Agenda for Family-Focused Justice Reform,” *Family Justice Program*, VERA Institute of Justice.
- Epstein, R. "Mothers Behind Bars", *CL&JW*, (2013) 177 JPN 531.
- Farrington, D. P., Coid, J. W., Harnett, L., Jolliffe, D., Soteriou, N., Turner, R., & West, D. J. (2006). Criminal careers up to age 50 and life success up to age 48: New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Home Office Research Study*, 299.
- Fishman, S. H. (1983). Impact of incarceration on children of offenders. *Journal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15, 89–99.
- Foster, H., & Hagan, J. (2009). The mass incarceration of parents in America: Issues of race/ethnicity, collateral damage to children, and prisoner reent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3(1), 179–194.
- Foster, H., & Hagan, J. (2013). Maternal and paternal imprisonment in the stress process. *Social Science Research*, 42(3), 650–669.
- Freudenberg N. *Jails (2001), prisons, and the health of urban populations: a review of the impact of the correctional system on community health.* J

Urban Health, 78(2):214–235

- Geller, C.E., Cooper, I., Garfinkel, O., Schwartz-Soicher, and RB. Mincy., (2012). "Beyond Absenteeism: Father Incarceration and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49(1): 4–76.
- Geller A, Garfinkel I, Cooper CE, & Mincy RB. (2009). Parental Incarceration and Child Wellbeing: Implications for Urban Families. *Social Science Quarterly*. 90(5): 1186–1202.
- George W. Bush, (2001). "Address Before a Joint Session of the Congress on Administration Goals".
- George W. Bush, "2002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2.
- George W. Bush, "2003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3.
- George W. Bush, "2004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04.
- Golembeski C., Fullilove R. (2005). Criminal (in)justice in the city and its associated health consequenc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 1701–1706
- Ginny Puddefoot and Lisa K. Foster, (2007). "Keeping Children Safe When Their Parents are Arrested: Local Approaches that Work" , California State Library, California Research Bureau.
- Glaze, L.E. & Maruschak, L.M. (2010). *Parents in Prison and Their Children*, NCJ 222984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bjs.gov/content/pub/pdf/pptmc.pdf>
- Grahame Allen & Chris Watson, (2017). "UK Prison Population Statistics", House of Commons Library.
- "Guideline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UN General Assembly 64 Session, A/RES/64/142, 2010. 2. 24.
- Hagan, John and Holly Foster. (2012). Intergenerational Educational Effects of Mass Imprisonment in America. *Sociology of Education* 85(3):259–86. doi: 10.1177/0038040711431587.
- Haskins, Ann., (2015) "Paternal Incarceration and Child-Reported behavioral functioning at Age 9" *Social Science Research* 52(1):18–33.
- Haskins, A. R. (2014). Unintended consequences: Effects of paternal incarceration

- on school readiness and later special education placement. *Sociological Science*, 1, 141–158.
- Hanlon, T. E., Blatchley, R. J., Bennett–Sears, T., O’Grady, K. E., Rose, M., & Callaman, J. M. (2005). Vulnerability of children of incarcerated addict mothers: Implication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7(1), 67–84.
- Foster, J., & Hagan, A. (2009). Damage to Children, and Prisoner. *Recent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3, 9–194.
- Huynh–Hohnbaum, Anh–Luu; Bussell, Timothy J.; & Lee, Gi. (2015). Incarcerated Mothers and Fathers: How their Absences Disrupt Children’s High School Grad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Educational Studies*, 1(2), 1–11.
- IACP(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 2014.
- Institute of Child Protection Studies (2012). *Children with parents in Prison*.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 ,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U. S. Department of Justice, 2014.
- Johnston, D. (1995). Effect parental incarceration. In Gabel & D. Johnston (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 (pp. 59–88). Lanham, MD: Lexington
- Kampfner, C. J. (1995).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of imprisoned mother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89–100.
- Katheryn Russel Brown et al,(2015) “Children of the Incarcerated: Collateral Victims of Crime – A Resource Guide” , UF Levin College of Law Center for the Study of Race and Race Relations.
- Krueger, R., Schmutte, P., Caspi, A., Moffitt, T., Campbell, K., & Silva, P. (1998). Personality traits are linked to crime among men and women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328–338.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3.2.328>
- Kjellstrand, J. M., & Eddy, J. M. (2011). Parental Incarceration during childhood, Family Context, and Youth Problem Behavior across Adolescence. *Offender Rehabilitation*. 50(1).
- Kruttschnitt, C. (2011). Is the devil in the details? Crafting police to mitigate the

- collateral consequences of parental incarceration.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10(3), 829–837.
- Laakso, J., & Nygaard, J. (2012).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How a mentoring program can make a difference.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7(1–2), 12–28.
- Lauren E. Glaze and Laura M. Marunshak,(2010).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2010. 3. Revised.
- Lee, H, Wildeman, C., Wang, E. A., Matusko, E. N., & Jackson, J. (2014). “A heavy burden: the cardiovascular health consequences of having a family member incarcerate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3):421–7
- Loeber, R., Farrington, D. P., Stouthamer–Loeber, M., White, H. R., & Wei, E. (2008). *Violence and Serious Theft: Development and Predic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New York: Routledge.
- Parrish, M. & Burry, C., 2013. Twofold Adversity: Incarcerated mothers and child protec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15–18 September 2013, Dublin, Ireland. (Unpublished)
- Marshall, K. Not Seen. Not Heard. Not Guilty.(2008). *The rights and status of the children of prisoners in Scotland*. Edinburgh: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CYP).
- McCrickard, R., & Flynn, C. (2016). Responding to Children of Prisoners: The Views of Education Professionals in Victoria. *Children Australia*, 41(1), 39–48.
- Maruschak LM, Beck AJ. *Medical Problems of Inmates*, (1997). Publication NCJ 181644.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Office of Justice Programs.
- Massoglia M. (2008). Incarceration as exposure: the prison, infectious disease, and other stress-related illnesses. *J Health Soc Behav*. 49(1):56–71.
- McCaskill, W. (2014).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The Famil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hild Welfare Contact Prior to Parental Incarcer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 McCormick, A., Miller, H.A., Paddock, G. B. (2014).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 Child: Strategies for Recognizing the Supporting Canada's At-Risk Population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University of The Fraser Valley.
- Miller, K.M. (2006). The impact of parental incarceration on children : An emerging need for effective interven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 472.
- Murray, J. & Farrington, D., (2005). Parental imprisonment: effects on boys'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through the life-cours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12): 1269-1278.
- Murray, J. (2007). The cycle of punishment: Social exclusion of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7(1), 55-81.
- Murray J., Loeber R., & Pardini D. (201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youth theft, depression, marijuana use, and poor academic performance. *Criminology*.50(1),255-302.
- Mussell, L. (2016). Kids on the Outside: Policy Options for Youth with Incarcerated Parents in British Columbia. (Dissertation Paper). Simon Fraser University.
- Nesmith, A., & Ruhland, E. (2008).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hallenges and resiliency, in their own wor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10), 1119-1130.
- Nichols ,E., & Loper,A. (2012). Incarceration in the household: academic outcomes of adolescents with an incarcerated household memb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155-1471. oi: 1.1007/s10964-012- 9780-9
- NSW Police Force. (2013). NSW PoliceForce Handbook. NSW: Author. Retrieved from The Sentencing Project, "FACT SHEET: Trends in U. S. Corrections" , 2016.
- Patti B. Saris et al, (2016). "the Guidelines Manual 2016",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 Petersilia, J. (2003). When prisoners come home. New York, NY: Oxford press.
- Phillips, S. D. & J. A. Zhao.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Witnessing Arrests and Elevate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of Children Involved in the Child Welfare System." *Children and*

- Youth Services Review, 32(10):1246–54. doi: 10.1016/j.chilyouth.2010.04.015.
- Poehlmann, J. (2010). Attachment in Infants and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 71–96 i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edited by Poehlmann, J. & M. Edd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Phillips S, Gates T. (2011)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stigmatization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 286–294.
- Pugh, G. & Lanskey, C. (2011) “Dads Inside and Out’: study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resettlement of imprisoned fathers with their families”. Institute of Crimin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9 May 2011.
- Productivity Commission.(2015). Report on Government Services 2015, Chapter 8: Corrective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Retrieved from:<http://www.pc.gov.au/research/ongoing/report-on-government-services/2015>
- Roettger, M. E., Swisher, R. R., Kuhl, D. C., & Chavez, J. (2011). Paternal incarceration and trajectories of marijuana and other illegal drug use from adolescence into young adulthood: evidence from longitudinal panels of males and females in the United States. *Addiction*, 106(1), 121–132.
- Rowe, D.C. & D.P. Farrington. (1997). “The familial Transmission of Criminal Convictions” *Criminology* 35(1):77–201.
- Epstein, R. (2014). “Mother in Prison: The sentencing of mother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Howard League What is Justice? Working Papers, 2014. 3.
- Roettger, M. E., & Swisher, R. (2011). Paternal Incarceration and Trajectories of marijuana and other illegal drug use from adolescent into young adulthood. *Addition* 106(1).
- 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Bill of Rights”, 2005 revised.
- Schirmer, S., Nelis, A., & Mauer, M. (2009).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e Sentencing Project.
- Saunders, V., & McArthur, M. (2013). *Children of prisoners: Exploring the needs*

-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have a parent incarcerated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HINE for Kids and Institute for Child Protection Studies –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 Schwartz–Soicher O, Geller A, Garfinkel I. *Fragile Families Working Papers*. Princeton, NJ: 2009. *The Effects of Paternal Incarceration on Material Hardship*. [PMC free article] [PubMed]
- Sharp, S. F. & Marcus–Mendoza, S.T. (2001). It’s a family affair: Incarcerated Women and Their Families. *Women and Criminal Justice*, 12(4), 21–49
- Shlafer, R.J & Poehlmann, J. (2010). Attachment and Caregiving relationships in families affected by incarceratio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 (4) 395–415.
- Shingle, B. (2014). Canada Expanding Rarely used program that lets Mothers live with children in minimum security prisons. *National post* May. 9.
- Shlonsky, A. Rose, D., Harris, J. Alberts, B. Mildon, R, Wilson, S., Norvell, J., Kissinger, L. (2016). *Literature Review of Prison–based Mothers and Children Programs: Final Report*. Prepared for the 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and Regulation.
- Sugie, N. (2012). “Punishment and welfare: Paternal Incarceration and Families’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Social Fores*, 9(4), 140–1427. doi: 10.1093/sf/sos055
- Swisher, R, R., & Waller M. (2008). “Confining Fatherhood: Incarceration and Paternal Involvement among Unmarried White, African American, and Latino Fa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9:1067–1088.
- Schnittker J, John A. (2007). Enduring stigma the long–term effects of incarceration on health. *J Health Soc Behav*. 48(2):115–130.
- Seymour, C., & Hairston, C. F. (Eds.). (1998). *Children with parents in prison: Child welfare policy, program, and practice issues*. Transaction Publishers.
- Snyder–Joy, Z.K., & Carlo, T.A. (1998). Parenting through prison walls: Incarcerated mothers and children’s visitation programs. In S. Miller (Ed.), *Crime control and women: Feminist implications of criminal justice policy* (pp. 130–150). Thousand Oaks, CA: Sage
- Strickman, C., Alioto, J., & Flake., J. (2010). *“Incarcerated Parents Manual: Legal*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Legal Service for Prisoners with Children and Prisoner Legal Services.
- Trice, Ashton D., and Joanne Brewster. (2004). “The Effects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19:2735.
- LaLiberte. T., & Snyder, E. (2008). “CW360° : a comprehensive look at a prevalent child welfare issue –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Child Welfare.
- Trotter, C. F., Naylor, B., Collier, P., Baker, D., McCauley, K., Eriksson, A., ... & Blanch, B. (2015). *The Impact of Incarceration on Children’s Care: A Strategic Framework for Good Care Planning*. Monash University.
- Turney, K., & Haskins, A. R. (2014). “Falling behind? Children’s early grade retention after paternal incarce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7(4), 241 – 258.
- U.S. Department of Justice, “FY 2017 Budget Request”, 2016.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FY 2017 PERFORMANCE BUDGET”, 2016.
- Victorian Association for the Resettlement of Offenders, VACRO.(2006). *Children: Unintended victims of legal Process – A review of policies and legislation affecting child incarcerated parents*. Discussion Paper.
- Wildeman C. (2010). Parental imprisonment, the prison boom, and the concentration of childhood disadvantage. *Demography*. 46(2):265 – 280. [PMC free article] [PubMed]
- Wildeman, C & Turney. K. (2014). “Positive, Negative, or Null? The Effects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 *Demography* 51(3):1041 – 68
- Wright, L., & Seymour, C. (2002).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separated by incarceration: A handbook for child welfare agencies*. [Electronic version]. Washington, DC. CWLA Press.
- Wilbur MB, Marani JE, Appugliese D, ...& Frank, DA. (2007). Socioemotional effects of fathers’ incarceration on low-income, urban, school-aged children. *Pediatrics*. 120(3).

Wilper AP, Woolhandler S, Boyd JW,...& Himmelstein, DU. (2009). The health and health care of US prisoners: results of a nationwide survey. Am J Public Health. 99(4):666-672.

〈판례 및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17.자 결정 16진정0039100, [민사집행과정의 아동보호지침 마련 관련 정책권고]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430 판결

White v. Rochford, 592 F.2d 381 (7th Cir. 1979).

Walton v. City of Southfield, 995 F.2d 1331 (6th Cir. 1993).

United States v. Roselli, 366 F.3d 58 (1st Cir. 2004).

United States v. Johnson, 964 F.2d 124 (2d Cir. 1992).

United States v. Galante, 111 F.3d 1029 (2d Cir. 1997).

United States v. Floyd, 945 F.2d 1096 (9th Cir. 1991).

R v Gwent Magistrates Court [2001] ALL ER (D) 125 (Jul)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1] EWCA Civ 1151

R v Petherick [2012] EWCA Crim 2214, 3 October 2012

〈인터넷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무부 수용자가족지원”,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otheragency/otheragency2.do>.
(17. 11. 06. 확인).

“Champions of Change: Champions For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champions/champions-for-the-children>

- of-incarcerated-parents. (17. 11. 06. 확인).
-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youth.gov,
<https://youth.gov/youth-topic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17. 11. 06. 확인).
- “Child Support and Incarceration”,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child-support-and-incarceration.aspx>.
 (17. 11. 06. 확인).
- “Treaty Body Search”,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s for Human Rights,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
 (17. 11. 06. 확인).
- “Publications & Products: Prisoner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https://www.bjs.gov/index.cfm?ty=pbse&sid=40>(17. 11. 06. 확인).
- “World Prison Brief”, <http://www.prisonstudies.org>. (17. 11. 06. 확인).
- “Family Outside”, <https://www.familiesoutside.org.uk>. (17. 11. 06. 확인).
- “Women Prisoners”, Ministry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uk/offenders/types-of-offender/women>. (17. 11. 06. 확인).
-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s for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iscussion2011.aspx,20>
 (17. 10. 28. 확인)

〈기사〉

국제신문, 〈추적 60분〉 11일 - “낙인에 멍든 수용자의 아이들”. 2015. 11. 11.

부록



심층면접 참여자 생활실태 개요

수용자용 설문지

수용자자녀 양육자용 설문지

델파이조사 설문지

부록 1. 심층면접 참여자 생활실태 개요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1	<p>부모이혼으로 조모와 함께 살고 있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의 수감소식 듣게 됨. 부는 출소 후 다른 사건으로 계속해서 수감됨(3-4회).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진학하였고 졸업하여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를 따라 부 첫 면회를 갔었던 기억 생생함. 아빠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함. 부의 수감이유에 대해 궁금했으나 법원에서 날라 온 사건 통지서를 직접 보고 알게 됨.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부의 편지에 답장을 안 함. 그 후 아무도 면회 가자고 권하지 않아 면회는 못했음 - 할머니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 열등감을 많이 느꼈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게 됨. 나는 아빠가 이래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심했음 - 작은 동네라서 이웃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으며 동네사람들로부터 아빠처럼 살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동네 친구 부모님들로부터 자신과 같이 놀지 말라는 소리 듣고 자람 - 그러나 할머니의 정성, 막내 고모의 지지와 신앙의 힘으로 극복.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음 - 오히려 대학 다니면서 더 힘들었음. 자신의 처지와 가정 배경에 대한 절망 - 수용자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하게 힘내라'가 아니고 '울고 싶을 때 숨기지 말고 울어라' 하는 공감이 꼭 필요함. - 자신과 같은 비슷한 경험자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함
2	<p>중학교 1학년 때 모가 회사 공금횡령으로 수감되어 아빠와 살다가 1개월 후에는 남동생과 외조모 집에 맡겨 짐. 그 후 부와의 연락이 뜸해 관계가 안 좋아졌고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외조모 대신 혼자 모의 면회를 가느라 고군분투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6학년 때 엄마가 뉴질랜드로 유학 갔다는 소식을 아빠에게 듣고 충격과 실의에 빠졌으나 우연히 법원 통지서와 아빠의 핸드폰 문자를 보고 모의 수감사실을 눈치 채게 되어 외할머니에게 사실을 확인하였음. - 엄마의 수용사실을 듣게 된 후 엄마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고 접견도 갈 수 있어서 기뻐함 - 아빠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 외할머니가 자살하려고까지 한 후 겨우 수급 지원 받음. 경제적 이유(용돈을 안주고), 무관심(먼저 연락하지 않음) 등으로 아빠와는 점점 멀어지게 됨.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여 겨우 다섯식구가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p>생계를 유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할 사람이 없고 진로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호소함. - 모 접견은 1주일에 1회 다니는데 면회 시간이 너무 짧고 평일에는 불가능하여 불만이 있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둘 다 준비해가야 함 둘 중 하나를 놓고 오면 면회 거부당함(자격증 같은 것은 인정 안 해 줌, 고등학교 입학 후 2개월 동안 학생증이 안 나왔을 때 면회 못함. 임시 학생증을 가져가도 사진이 없어서 거부당함) - 친척(고모, 할머니)들이 면회는 안가면서 자신에게 자꾸 엄마상황을 물어보며 비난, 모욕하여 수치스럽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수용자의 자녀로만 여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낌 - 동생도 학업에 관심이 없고 학교에 부적응 하고 있는데 자신이 도와줄 수도 없고 성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함. 도움 받을 데가 없음
3	<p>초등학교 4학년 때 모가 수감됨. 엄마가 어느 날 안 들어오셨고 그 얘기를 계부한테 들었을 때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음. 외조모가 집에서 어린동생(2살)을 키워주고 함께 살고 계시나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친부가 아니라서 불편하고 동생과 차별받는다고 느낌. 현재는 4년 만에 엄마가 출소하여 한 집에서 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부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게 어려웠음. 동생은 잘 사주시는데 용돈 달라고 하면 눈치주심. 엄마가 계실 때는 엄마가 일을 하셔서인지 엄마 돈이라서 담당했는데 그 후에는 서러웠음. - 여성물품을 사거나 속옷을 구할 때, 신체적 변화에 대해 아빠에게 일일이 말해야 하는 것이 불편함 - 친구들한테도 아무한테 말하지 못해 엄마얘기를 할 때 옛날 얘기를 하거나 거짓말해야 하였고 심지어는 수치스러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께도 말하지 못했음 - 엄마가 수감 후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고 우울했으며 엄마 없이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게 힘들었는데 할머니도 힘드실까봐 말도 못하고 참게 됨 - 일상생활을 얘기 할, 말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자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누군가 엄마처럼 사주었으면 좋겠음
4	<p>초3때 부의 수감사실을 고모를 통해 듣게 됨. 계모와 살다가 2년 만에 아빠 면회를 가서 죄수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 받음. 계모는 부와 사실혼 관계라서 가족사랑 캠프 때 함께 못 들어가고 자신만 혼자 들어가서 쓸쓸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음. 계모가 떠나고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다가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갔는데 적응이 어려워 다시 집으로 옴. 지금은 조모가 요양병원 계셔서 실질적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로 부터 편지가 왔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는 아빠와 만났을 때의 상처와 두려움이 커서 답장을 안하게 됨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아빠가 보고 싶었으나 고모는 거부하고 새엄마 형편도 안 되고 지금은 아무도 없어서 갈수 없었음 - 친구들과 활동할 때 다른 애들은 부모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자신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안 좋고 분노조절이 잘 안됨 - 친한 친구한테 말했을 때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편했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받음. 센터 형들과 친구들과 있어서 힘이 됨
5	<p>중학교 1학년 때 부가 특수강도 사건으로 수감됨. 부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조모와 전화를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우연히 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과 모와는 부의 면회를 갔었던 적이 있으나 초등학교 동생은 아직 모르고 있음 - 부의 사건으로 조부모가 연이어 돌아가시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 모가 야간근무를 할 때 어린 동생을 돌봐줘야 하며, 이사 등 변화들이 잇달아 발생됨 - 그 후로 마음을 잡지 못해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고 학교 무단결석, 술, 담배, 가출 하면서 현재 보호관찰중.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워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데 공부하기 어렵고 따라갈 수 없음 - 부의 면회를 갔을 때 무섭고 이상했음. 면회를 갈 때마다 울었고 면회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함. 그러나 부가 언제쯤 출소하시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궁금함
6	<p>중1때 부모님이 함께 하시던 사업이 안 되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어느 날 아빠가 수감되었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심. 누나들은 대학생일 때여서 바로 면회를 다녀왔고 자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사랑 캠프 때 아빠를 만났음. 울컥했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좋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 수감 후 아는 사람 집에 도피, 거주하였다가 현재 집으로 이사, 이전에 살았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살림이 축소되었지만 현재로도 만족하고 있음 - 중3때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린 적 있으나 친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음. 자신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학입시 준비 중 - 아이들을 위한 캠프나 문화 체험 등이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음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4학년 때 부가 자신에게 한 성추행으로 2년형을 받고 수감. 부모 이혼 후 부는 출소하였으나 소식 모름 - 성폭력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치료를 10회 받음 - 모의 직장을 따라 이사 왔고 학원안다니고 집에서 게임 많이 함 - 친한 친구에게 말한 적 있음. 후련했음 - 아빠 수감 후 아무리 가해자였어도 갑자기 부모가 없어지니 트라우마가 남았음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p>우울하고 허전함. 옛날에는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게임중독인 것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생은 어렸을 때라 부가 미국에 가있다고 알고 있음 - 상담 받을 때 힘내 괜찮아 잘 될꺼야 라는 말이 도움 됨 - 아빠와 앞으로 안 만나고 싶고 접근금지 명령받았으면 좋겠음
8	<p>초등학교 때 부모 이혼 후 조부모와 부와 함께 살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가 갑자기 안 들어오시고 연락이 안되어 불안했음. 할머니는 출장 가셨다고만 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조모가 아빠 수감상황을 알려주심.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음. 아빠한테까지 버림받았을까봐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알게 되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함. 첫 면회 후 마음이 편안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모네 식구들과 집을 합쳐서 살게 됨. 사촌들이 생기고 할머니의 관심과 도움 받기 어려워 짐 - 중학교에 다니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누가 부모님 욕하면 울컥하는 마음이 들고 빨리 철이 들게 됨.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빈자리가 큼 -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음. '엄마도 없더니 이제 아빠도 없네' 라면서 소문을 내고 놀릴것만 같았음 - 개근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캠프에 가서 아빠 손을 만지고 싶어서 학교를 포기하고 아빠 만나는 걸 선택함 - 현재 부가 출소하여 함께 살고 있는데 마음이 놓이고 16분 대화가 아니고 영원히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쁨 - 할머니와 면회 다니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든데 비해 면회시간이 너무 짧음. 애들이 부모 면회를 갈 때 유리창이 아니라 손을 만져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9	<p>부모이혼 후 삼남매가 부와 함께 살던 중 중학교 3학년 때 부가 누나 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수감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삼촌이 돌봐준다고 집에 들어와서 학대, 폭언을 일삼아 누나 먼저 가출하였고 이어서 동생도 가출하여 혼자서 삼촌의 정서적 학대(새벽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공부시킴)와 신체적 학대를 받으며 살다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주어 일시보호 쉼터로 가서 생활하게 됨 - 이후 단기쉼터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함. 그러나 다시 장기쉼터로 거주지가 옮겨졌고 그곳에서 형들의 폭력으로 적응이 어려워했음 - 가출하고 싶어 누나를 찾았고 연락된 후 현재는 남자친구와 살고 있는 누나에게 가서 함께 살게 됨 - 기관의 도움으로 아빠 면회를 한 달에 1번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으며 기초수급신청이 받아들여져 생활하고 있음. 누나가 고맙고 동생이 사고 안치고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p>학교에 다니고 있어 고마움. 아빠를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든 일이나 삼남매가 함께 살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가 체포되는 당시 경찰이 애들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며 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알려줌(충격). - 아빠 얼굴을 안 잊어버리려고 사진을 꼭 간직하고 수시로 꺼내서 봄.
10	<p>사례9의 동생으로 부모이혼 후 삼남매가 부와 함께 살던 중 초등학교 6학년 때 부가 누나 친구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수감됨. 이후 둘째 삼촌이 돌봐준다고 집에 들어와서 학대, 폭언을 일삼아 누나가 먼저 가출한 후 참을 수가 없어 가출함 가출 후 친구 집에 살면서 학교안가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사고를 쳐서 보호관찰을 처분으로 자립관에서 생활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아동보호 센터 행사에서 기적처럼 형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누나와 연락이 닿아 누나 집에서 삼남매가 같이 살게 됨 - 아빠 면회를 가기위해 누나가 학교 선생님께 아빠 상황을 알렸고 이후 선생님이 잘해주심 - 학교에서 애들이 패드립 치면 참을 수가 없어서 때리게 됨, 분노폭발 - 면회시간을 좀 길게 주었으면 좋겠음(1시간 정도) - 장소변경신청으로 철창 없이 손잡고 아빠를 안아볼 수 있어서 좋음 - 조금만 기다리면 부가 나와 가족이 함께 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중 집에 놀러 온 친구를 부가 성폭행하여 수감됨.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양육하러 온 삼촌의 폭행과 만행(아빠 재판비용을 삼촌이 다 써버림)에 반항하여 가출한 후 학교중퇴하고 찢질방에서 기거하며 단란주점 서빙 등 안 해 본 일이 없이 고생함. 이후 남자친구와 그 동료들과 돈을 모아 월세 방에서 함께 살아가던 중 동생들과 연락이 닿아 동생들을 불러 데리고 살게 됨. 기초수급신청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며 임대주택 공급받아 현재 삼남매의 가장으로 살고 있음 - 동생들 입학이며 수급신청이며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동생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이겨내고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함 -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면회를 찾아갔고 부에 대해서는 원망보다 미안함과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큼 - 부모가 수감된 후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는 집(안식처)이나 형제가 함께 살 수 있는 쉼터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음
12	<p>부모 이혼 후 엄마가 재혼하시고 의지하고 따르던 계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감됨. 엄마가 사업하러 외국 나갔다고 알려주셔서 편지도 썼는데 나중에야 알려주셔서 배신감 들고 세상이 불합리해 보임. 쌍둥이 동생이 학교에서 친구한테 그 사실을 말했다가 소문이 다 퍼져지고 따돌림을 당해 죽고 싶다는 생각 자주함. 그러다</p>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p>가 반작용으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함. 외할머니와 엄마가 교육지원을 잘해주셨고 바르게 키워주심. 엄마와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자녀 캠프에 참가하다가 대학생이 된 후 애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본인이 자원봉사 신청함 - 엄마는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 일을 못하셔서 기초수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큼
13	<p>부모갈등으로 인해 삼남매가 시설에서 살다가 나와 다시 부와 함께 집에서 지냄. 그러던 중 집이 싫어 가출을 반복하고 말을 안 듣자 부가 양육하기 힘들다고 다시 아동복지시설에 맡겼음. 엄마가 중독에 절도사건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상태. 그사이 부가 성폭행으로 수감되었고 고모에게서 부의 수감사실을 듣게 됨. 아빠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아 또 가출하게 됨. 가출생활 중 사고를 치고 보호관찰을 받아 자립관으로 옮겨져서 생활하게 됨. 현재는 성인이 되어 퇴소 후 고모가 빌려준 집에 살고 있음.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동생을 못 데려오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아직도 시설에 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 수감된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책감, 친척들로 부터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음 - 가족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고모의 압박으로 도움 받는 기관에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안하고 회피함 - 평범하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밥을 먹어 보는 게 소원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여러 차례 수감으로 제대로 된 양육지원을 못 받음. 오히려 어릴 때부터 부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돌보느라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다반사. 고등학교 중퇴하고 피시방, 편의점, 배달, 써빙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짬짬을 전전함 - 초등학생 때부터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4번째 재판중이며 현재 치료감호시설에서 보호관찰 중 - 수감 후 출소한 부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 60만원을 주기도 함 - 치료시설에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느끼며 학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15	<p>어릴 때부터 부가 크고 작은 사건으로 교도소에 드나들었고 모는 우울증과 자살시도를 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 모는 부와 이혼한 후 현재 임대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외조모의 집에서 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의 수감으로 인해 교회 사람들로 부터 친구들에게 함께 놀지 말라고 하였고 어른들부터 차별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 힘든 시기를 보냄 - 경찰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고 집을 수색하여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하면서 반항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생활을 하기도함

번호	사례개요 및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곤란으로 고등학교때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음악지도 렛슨을 받았는데 돈이 없다면 차별과 무시를 당해왔음. 부모 면회 시 영치금 등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드려야 해서 힘들었음 - 위기를 이모의 지지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음
16	<p>수감된 사람은 계부였는데 큰 사건이 터지면서 언론에 정보가 공개되어 모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차별과 비난을 받게 됨. 그 사건으로 외할머니 집에서 쫓겨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믿고 의지했던 어른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 - 경찰이 한밤중에 찾아와 가족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으며 핸드폰을 압수당한 엄마가 며칠 동안 일도 못하심 - 충격으로 엄마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밥도 못 먹고 민들레로 반찬 해먹고 한겨울에 냉방에서 며칠씩 굶었던 기억이 있음
17	<p>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부가 수감된 후 거주지가 없어지며 온 가족이 이사를 다니며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 곳이 없고 도와줄 친척하나 없어서 여관 등을 전전하고 빈집, 빈차 등에서 세 식구가 생활 함.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고 싶은 공부와 미술을 지원받지 못함 - 부의 수감 이후 엄마의 우울증과 자살위험도가 높아졌는데 몸이 약한 엄마가 돈을 벌기위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대신 가사 일을 하며 마음고생 많이 함

자녀지원을 위한 자녀 · 가정 실태조사

본 조사는 사회에 남겨져 있는 여러분 자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법무부 사회복귀과

1.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귀하 및 귀하 배우자가 데려 온 자녀 모두 포함)

- 1 자녀가 없음 (☞ 8 번 질문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2 자녀가 있음

2. 현재 자녀(들)은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 1 귀하의 배우자 2 귀하의 부모 3 배우자의 부모 4 친척
 5 자녀들끼리 있음 6 지인이 돌보고 있음 7 시설에 있음 8 자녀들의 상황을 모름

3. 귀하는 입소 전에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까?

- 1 함께 살았음 2 자녀와 따로 살았음

4. 입소 전 자녀의 양육비용은 누가 담당하였습니까?

- 1 귀하 혼자 담당 2 귀하와 배우자가 함께 담당 3 배우자가 혼자 담당
 4 주변의 도움 5 잘 모르겠음

5. 현재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 1 대부분 알고 있음 2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3 거의 모르고 있음 4 전혀 모르고 있음

6. 사회에 복귀한 후 자녀와 함께 살 계획이십니까?

- 1 예 2 아니요

7. 귀하의 자녀에 관해 나이순서대로 응답해 주세요.

순서	연령	성별		자녀가 수용 사실을 알고 있음			귀하의 체포 장면 목격여부		구속 후 자녀와 접견		자녀의 건강 상태				(취학자녀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도			
		남	여	예	아니요	확인 불가	예	아니요	있음	없음	상	중	하	확인 불가	상	중	하	확인 불가
첫째	만__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둘째	만__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셋째	만__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넷째	만__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다섯째	만__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9.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만 _____ 세

10. 귀하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종교 ⑥ 종교 없음

11.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법적인 혼인상태 ③ 이혼 ④ 사실상 부부(법적 이혼상태)
 ⑤ 이혼진행 중 또는 사실상 이혼 ⑥ 사별

12. 귀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부유한 편 ② 보통임 ③ 가난한 편 ④ 매우 가난함

13. 귀하 가정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입니까?

- ① 수급자임 ② 수급자 아님 ③ 잘 모르겠음

14. 현재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① 가족과 긴밀히 연락됨 ② 가족과 연락은 되나 관계가 좋지 않음
 ③ 가족은 있으나 연락이 잘 안됨 ④ 가족 없음

15. 현재 귀하의 수용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미결 ② 기결 ③ 기타()

16. 귀하가 이번사건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오늘까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년 / _____ 개월 / _____일 경과

♣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생활 실태에 관한 양육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용자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거나 자녀의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수용자자녀들의 생활실태와 양육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쭙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후 수용자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응답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이 불편하신 문항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능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6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문의전화 : 02-6929-0936)·법무부 사회복귀과(02-2110-3440)
연구책임자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연희

I. 일반적 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 2. 귀하의 나이는 현재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 3. 오늘 누구를 만나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기타는 괄호 안에 써주세요.)
 1 귀하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2 귀하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
 3 귀하의 자녀(아들 또는 딸) 4 귀하의 형제(또는 자매, 남매)
 5 기타()

- 4. 귀하는 이곳에 있는 가족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으십니까?(※해당사항 모두 √ 표시)
 1 인터넷 서신 2 전화 통화 3 인터넷 화상접견 4 일반접견 5 가족접견
 6 가족만남의 날 7 일반 서신 8 스마트 접견 9 기타 ()

4-1 가장 많이 하는 접촉방법을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순위() ② 순위() ③ 순위()

5. 최근 1년간 이곳에 있는 가족과의 면회(방문접견)는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① 1주일에 ()회 ② 년 ()회 ③ 전혀 안했음(이번이 처음)

6. 귀하의 가정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모두에 표시해주세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② 한부모가정지원 ③ 긴급복지지원
④ 아무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⑤ 기타()

7. 귀하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전업주부 ② 직장인 ③ 자영업 종사자 ④ 학생 ⑤ 시간제 근로 ⑥ 기타()

8. 귀하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종교() ⑥ 종교 없음

II. 수용자의 자녀 및 가정생활

※ 수용자자녀는 19세미만으로 유아~고등학생 연령까지에 해당되는 자녀입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1. 귀하는 수용자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함께 살지 않지만 자녀들의 형편을 알고 있음

2. 귀하는 수용자자녀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① 자녀의 엄마 ② 자녀의 아빠 ③ 자녀의 친조부모 ④ 자녀의 외조부모
⑤ 자녀의 친척 ⑥ 자녀의 이웃 등 ⑦ 자녀의 형제(자매) ⑧ 기타

3. 현재 수용자자녀(들)은 누가 돌보고 있습니까?

① 자녀의 엄마 ② 자녀의 아빠 ③ 자녀의 친조부모 ④ 자녀의 외조부모
⑤ 자녀의 친척 ⑥ 자녀들끼리 지냄 ⑦ 아동보호시설 ⑧ 모름 ⑨ 기타

4. 다음은 수용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① 경제적 어려움	1	2	3	4
② 자녀들의 교육문제	1	2	3	4
③ 자녀의 문제행동	1	2	3	4
④ 건강상의 문제	1	2	3	4
⑤ 수용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 어려움	1	2	3	4
⑥ 수용된 부모의 역할(아빠 또는 엄마역할)을 대신하는 일	1	2	3	4
⑦ 환경의 변화 (이사, 전학 등)	1	2	3	4
⑧ 문제나 고민을 논의할 사람이 없는 것	1	2	3	4
⑨ 주위의 시선과 편견	1	2	3	4
⑩ 수용된 가족을 수발하는 일	1	2	3	4

5. 수용자자녀의 부모가 수용된 후 귀하가 수용자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1 처음부터 함께 살고 있었음 2 부모 수감 후 일주일 이내(일) 3 부모 수감 후 1개월 이
내(일)
4 부모 수감 후 1년 이내(개월) 5 부모수감 후 1년 이상 지나서 (년후)

6. 수용자자녀(들)는 부모의 수용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음 2 모르고 있음

6-1 현재 모르고 있다면, 향후에 알려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앞으로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7. 귀하는 지난 6개월 간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①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②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③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④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⑤ 잠을 설쳤다	1	2	3	4
⑥ 세상이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⑦ 큰 불만이 없이 생활했다	1	2	3	4
⑧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⑨ 마음이 슬펐다	1	2	3	4
⑩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⑪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8. 귀하는 수용자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다른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다른 가족이나 주변으로 부터의 도움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도움을 가끔 받는 편이다	매우 도움을 많이 받는다.	도움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①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①	②	③	④	
②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	①	②	③	④	
③ 가사, 집 봐주기, 간병 등 생활의 도움	①	②	③	④	
④ 육아, 교육 등에 관한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수용자 가족 지원 단체와 연결	①	②	③	④	

9. 수용자자녀에 대해 나이순서대로 응답해 주세요.

순서	연령	성별		자녀가 수용 사실을 알고 있음		체포장면 목적		구속 후 부모접견		자녀의 건강 상태				자녀의 학교성적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남	여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있음	없음	상	중	하	확인 불가	상	중	하	확인 불가	상	중	하	확인 불가	
첫째	만 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둘째	만 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셋째	만 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넷째	만 세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귀하가 돌보거나 또는 알고 있는 수용자자녀(들) 중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 적절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② 매사에 의욕이 없고 기가 죽어있다	①	②	③	④
③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기를 두려워 한다	①	②	③	④
④ 신경성으로 배나 머리 등이 아프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불면증, 우울증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⑥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적이 낮다	①	②	③	④
⑦ 학교를 결석하거나 무단이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⑧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⑨ 어른에게 반항을 한다	①	②	③	④
⑩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싸움을 한다	①	②	③	④
⑪ 가출을 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⑫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⑬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1. 수용자자녀와 귀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나쁜 편이다 5 매우 나쁘다

III. 수용된 가족관한 사항

1. 수용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2. 수용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현재 수용자의 수용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미결 2 기결 3 기타()

4. (기결수의 경우) 총 수감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년 개월 또는 무기징역)

5. 현재까지 복역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셨습니까? (년 개월)

6. 수용자가 수용된 횟수는 몇 번입니까?(이번이 몇 번째 수감입니까?)

- 1 1회 2 2회 3 3회 4 4회 5 5회 이상

7. 수용자가 수감될 당시 혼인상태가 어떠했습니까?

- 1 미혼 2 법적 결혼상태 3 이혼 4 사실상 부부(법적 이혼상태)
 5 이혼진행 중 또는 사실상 이혼 6 사별 7 기타

8. 수용자는 수감되기 전 경제적으로 자녀부양비를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1 수용자 혼자서 부담 2 배우자와 함께 부담 3 배우자가 혼자부담
 4 수용자의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부담 5 잘 모름

9. 수감되기 전 수용자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였습니까?

- 1 매우 좋지 않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10. 수용자는 수감되기 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1. 수용자는 현재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잘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12. 귀하가 보실 때 수용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13. 이곳에 수용된 가족과 귀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귀하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용자자녀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1차)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고 옹호하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세움에서는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수용자자녀의 인권상황 및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지를 통하여 전문가이신 귀하의 의견을 폭넓고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인권상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하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응답자의 성명과 소속기관은 개별적으로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요약적으로 발표 될 것입니다.

우선 1차 질문지에 대한 답변은 9.17.(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용자’ 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수용자자녀는 부모가 수감된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2017. 9. 10

사단
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 주관기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책임자 : 신연희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델파이조사 담당 : 최경옥 연구원
 (문의처 : 02-6929-0936 childseum@naver.com)

응답자 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조사응답 수당관련	생년월일 : _____ 계좌번호 : 은행/

1. 수용자자녀에게 인권 침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아동권리의 영역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자세한 내용 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영역의 빈칸에는 추가할 내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권리영역	내용	자세한 내용
생존	양육, 주거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원	
보호	가족, 양육	
	학교생활	
	수사단계	
	재판단계(법원)	
발달	학업	
	심리·사회	
	신체적 건강	
참여	알 권리	
	면접권	
	교정기관	
기타	부모 양형	
	지원제도	
	사회적 인식	

2. 수용자자녀 지원 정책방안에 대한 제안을 영역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적어 주십시오. 빈칸에는 추가할 내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부처	내용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	
법원	
법무부 (교정본부)	

2) 수용자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시도 및 시·군·구)에서 필요한 노력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3가지 이내로 적어 주십시오.

3) 민간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3가지 이내로 적어 주십시오.

3.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해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영역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내용을 어느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1)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2-2)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용자자녀 지원 방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2차)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입니다.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및 지원방안에 관한 1차 델파이조사에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분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한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조사에 임해주신 것 재차 감사드립니다.

2017. 9. 23

사단
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 주관기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책임자 : 신연희 교수(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델파이조사 담당 : 최경옥 연구원
(문의처 : 02-6929-0936 childseum@naver.com)

응답자 성명	
--------	--

1. 아래의 제안은 1차 조사 결과 중 수용자자녀 지원에 있어서 추진해야 할 정부의 역할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6개의 부처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부처업무로서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적절성과 실효성은 각각의 빈칸에 1점에서 5점까지(① 매우 낮음 ②낮은 ③보통 ④높음 ⑤매우 높음)로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처업무 적절성: 해당부처의 소관업무로서의 적절성

※ 실효성: 성과창출의 기대가능성

1) 보건복지부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1	지원	수용자자녀 심리상담		
2		가족 경제적 지원(긴급구호)		
3		의료지원		
4		수급비 지원 외 별도의 위기지원		
5	돌봄	수용자자녀 전문 그룹홈 설치		
6		수용자자녀 대리가정(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7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지원 :보육, 지역아동센터		
8	교육 및 사회복지 시스템	아동보호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수용자자녀 보호 및 가족 교육		
9		양육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0		사회복지분야 공무원과 담당자 교육		
11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2) 여성가족부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1	경제적 지원	양육자 및 양육환경 지원		
2		경제적 지원		
3	가족관계 프로그램	가족상담 지원		
4		수용자 가족 캠프		
5	정책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수용자자녀 상담 매뉴얼개발 및 상담연계		
6		수용자자녀 및 양육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7		수용자 가족에게 한부모지원법 안내 의무화		
8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대책 총괄		

3) 경찰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1	체포 수칙	체포 과정 시 아동충격 보호 실행 매뉴얼 개발		
2		체포수칙에 자녀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직무수칙을 강행규정으로 마련		
3		경찰학교 및 간부 교육		
4	아동 보호	초기 수사과정에서 수용자자녀 파악 데이터베이스화		
5		체포 시 또는 미성년자녀가 있음이 확인될 때 양육환경 조사 및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체계에 통보		
6		부모의 체포를 목격한 자녀의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전문가 연계		
7		구속된 부모의 상황 및 향후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8		부적절한 양육자, 방치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속히 통보, 특히 어머니가 구속된 경우 신중하게 대응		
9		유치장 수감 시 자녀 접견권 최대한 보장		

4) 법원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1	양형 및 수용자 지원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피고인 양형고려(어린이가 있는 여성의 경우 보호관찰 선고 등)		
2		재판시 피고인자녀 등 긴급지원 필요시 구속집행정지 제도 신설		
3	교육 및 예방 지원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자녀문제 인식개선 교육		
4		심리단계에서 가족노출과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		

5) 법무부(교정본부)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1	가족관계 및 면접지원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2		미성년자녀 있는 가정 접견기회 확대(특별면접) 및 가족 프로그램에서 자녀참여 적응 권장		
3		교정본부의 사회복귀과에 재소자 가족지원담당관 확보운영		
4		자녀 친화적 가족접견실 환경 마련		
5		가족 만남의집을 담 안에 설치하여 수형초기부터 시행		
6		자녀 면접이 용이하도록 변경(토요일 면회 시간 연장 및 구비서류간소화)		
7	정책개발 및 교육	수용자자녀실태 등 통계구축		
8		수용자자녀에게 범죄피해자 기금 지원확대		
9		교정공무원들에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필요		

6) 교육부

	내용		부처업무 적절성	실효성
1	상담	수용자자녀에 대한 상담		
2		사례관리, 가정방문		
3	학생지원	학업지원(멘토링)		
4		학비지원, 급식비 등 경제적 지원 -국가의 공식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 중심		
5		학교사회복지사 연결		
6	교육	수용자자녀들의 교육·정서 대처방안에 대한 교사 교육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으로 관련도서 비치(초등학교 각 교실)		
7		부모로 인한 피해 없도록 교사, 교원, 학생 인권교육		
8	정책개발	수용자자녀 학생 실태조사		
9		상담교사 가이드북 및 매뉴얼 제작		
10		교육부산하 위센터차원의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개발		
11		부모 수감에 따른 차별, 따돌림,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		

2. 다음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점에서 5점까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급성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도 ※ 실효성: 성과창출의 기대가능성

		내용	시급성	실효성
1	가족 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2		수용자자녀 학업 민 진로지원		
3		생계급여나 양육비지원		
4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 서비스		
5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6	돌봄	수용자자녀를 위한 그룹홈 운영		
7		부모가 수용된 동안 한시적 대리(위탁)가정 지원		
8	행정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예)민원서식에 수용자 가족 포함		
9		주민지원센터 복지 담당자 교육		
10	정책 및 실천	지자체별로 수용자자녀환경과 문제점 파악		
11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기관 설치운영		

3. 다음은 민간단체의 역할로 제안된 방안입니다. ①~⑮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시행해야 할 사업 3가지를 순서대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수용자자녀지원	① 수감된 부모면접 시 동행 및 가족접견 지원 ② 경제적 지원 ③ 상담 및 사례관리 ④ 학업 및 수용자자녀 악기, 운동, 취미활동 지원 ⑤ 의복, 체육복, 교복 등 물적 지원, 후원자 연결(성탄, 명절)선물 ⑥ 수용자자녀여름캠프 및 힐링여행 ⑦ 자녀문제 상담을 위해 수감된 부모 면접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⑧ 수용자 가족 욕구파악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⑨ 수용자자녀 양육자 교육 ⑩ 수용생활 및 가족면접 등 관련된 정보제공
홍보	⑪ 옹호활동, 캠페인 ⑫ 수용자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국민 홍보
이슈 제안 및 네트워크	⑬ 관련지식 및 정보구축, 조사연구 ⑭ 대정부활동, 입법청원 ⑮ 수용자자녀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플랫폼 역할

4. 수용자자녀 지원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어느 법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 3가지를 순서대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 | |
|------------------------------------|-------------------------|
| ① 아동복지법 | ②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 ④ 긴급복지지원법 |
| ⑤ 건강가정기본법 |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⑧ 청소년복지지원법 |
| ⑨ 별도의 법 제정 (예: 특수취약계층아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5. 수용자자녀 지원에 관한 주무부처는 어느 부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지 3가지를 순서대로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 | | | |
|---------|---------|-------|-----------------------|
| ① 여성가족부 | ② 보건복지부 | ③ 법무부 | ④ 별도의 기구(예. 총리실 산하기구) |
|---------|---------|-------|-----------------------|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 쇄 일 | 2017년 11월
| 발 행 일 | 2017년 11월
|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카움 저동빌딩
| 전 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1
| F A X | 02)2125-0929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제 작 | 리드릭 02)2268-0300

ISBN 978-89-6114-565-7 93330 (비매품)
